장로교 체제의

기초

장로교 체제의 기초

제 1 장
교회의 사명[1]

F-1.01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세상을 위해 죽으셨으며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는 볼 수 있게 하고, 억압받는 이에게는 자유를 주며,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곧 교회의 삶과 사역의 본질과 형태를 이룬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인간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또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 더 고귀한 목표는 없다.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F-1.0201 그리스도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세우셨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a]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 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b] 교회의 삶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삶과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F-1.020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 가운데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1 본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과 '운영체제' 편 전반에 걸쳐, 대문자 "교회(Church)"는 보편적 교회,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명칭(예: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의 일부로 쓰인 경우는 예외이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믿음과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질서와 규율을 세우신다. 성경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쳐 주며, 우리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성과 올바른 판단으로 말씀에 따라 일해야 한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이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뜻을 같이해, 교회는 예수께서 교회의 소망이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의 권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력있고 즐거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감을 또한 고백한다.

F-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골 1:19-20).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진리를 받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거룩해지고 하나됨을 이룬다.

F-1.03 교회의 소명

F-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c]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신다. 교회는 세상 속 공동체로서 그 삶에서 이러한 은사를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전 12:27-28):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의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해야 한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기뻐해야 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삶과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를 의지하며 교회는 현재를 살아간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죄가 용서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반목과 분열의 벽이 무너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기쁜 소식을 교회를 넘어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F-1.0302 교회의 표징[b]

보편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임"을 확언한다.

a. *교회의 하나 됨*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처럼, 교회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자 하며, 결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성령도 한 분이시며, 소망도 하나며,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에, 교회는 하나다"(에베소서 4:5-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이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계 맺도록 부르신 모든 이들과도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와 하나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각 교단으로 나누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을 저해하지만 파괴하지는 않는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단일 교회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됨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교회와의 유대 관계를 추구하며 이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d]

b.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 교리의 순수함이나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기에, 교회의 구성원과 직제 사역을 맡은 이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며, 성경과 은혜의 방편들(W-1.0106)을 통해 모든 신자와 공동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죄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순결과 정의와 진리를 향해 힘써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부름 받음을 고백한다. 순결, 정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2 *신앙 고백서* "니케아 신경" 1.3을 참고할 것.

c.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회복시키셨고 우리의 분열을 치유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시대, 장소, 인종, 나라, 연령, 능력, 성별, 조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음을 증언하기 위해 힘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증거할 때 더 깊은 믿음, 더 큰 소망, 더욱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d. *교회의 사도 됨*

사도 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만물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사도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들의 증언, 즉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이들, 또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르신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교회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박받는 이들을 해방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 증거한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를 따르고, 하나님의 새 창조, 즉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며,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복음에 충실하며 신앙고백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로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교회는 다음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든다.
>
> 예배, 기도, 친교, 섬김의 깊은 삶을 이웃들과 나눈다
>
> .
>
>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사람들을 죄와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F-1.0303 개혁 교회의 특징[3]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종교 개혁 초기부터, 개혁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구현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파하며,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교회 징계를 공정하게 시행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고
모든 사람이 이 새 창조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

성례전을 집전하고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다가올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 약속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한다.

F-1.0304 교회의 궁극적 목표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 영적 교제.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함.
진리의 수호.
사회 정의 구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냄.[4]

---

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XVIII 장 (*신앙 고백서*, 3.18) 참고

4 '교회의 궁극적 목표'라는 이 선언문은 북미연합장로교회에서 작성한 것을 여기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 북미 연합장로교회는 1958년에 미국장로교와 통합하였다.이 선언문은 두 교단의 통합 교단인 미국 연합 장로교회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교단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 끝에, 오늘날 이 대표적인 선언문을 북미연합장로교가 채택했다.

F-1.04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태도

F-1.0401 연속성과 변화

미국장로교 헌법의 장로교 운영체제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참된 교회의 표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장로교 운영체제의 모든 것은 교회의 주되신 분 권위 아래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 공동체와 신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 가운데로 이끄신다. 교회는 개혁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앞서 가시며 그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로마서 12:2).

F-1.0402 범교회적 성격(Ecumenicity)

미국장로교 헌법 내 장로교 운영체제는 성경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나,[e] 교회의 존재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F-1.0403 다양성 속의 일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라디아서 3:27-29).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는 교회 구성원의 풍부한 다양성 속에 나타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장애, 지역, 신학적 이해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연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장로교는 미국장로교 회원인 모든 개인과 모임이 미국장로교의 예배와 운영과 새로운 삶 속에 온전히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구성원도, 헌법에 명시된 이유 이외에는 참여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F-1.0404 열린 태도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새롭게 열린 태도를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며,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피조물됨, 죄성, 단절, 고통의 현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미국장로교는 다음을 추구한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더 철저한 순종에 대해, 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및 사역에 대해 열린 태도.

구성원에 대한 열린 태도. 새로운 인간성의 가시적 표현으로서, 모든 연령, 인종, 민족, 능력, 성별, 조건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 즉 성령의 권능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 간다.

미국장로교 제도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보는 열린 태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이 제도가 충실하고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하나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개혁하시는 데 대해 열린 태도. 교회가 하나되어 그 사명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미국장로교와 그 신앙고백

F-2.01 신앙고백문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내의 신조와 고백문을 통해 미국장로교의 신앙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미국장로교는 이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교회의 구성원과 세계를 향해 선포한다. 이 신앙고백문들은 교회를 그 믿음과 행위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신앙고백문들은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에 지침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혁 기독교 전통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다. 또 이 신앙고백문들은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선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 신앙고백문들은 개인이 더욱 깊이 헌신하도록 도우며 신앙 공동체의 삶과 증인됨을 더 견고하게 한다.

본 교단의 신조와 고백문은 하나님 백성이 역사 속에서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며 작성한 것이다. 신조와 고백문은 저자들이 진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 그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 이들은 살아있는 전통을 통한 기도, 사색, 경험의 결과물이다. 이들 신조와 고백문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는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신조와 고백문은 종종 서로 상충하는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믿음을 확정하고 있다.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의 신앙고백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문들은 교회 내의 부차적인 표준으로서,[a]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된다. 이들 신앙고백문들은 성경보다 아래에 위치하나, 여전히 신앙의 표준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이 신앙고백들은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동의를 받았다. 그러므로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안수받은 이들이 신앙고백에 표현되어 있는 믿음을 심각하게 거부하면, 미국장로교는 이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며, 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단의 신앙고백을 변경하는 과정은 의도적으로 어렵게 했고, 교회 전체에 걸쳐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교리의 표준 및 운영체제의 표준에 대한 개혁에 열려 있어야 한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 확신한다.

F-2.03 보편적 교회의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미국장로교는 보편적 교회의 신앙을 증거한다. 신앙고백문들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및 사도적 교회[b]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고,

보편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경들, 특히 니케아 신경과 사도 신경의 표현과 채택을 인정하고 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한 신비에 대한 이 신경들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F-2.04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미국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신앙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러한 지지의 핵심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프로테스탄트 표어인 '오직 은혜,[c] 오직 믿음,[d] 오직 성경[e]'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동기부여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F-2.05 개혁 전통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미국장로교는 개혁교회 전통의 신앙을 선언한다. 이 전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내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의 자유함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i] 지속시키시며,[j] 통치하시고,[k] 구속하시는[l] 하나님의 위대하심,[f] 거룩하심,[g] 섭리하심[h]에 대한 확증이 자리잡고 있다.[m]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핵심적인 선언과 관련된 개혁 전통의 또다른 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섬기고 구원받도록[n] 선택된[o]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한 훈련된 관심을 그 특징으로 하는 언약의 삶.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 자세.

우상숭배[p]와 폭력[q]에 빠지는 인간 성향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는다.

제 3 장
규례와 운영의 원칙

F-3.01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5]

본 *규례서*를 제정하면서, 미국장로교는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는 미국장로교의 공동 유산이며, 우리 장로교 교회 운영의 개념 및 체제의 기본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F-3.0101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다

a.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양심은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나는 인간[6]의 교리와 계명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7]

b. 따라서 우리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개인적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 조직도,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통적인 경우 외에, 세속 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F-3.0102 집단적 판단

위에서 언급한 공통 권리의 원칙에 온전히 입각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 또는 특정 교회들의 연합은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조건들, 그 목회자들과 구성원의 자격 요건, 그리스도가 지정한 그 내적 운영의 전체 체계를 공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이들은 공동체 소속 조건들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들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5이 항목의 경우,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 작성했고, 1788년에 그 대회가 출판한 '운영 체제'의 서문으로 사용되었다. 그 해에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는 네 개의 대회로 분할된 후 미합중국 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총회로 전환되었으며, 다음 해에 첫 총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형성된 네 개의 대회는 뉴욕/뉴저지 대회, 필라델피아 대회, 버지니아 대회, 캐롤라이나 대회였다.이들 네 개 대회의 노회들은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첫 총회에 그들의 대표들을 파견했다. 이후 미국 남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와 미합중국 연합장로교("북장로교,"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1788년에 구상된 이 체계를 따라서 운영되었다.

6 여기에서 인용된 "사람들(men)"과 "사람의(man's)" 표현은 18세기식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all persons)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역자 주: 원문의 men과 man's는 각각 '남자들'과 '남자의'로 이해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이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판은 이를 '인간'으로 번역했다.)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 6.109)을 참고할 것.

F-3.0103 제직

우리의 축복이 되신 구세주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심에 있어 제직들[8]을 임명하셨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전을 집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징계를 행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원칙을 지키며, 오류를 범한 자들과 물의를 일으킨 자들을 견책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 제직들과 전체교회의 책임이다.

F-3.0104 진리와 선함

진리는 선함을 담보로 한다. 우리 구세주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거룩함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사람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생각보다 더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이와 반대로 믿음과 실천, 또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모두 가치없는 일이 될 것이다.

F-3.0105 상호 관용

위의 원칙에 대한 확신에 따라, 우리는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건전한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실질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좋은 성품과 원칙을 지닌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진리와 형식이 있음을 믿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서로에 대해 상호 관용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단체의 의무다.

F-3.0106 사람에 의한 선출

비록 교회 제직의 성품, 자격 요건, 권위 뿐 아니라 제직 임명과 제도의 방식이 성경에 적혀 있지만, 특정 단체 내에서 이 권위의 행사를 위해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그 단체의 일이다.

F-3.0107 교회의 권한

교회의 모든 권한은, 교회 자체가 행사하든지, 또는 위임된 권한에 의해 대표가 행사하든지, 보조적이며 선포적일 뿐이다.[a] 다시 말해, 성경만이 신앙과 태도의 유일한 근거다. 교회의 치리회(judicatory)[9]는

---

[8] "제직들" 및 "직분"은 본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편의 역사적 언어의 일부로서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사용되었다. '운영 체제' 편의 다른 곳에서는 "직제 사역자"와 "직제 사역"과 같은 용어들이 "제직"과 "직분" 대신 사용된다.

[9] 이곳에 쓰인 "치리회(judicatory)"라는 용어는 '원칙' 편의 역사적 언어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양심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비록 모든 대회와 공의회는 인간의 불가피한 연약함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제정되어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법에 대해 판단하는 권리보다,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전횡적 주장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판단의 권리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지만, 그럼에도 법 제정의 권한을 스스로 주장하는 일은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

F-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마지막으로, 상기한 성경적 및 합리적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정함은 모든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그 목적 면에 있어 순전히 도덕적이거나 영적이어야 하고,[b]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회 권징은 그 자체의 정의로움, 공정한 대중의 인정, 보편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지지와 축복을 통해서만 그 권위를 얻게 된다.

F-3.02 장로교의 운영 원칙[10]

미국장로교는 보편 교회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장로교 체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

F-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별 회중은 어디에 있든지, 집합적으로, 미국장로교라 불리는 하나의 교회를 구성한다.

F-3.0202 장로에 의한 운영

이 교회는 장로, 즉 사역장로와 교역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칭하기도 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사역장로들은 이들이 회중을 "지배하기" (마 20:25)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분별하고 이끌어가도록, 또 회중의 신앙과 삶을 견고케 하며 양육하도록 회중이 선택했기 때문에,

---

운영 체제' 편에서는 "공의회(council)"로 대체되었다.

[10] 이 항목은 '교회 운영의 역사적 원칙'과 '장로교 운영의 원칙'에서 가져왔다. '교회 운영의 역사적 원칙'은 미국장로교 총회가 1797년에 채택한 것이다. 이 인용구에서, "radical"이라는 단어는 그의 원뜻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의 의미로 쓰였으며, "청원(appeals)"이라는 단어는 사법 절차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다: "장로교 교회 운영 및 징계의 근본적[c]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각기 다른 회중들은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말해 보편 교회를 구성한다. 보편교회의 상위 부분, 혹은 그 대표성이 보편교회의 하위 부분들을 관할하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교회의 대표성이 각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연합된 것에 있어서 이들을 관할하고 결정해야 한다. 즉, 더 상위인 부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교회의 집단적 지혜와 연합된 의견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위 치리회는 상위 치리회 [공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과 이 절차에 대해선, 사도들이 보여준 예와 초대교회의 관행을 그 권위로 받아들인다.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졌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과 행동에 있어 신앙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과 전도에 합당하도록 교육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F-3.0203 공의회로 모임

이 장로들은 각 단계 별 공의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공의회들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 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권리, 권한을 서로 공유한다. 각 공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한 공의회의 결정은 적절한 공의회 절차를 거쳐 전체 교회의 결정이 될 수 있다. 교회의 상위 부분 혹은 그들의 대표가 하위 부분을 관할해야 한다.

F-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드러냄

장로들은 단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드러내도록 힘써야 한다.

F-3.0205 다수결에 의한 결정

공의회에서의 결정은 토론과 분별의 시간을 거친 후에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F-3.0206 감사 및 감독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으며, 회부, 이의 제기, 청원에 관한 논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F-3.0207 공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들(사역장로 및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과 집사들은 공의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를 받는다.

F-3.0208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유된 권한

교회적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으로, 공의회에 모인 장로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F-3.0209 공의회의 일반 권위

공의회는 교단 헌법이 부여한 의무 및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로 국한된다. 명시되지 않은 권한들은 노회가 보유한다.

F-3.03 장로교 체제의 기초가 되는 진술

본 장,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에 쓰여 있는 내용들은 미국장로교의 체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적, 역사적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 본 헌법의 모든 조항들은 전체 헌법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 *규례서*의 어떤 조항도 그 자체로 다른 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 조항 간의 대립 및 모호성이 있을 경우, 모든 조항들이 유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의회와 사법 위원회의 임무다.

F-3.04 미국장로교 헌법 구성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에는 다음의 고백문이

포함되어 있다: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스코틀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바르멘 신학 선언

벨하 신앙고백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운영 체제

예배 지침

운영
체제

17

운영 체제

제 1 장
개체교회와 그 성도

G-1.01 개체교회

G-1.0101 개체교회의 사명

개체교회는 그들이 놓인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복음의 모든 은사를 개체교회에게 주셨다.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들은 서로 간의 깊은 유대를 통해 하나가 되며, 책임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 연합하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총체적으로 교회라고 한다.

개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선포의 사역을 수행하며, 성례전을 나누고[a],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 또 이웃과 맺은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 개별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개체 교회의 삶 속에서 준비를 한다. 개체교회는 사람들, 지역사회,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배를 위해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를 증거한다.

G-1.0102 개체교회의 교제

이 미국장로교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연합된 여성, 남성, 어린이의 교제를 전제로 한다. 이 조직은 교제 위에 세워진 것이며, 신뢰와 사랑 없이 유지될 수가 없다.(굳이 원문의 일한다를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G-1.0103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거한 운영

이 '운영체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체교회"는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인준하고 승인한, 정식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의거해 운영되어야 한다. 개체교회의 구성원들은 당회와 상위 공의회(노회, 대회, 총회[b,c])의 인도를 따른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을 인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이끌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전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다하게 한다.

노회가 세운 기타 사역 조직들도 이 헌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노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G-1.0104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등)

교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직화된 전통적인 개체교회의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노회가 그 자체의 정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배 공동체에 대해, 노회와 개체교회는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인정된 단체는 노회가 인준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적어도 한 명의 사역 장로를 그 리더십에 포함할 것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의회(당회 또는 노회)의 재정적, 법적, 권징적 후원 하에 활동해야 한다. 이 공동체를 후원하는 공의회는 그 예배 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례서의 예배 지침에 따라 그 공동체 내에서 성례전을 집전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미국장로교의 세례 교인, 활동 교인 또는 관련 교인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구성원에 대한 교적부는 이 공동체를 후원하는 공의회가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후원 공의회의 승인 없이 재정적, 법적, 계약상의 어떤 의무도 부담할 수 없다. 이 공동체는 후원 공의회의 성적 비행, 성추행, 아동 청소년 보호, 반인종차별 관련 필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노회는 이 공동체를 후원하는 공의회(당회 및/또는 노회)에, 또는 공의회를 통해 이 공동체가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G-1.02 개체교회를 조직하기

미국장로교 내에서 노회만이 개체교회를 조직할 권한이 있고, 개체교회는 이 헌법 조항을 준수하여 사역해야 한다.

G-1.0201 언약 관계 형성

개체교회를 조직하려면, 노회는 새로운 개체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함께 다음과 같이 언약하여야 한다:

> "아래 서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장로교 소속의 _____라는 이름의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_____ 우리는 미국장로교의 신앙, 사명, 규례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이웃과 서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고 함께 사역에 힘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
> "(언약자들 서명)"

노회는 노회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들을 노회 산하 조직 개체교회로 선언할 수 있다. 그 후 회중은 사역 장로와 집사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 노회는 새롭게 선출된 이들을 준비시키고, 심사하고, 안수하고 위임해야 한다. 노회는 목회 리더십을 확보하고,

개체교회의 예배와 전도를 계획하며, 해당 개체교회와 다른 개체교회의 사역을 조정하고,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체 교회의 법인체 구성과 내규에 대해 자문하며, 교단 내의 삶 속에서 해당 개체교회의 사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이를 위해 그 교회와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G-1.03 개체교회의 교인

G-1.0301 교인됨과 세례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며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자발적으로 믿는 신앙을 통해 신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사람들이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신다.

G-1.0302 환영과 열린 태도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교회의 교제와 목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된 사유가 아닌 한, 교인이 되려는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나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다.

G-1.0303 교인 가입

누구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a. 공적인 신앙 고백. 당회가 교인됨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한 후에 이루어진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신앙 고백을 하려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b. 이명 증서. 이명 당시 다른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었을 경우.

c. 신앙 재확인.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경우.

G-1.0304 교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기쁨이자 특권이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이다. 신실한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음을

통해서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선포함.
개체교회의 공동의 삶과 예배에 참여함.

기도, 관심,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로를 세워줌.

그리스도 신앙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함.
물질, 시간, 재능을 바쳐 교회의 사역을 지원함.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여줌.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함.
개인, 가족, 직업, 정치, 문화,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감.
평화, 정의, 자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함.

하나님 피조물을 돌봄.
교회의 운영 책무에 참여함.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함.

G-1.04 교인의 분류

미국장로교 개체교회의 교인은 세례 교인, 활동교인, 임시 교인으로 구분된다.

G-1.0401 유아 세례 교인

유아 세례 교인은 본인이 속한 개체교회나 다른 개체교회에서 세례의 성례를 받고 그 당회가 세례교인으로 등록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은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세례 교인은 교회의 목회적인 돌봄과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G-1.0402 활동 교인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그 교회의 방침[d]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활동교인은 또한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G-2.0102 참조). 활동교인은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G-1.0304에 명시되어 있는 교인의 책임과 훈련에 대해 꾸준히 다시 결단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책임은 당회에 있다.

G-1.0403 임시 교인

임시 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개체교회의 교인이거나 다른 교단이나 다른 기독교 조직에 속한 개체교회의 교인이나,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떠나 일시적으로 이주한 자로서 소속 교회의 공의회나 치리회로부터 무흠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여 당회가 임시 교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임시 교인은 활동교인과 동일하게 개체교회의 삶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권한이 없고, 그 개체교회의 직제사역이나 다른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G-1.0404 기타 참석자

미국장로교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환영하며, 그들도 이 교회의 생활과 예배에 참여하고 목회적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의 만찬에 초대받는다. 주의 만찬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자격이 없더라도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W-3.0409). 타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W-3.0403에 따라 아이들의 세례를 요청할 수 있다.

G-1.05 공동의회

G-1.0501 회의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해야 한다. 개체교회가 그 내규에 다른 의사진행 권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회의는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의 최신판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 헌법에 반할 때는 예외다.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신 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의 최신판에 따라, 개체교회와 그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며 이는 당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다만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자기술의 활용을 통해 동시적으로 듣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면 회의에 전자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체교회는 해당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의사 진행 규칙과 일반 진행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G-1.0502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체교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개체교회가 논의하기에 합당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회의 소집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건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교회의 연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할 자격이 있다. 개체교회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 규정을 정해야 한다.

G-1.0503 공동의회 소집

당회 또는 노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는 교인 명부에 있는 활동교인의 4분의 1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당회가 이를 소집해야 한다. 모든 개체교회 회의에 대해서 적절히 공고해야 한다. 각 개체교회는 사전 공고에 관한 최소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의 전에 정기 예배에서 이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G-1.0504 공동의회에 적합한 안건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안건은 다음의 사안들로 제한해야 한다:

a. 사역장로, 집사, 이사를 선출하는 일.

b.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c. 목사 또는 목사들의 청빙 조건의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그 수정을 승인함으로써, 또는 목회관계 해소를 요청하거나, 목회관계 해소에 동의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d. 부동산을 사거나 팔며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얻는 일.

e. 이 헌법이 허용한 임기 제한 면제를 노회에 요청하는 일 (G-2.0404).

f. 연합 전도 사역 조직 계획을 승인하는 일, 또는 연합 전도 사역 조직을 변경하거나 해체하는 일 (G-5.05).

g. D-9.0102에 따라 개체교회 구성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는 일.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같은 공동의회에서 교회 업무와 법인 업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

G-1.0505 의장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보통 그 교회의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되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 목사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을 의장으로 요청해야 한다. 위임된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또는 위임된 담임목사가 사회를 볼 수 없거나 다른 의장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회가 의장을 보내야 한다.

G-1.0506 서기와 회의록

당회 서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의 서기가 되어야만 한다. 당회 서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개체교회는 그 회의를 위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반드시 개체교회의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 장
직제사역, 위임, 공인

G-2.01 교회의 직제사역

G-2.0101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립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기초이자 기준이며,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 보여주신 모범이다 (마 20:28).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는 사역이며, 그들의 일부가 직제 사역에 부름받아 특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교인들과 직제사역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역한다.

G-2.0102 직제 사역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단이 유지해온 교회의 직제사역은 집사[a] 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b] 와 사역장로[c])다. 직제사역은 교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이러한 직제사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 전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교회의 운영은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d].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하나님 백성의 권리는 결코 양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나 교단의 공의회가 선출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해당 조직에서 직제사역을 맡을 수 없다.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 장로로 부르기도 함)에 대한 안수는 해당 직제 사역에 따라 각기 고유하다.

G-2.0103 직제 사역에 대한 부름

교회의 직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개인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승인,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이 증거가 되어 이 부르심을 입증한다.

G-2.0104 은사와 자격

a. 하나님은 교회 안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그들의 다양한 직무에 맞는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특정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필요한 은사와 능력 외에도,

강한 믿음, 제자로서의 헌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교회에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해야 하고 교회 공의회도 하나님 백성들과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b. 직제 사역 기준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기쁘게 순종하려는 교회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F-1.02). 안수 또는 위임을 책임지는 공의회(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 상태, 직제 사역 책임에 대한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후보자의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W-4.0404)**,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F-3.01), F-1.0403에 나타난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헌신된 자세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공의회는 각 후보자에게 기준을 적용할 때에,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따라야 한다.

G-2.0105 양심의 자유

교회의 온전함과 건전함을 위해, 직제 사역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이 헌법에 명시된 개혁신앙과 체제의 본질을 지켜야만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관점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교회의 운영을 가로막지 않으면, 성경 해석과 관련된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장로교의 직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일정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제 사역을 찾거나 직제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직제 사역자들의 양심은 교회의 기준에 따라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된다. 한 개인이 개혁신앙과 그 체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에 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개인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인이 소속된 공의회의 책임이다.[11]

[11] 미국장로교 역사 초기, 즉 총회가 생기기 이전에, 뉴욕 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의 재연합 계획안에 다음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안이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되면, 모든 회원은 그 결정에 능동적으로 동의하든지, 아니면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항의한 후, 어떤 분열도 시도하지 말고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떠나야 한다. 다만 교리나 장로교 운영 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조직이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만 이 사항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Hist. Dig. (P) p. 1310.) (Plan of Union of 1758, par. II.)

G-2.02 집사: 긍휼과 섬김의 사역

G-2.0201 집사의 정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집사직[e] 은 긍휼, 전도,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어버린 자, 외로운 자, 압제 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나눈다[f]. 영성,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이웃 사랑, 진실된 긍휼의 마음,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G-2.0202 당회의 권위를 따름

집사는 개별적으로 위임될 수 있고, 또는 집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그들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따르며 당회의 권위 아래 있다. 집사는 개체교회 안에서 특별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는 교인을 돌보고, 교육 업무를 맡거나, 특정 사람과 목표를 위해 헌금을 풍성하게 드리고 모금하며 분배하도록 격려하며, 개체교회의 건물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집사들은 주의 만찬에서 보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회가 위임하는 다른 임무도 맡아야 한다 (W-3.0414). 개체교회는 과반수 결정에 의하여 집사 직제사역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개체교회가 집사회나 개별적으로 위임한 집사들을 두지 않는 경우, 이 직제사역의 기능은 사역장로와 당회가 책임져야 한다.

G-2.03 사역 장로: 분별과 운영의 사역

G-2.0301 사역 장로의 정의

구약시대에 백성을 이끄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특정 은사를 받은 사람들[g]이 있었다. 따라서 개체교회는 지혜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자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사역장로들은 개체교회를 "지배하기" (마 20:25) 때문에 그런 명칭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개체교회가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충실함을 분별하고 평가하며, 공동체의 믿음과 삶을 강화하고 돌보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졌다. 사역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함께 지도력, 운영능력, 영적 분별력, 권징을 수행한다[h] 그들은 또한 범교회적 관계 사역을 포함하여 전체 교회의 삶과 개체교회의 삶에도 책임을 진다. 개체교회가 선출한 경우, 이들은 당회원으로서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 상위 공의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사역장로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이라도 맡을 자격이 있다.

G-2.04 사역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

G-2.0401 사역장로와 집사의 선출

사역장로와 집사는 개체교회가 교인 중에서 선출한 사람들이다. 사역장로와 집사를 공천하고 선출할 때에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참여와 포괄성을 보장해야 한다(F-1.0403). 사역장로와 집사는 교인 중에서 선발하되 교인들을 대표해야 하며, 개체교회가 선출한 위원회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는 그 자체 규정을 통해 그 개체교회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규정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규정에 명시된 위원회의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2) 이 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1명은 현재 당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여야 함. (3)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위원들의 과반수는 현재 당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 담임목사는 공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어야 하며, 투표권은 없다. 선출이 진행될 때, 그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공동의회 현장에서 공천할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활동교인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G-2.0402 사역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준비

사역장로 또는 집사의 직제사역에 선출된 사람들에게 당회는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 당회는 이들의 개인 신앙을, 교단 헌법에 있는 교리, 운영 체제, 권징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사역의 의무를 심사해야 한다. 또 당회는 그 직분과 관련된 사역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점검 과정이 끝나고 승인되면, 당회는 안수와 임직식 일정을 정해야 한다.

G-2.0403 안수식과 임직식

안수식과 임직식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각 경우에 맞는 설교가 있어야 한다. 당회장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자는 사역장로와 집사가 하는 사역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안수식과 임직식은 예배 중에 진행한다. 예배 지침(W-4.04)에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404 임직 기간

당회와 집사회는 사역장로와 집사를 최대 3년의 임기로 각각 선출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장로나 집사 어느 누구도 6년 이상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으며, 6년을 계속해서 사역한 사역장로나 집사는 적어도 1년간 같은 조직체에 선출될 수 없다. 각 연조의 인원은

가능한 한 동수가 되어야 하며, 해마다 한 조가 임기를 마치게 해야 한다. 이 임기 제한을 면제해 줄 것을 개체교회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노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안수를 받고 이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있으면, 사역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은 안수 사역의 책임은 지속된다. 단, G-2.0406, G-2.0407 조항이 적용될 경우나 교회 권징 편에 의거한 경우는 예외다.

G-2.0405 관계의 해소

사역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으나, 당회가 동의해야 한다. 사역장로나 집사가 더이상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각각 더이상 당회나 집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사역장로나 집사가 그 위임받은 사역의 의무를 거주지 변경이나 장애로 인해 1년간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시무 관계를 당회가 해소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이며, 그 예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G-2.0406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역 해제

사역장로나 집사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이들은 직제사역 업무에서 해제해 줄 것을 당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개체교회의 당회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사역에서 해제하고 해당 개체교회의 사역장로 또는 집사 명부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 조치는 사역장로나 집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역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직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직분이 해제된 사람의 상태는 일반 교인과 같아야만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사역에서 해제된 사람이 나중에 그 직제사역을 다시 맡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락했던 당회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당회가 이를 승인하면, 그 사람은 다시 안수받지 않고 해제되었던 사역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G-2.0407 관할권 거부

사역장로나 집사가 이 교단의 관할권을 거부하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당회 서기에게 접수하면, 거부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거부권의 효력이 발생되어야만 한다.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역을 사역장로나 집사가 지속하면, 그 당회는 당사자와 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고, 당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사역장로나 집사가 당회와 논의할 기회를 가졌고 당회의 불승인 서면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사역을 지속하면, 당회는 그 사역장로나 집사가 이 교회적 관할권을 거부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관할권을 거부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사역장로나 집사는 교인자격과 직제 사역을 잃게 되며 그들의 사역 수행은 종결된다. 당회 서기는 이 관할권 거부 사실을 다음 당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당회 회의에서 이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사역장로나 집사의 이름을 각각 그 명부에서 지우며 이 헌법이 요구하는 그 밖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G-2.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의 사역

G-2.050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정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 목사라고도 함)는 모든 일에 있어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엡 4:12). 노회가 승인을 하면, 이들은 여러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들은 교회의 믿음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로써 복음의 핵심을 통해 사람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전도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강건해진다. 성례전을 집전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과 행동으로 은혜의 신비를 풀어내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목사로 사역할 때[i],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일상의 복잡한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노회원으로 사역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운영 관리의 책임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는 기도, 토론, 의사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G-2.0502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주님께서는 어떤 구성원들을 따로 구별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부르셨는데, 교회는 그 부르심을 노회의 결정을 통해 확인한다. 노회는 특정 사역이 교회의 사명에 유익하며 그 사역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를 요구하는 인준된 사역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 사역을 수행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자체의 결정으로 노회의 회원이 되며, 노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목회관계도 성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G-2.050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노회원 범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정회원, 준회원(member-at-large), 은퇴 회원이 있다. 노회 정회원은 노회가 인준한 사역에 관련되어 있으며, 준회원은 노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a. *인준된 사역을 하는 정회원*

인준된 목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성경,* 교단 신앙고백서*,* 규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충실히 드러냄.*

(2)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우며, 그들에 대한 목회를 지지함.

(3)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야 함.

(4) 노회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기관, 기구에 대해 그 성격과 실행과 관련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함.

(5) 노회의 회의, 예배, 업무에, 또 이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의 생활에, 또는 미국장로교와 교류 관계에 있는 교회의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함(G-5.020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교단 관할권을 벗어나 인준된 사역을 하게 된 경우, 그 목회자는 복음 사역을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들은 개체교회, 소속 노회, 범교회 관계에 참여해야 한다. 또 이들은 교단의 상위 공의회와 그 공의회들의 이사회, 기관에 선출될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

노회는 교회 목회 외의 인준된 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사역을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b. *준회원*

준회원은 인준된 사역에 전에 관여했다가, 목회 사역을 그만둘 의도는 없으나, 현재는 G-2.0503a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말한다. 가족 문제로 인해서 또는 노회가 인정하는 개인 상황으로 인해 인준 사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역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면,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준회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준회원은 가능한대로 G-2.0503a의 많은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개체교회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준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발언하고 투표하며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 준회원의 회원 자격을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c. *은퇴 회원*

노회의 한 회원이 요청하면, 노회는 해당 회원을 은퇴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G-2.0504 목회 관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개체교회의 담임목사,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성숙한 삶과 관계를 책임감 있게 일구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설교할 책임이 있으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집전할 책임이 있으며, 개체교회와 함께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들 목회자들은 사역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격려해야 하며,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사역과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목양해야 하며,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 책임에는 개체교회가 의사결정할 때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이 실행되도록 개체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과 인류 공동체 전체의 삶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섬김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또 목회자들은

집사들과 함께 긍휼, 전도, 섬김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회 관련 의무 외에, 이들 목회자들은 당회 위에 있는 공의회와 관련해서, 또 범교회 관계와 관련해서 교단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a. *위임 목회 관계*

위임 목사 관계에는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가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위임받을 수 있다. *또는* 개체 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노회가 그 기간을 결정하여 청빙 조건에 문서화한 바에 따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목회 관계에 위임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운 전략에 의해 목회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개체교회가 결정한 경우, 개체교회는 목회자들을 더 청빙할 수 있다. 이렇게 청빙된 목사들은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라고 부른다. 이들 각 목사들의 임무, 목사들 사이의 관계는 노회의 승인 하에 당회가 결정해야 한다. 한 개체교회에 동사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두 명의 목사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목사와의 관계가 해소되면, 그 다른 목사는 담임목사로 남게 된다. 부목사의 목회 관계는 담임목사의 목회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그 개체교회의 다음 위임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b. *임시 목회 관계*

임시 목회 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으며, 공식 청빙이나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개체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거나 담임 목사가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후보생, 또는 사역장로와 임시 목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식적인 청빙 절차를 밟지 않으며 공식적인 위임식을 하지 않는다.

임시 목회 관계의 명칭, 그리고 임기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목회 관계에 있는 목회자는 **36**개월을 넘지 않는 일정 기간으로만 사역하도록 청빙 받는다. 노회가 승인하면,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 목회 관계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바로 담임목사, 동사 목사, 또는 부목사가 될 수 없다.

임시 목회 관계가 끝나면, 어떤 비밀 유지 협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밀 유지 협약, 즉 기밀 유지 계약은 특정한 자료, 지식, 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는 계약에 명시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승인하지 않은 자와 공유할 수 없도록 법적 구속을 받는다.

c. *예외 조항*

노회는 현재 부목사로 청빙받아 섬기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또는 현재 임시 목회 관계로 사역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상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노회가 이를 허용하려면, 노회에 참석해 투표한 인원의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G-2.0505 다른 교단 목회자의 이명

a.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가 노회 관할권 내의 사역에 적절하게 청빙을 받은 경우에, 헌법의 규정들이 모두 충족되었으면, 노회는 목회자가 이전에 받은 안수를 인정해야 한다. 해당 목회자들은 노회가 그 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교단의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인품과 학자의 소양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온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G-2.0607과 G-2.0610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항들을 적용한다:

(1) 이민자 예배공동체나 이민자 개체교회를 맡은 목회자의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한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하면, 또 그 공동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노회는 이전 교단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한 새 이민자 목회자를 노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노회원으로 등록할 당시에 해당 목회자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다 갖추지 못했으면, 노회는 그 목회자가 노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안수받은 지 5년 이상이 된 다른 개혁교단의 목회자는 안수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안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회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다.

b. 노회원으로 등록할 당시에, 해당 목회자는 본인이 이전에 가입했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의 회원 자격을 포기했음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G-2.0506 사역기간의 노회 임시 회원 자격

본 교단에서 인준된 사역을 임시로 섬기고 있는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 또는 합의 약정서 조항(*규례서*, 부록 B. G-5.0202)에 따른 위임 관계에 있는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를 노회는 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노회의 자체 규정에 의해 수립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목회자가 다 충족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G-2.05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사역 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D-7.0102**에 따라서 현재 조사를 받는 상태가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그 외에 회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 업무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해당 명부에서 삭제하고, 당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반 교인으로 남게 해야 한다. 직제 사역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직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암시하거나 지칭하는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직제사역에서 해제된 사람은 개체교회의 모든 활동교인이 함께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 항목에 따라 직제 사역에서 해제된 이가 나중에 다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제 사역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가한 노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노회가 이를 승인하고 안수 질문을 다시 확인하며 노회 인준 사역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 목회자는 안수를 다시 받지 않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 사역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G-2.0508 인준된 사역에 관여하지 않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준된 사역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거나(G-2.0503a) 준회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G-2.0503b), 또 은퇴 목사 (G-2.0503c)가 아닌 경우라고 노회가 결정하면,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에서 발언하거나 투표해서는 안 된다. 단 심의 중인 사안이 해당 목사와 노회와의 관계에 관련된 경우는 예외이다. 노회 정서기는 이들의 명단을 해마다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3 년 후에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준된 사역의 기준이나 준회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노회는 그 목회자의 이름을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당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교인으로 남게 할 수 있다.

G-2.0509 관할권 거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공인 대리인)가 이 교단의 관할권을 거부하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소속 노회의 정서기에게 접수하면, 거부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거부권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관할권을 가진 노회가 승인하지 않은 일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지속하면, 그 노회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노회와 논의할 기회를 가졌고 노회의 불승인 서면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사역을 지속하면, 노회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이 교단의 관할권을 거부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단 외의 다른 교단에서 어떤 형태로든 회원이 되거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그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관할권을 거부함으로써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회원 자격과 직제 사역을 잃게 되며 그들의 사역 수행은 종결되어야 한다. 노회 정서기는 이 관할권 거부 건을 다음 노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노회 회의에서 이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그 목회자의 이름을 각각 그 명부에서 지우며 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관할권 거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그 조치에 포함된다.

미국장로교 관할권에 속한 개체교회 또는 조직체는,

피의자로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관할권을 거부한 전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장로)를 유급으로 또는 자원봉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관할권을 거부했던 전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장로)가 나중에 제직을 회복하고자 원할 때에는 그 목회자가 관할권을 거부했던 노회에 제직 회복 신청을 해야만 회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회 권징**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G-2.06 목회 준비

G-2.0601 목회 준비의 성격과 목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이는 노회의 지도 하에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당회, 개체교회와 언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언약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G-2.0602 요구되는 시간

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그 지원자는 후원 개체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적어도 6 개월간 그 개체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해야 하며, 그 후원 개체교회의 당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망과 후보 단계는 적어도 2 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1 년은 후보생으로 있어야 한다.

G-2.0603 지망 단계의 목적

지망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에 부름받았다고 믿는 이들과 교회가 그 소명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해서, 노회가 직제사역에 대한 지망생의 적합성을 여러 정보를 갖고 판단하게 하는데 있다. 이들은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G-2.0604 후보 단계의 목적

후보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교회를 섬길 사람이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회가 후보생을 지원하고 인도하며, 안수가 필요한 사역에의 소명에 대한 후보생의 적합성과 준비 상태를 노회가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G-2.0605 노회의 관리

지망과 후보 단계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개체교회의 활동 교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회의 배려와 훈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 지망생 또는 후보생으로 등록된 기간에, 당회는 성적 비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은 노회와 그 사람 간의 언약관계 맥락에서 노회의 관리를 받는다.

G-2.0606 언약 관계 기간 중의 섬김

지망생과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감독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이전에 사역장로로 안수 받지 않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장으로 섬길 수 없으며 성례전을 집전할 수 없고 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다. 이전에 사역장로로 안수 받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경우, 당회가 주의 만찬을 인도하도록 요청하면 노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섬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노회는 후보생이 노회의 안수 시험 자격을 갖추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증한 시기를 기록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후보생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 지도력, 긍휼의 마음,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b. 각 권역에서 인준받은 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c. 노회가 인정하며 '신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준한 신학 교육 기관이 발행한 성적 증명서. 여기에는 이수한 과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활용 신구약 해석학이 그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모든 이수 과목에서의 양호한 성적과 졸업생이거나 졸업 예정자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d. 시험 자료들. 이들 자료들이 총회가 승인한 표준 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부문들을 충족시킨다는 평가서. 노회가 구성한 조직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G-2.0608 언약 관계의 이전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요청하고, 관련 당회들과 노회들이 승인하면,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언약 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G-2.0609 언약 관계 철회

당회, 노회와 상의한 후,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언약 관계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회는 지망생과 후보생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와 그 사유를 당회와 그 사람에게 알리고, 만일 적절하다면, 그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도 보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회 또는 노회가 지정한 조직체는 후보생이나 지망생이 이 제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G-2.0610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정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G-2.06에 적혀 있는 안수 요구 사항의 어느 부분이라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G-2.0607d의 사항은 면제할 수 없다. 만일 후보생이 G-2.0607d 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표준 안수시험에서 다루는 부문에서의 사역에 후보생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 안수 요구사항을 면제한 이유나 사역 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노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옮겨갈 노회에도 알려야 한다.

G-2.07 안수

G-2.0701 안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는 직제 사역에 안수하는 것은 노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며, 한 사람을 직제 사역에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다. 이 사람은 본인이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안수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해야 하며, 개체교회를 섬기도록 또는 교회 사명 내에서 다른 사역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이 다른 사역은 후보생과 해당 노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G-2.0702 안수 주체

후보생을 사역자로 부른 노회가 일반적으로 후보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며 후보생을 안수하고 위임해야 한다.

G-2.0703 안수식

예배 지침(W-4.04)에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704 안수 기록

안수를 준 노회는 안수와 위임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또 노회는 새로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안수 질문의 의무에 대답한 서면 확인서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노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노회의 정서기는 그 후보생이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 그 후보생이 이전에 교인으로 활동했던 개체교회, 그리고

총회에 이 조치들을 보고해야 한다.

G-2.08 청빙과 위임

G-2.0801 목회자의 공석

개체교회 내 목사직에 공석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목회관계 해소 날짜를 노회가 승인했을 때, 개체교회는 노회의 인도와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G-2.0802 목회자 청빙 위원회 선출

당회는 전체 개체교회를 대표할 목회자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의무는 개체교회가 선출할 목회자를 공천하는 것이다.

G-2.0803 청빙 절차

노회의 절차를 따라서, 또 개체교회에게 보고하기 전에, 목회자 청빙 위원회는 청빙 대상자들의 장점, 적합성, 가능성에 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체교회에 보고해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을 때, 이 위원회는 당회에 이를 알려야 하고,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G-2.0804 청빙 조건

청빙 조건은 청빙 당시에 유효한 노회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해야 한다. 당회는 목회자의 청빙 조건을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 노회는 당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청빙 조건 변경안이 노회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대해 개체교회가 조치(G-1.0502)를 취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청빙 조건에는 최소 12주의 가족 관련 유급 의료 휴가를 포함해야 하며, 미국장로교 혜택 제도(연금과 의료보험 포함) 가입 또는 총회 승인 후속 혜택 제도 가입을 포함해야 한다.

G-2.0805 위임식

개체교회, 노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후보생) 모두가 목회 기간 비제한 청빙 또는 일정 기간 청빙에 동의하면, 노회는 위임식을 조직하고 인도함으로써 청빙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위임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위임 예식은 예배와 함께 진행된다. 예배 지침(W-4.04)에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9 목회 관계의 해소

G-2.0901 공동의회

위임 목회 관계는 오직 노회만 해소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개체교회, 또는 노회 중 어느 누가 목회 관계 해소 절차를 시작했든, 공동의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고 목회 관계 해소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비밀 유지 협약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비밀 유지 협약, 즉 기밀 유지 계약은 특정한 자료, 지식, 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러한 협약은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이 협약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어느 누구와도 협약에 포함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G-2.0902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의 요청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는 노회에 목회 관계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자신의 의사를 당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해당 요청에 대해 조치하고 노회에 이를 제안해야 한다. 만일 개체교회가 관계 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노회가 목회관계를 해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교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 들어야 한다. 개체교회가 출석하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그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목회 관계는 해소된다.

G-2.0903 개체교회의 요청

만일 개체교회에서 목회 관계 해소를 원할 경우에, 위의 G-2.0902와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담임목사와의 목회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개체교회가 당회에 요청하면,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이 공동의회의 의장을 임명해 줄 것을 노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일 담임목사가 이 관계 해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회는 목회 관계를 해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그 목사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 목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목회 관계는 해소된다.

G-2.0904 노회의 조치

개체교회 내의 어려움이 보고되면 노회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당회, 개체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사명이 목회 관계 해소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 노회가 판단하면, 노회는 목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G-2.0905요청받았을 때만 개체교회를 섬길 수 있음

목회 관계 해소 이후, 전 담임목사, 전 부목사는 당회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전 개체교회의 성도들을 목회해서는 안 된다.

G-2.10 사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01 직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회 또는 관련 위원회와 협의한 후, 노회의 사역 수행 전략상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에, 노회는 노회가 정한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사역 장로를 파송 사역장로라고도 불리는 '파송 목사(commissioned pastor)로 파송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사역 장로는 노회가 인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역을 섬기도록 파송받을 수 있다. 이 사역장로를 파송할 때, 노회는 사역 장로가 파송받은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되도록, 성례전을 집전하도록, 주법에 허용된 결혼을 주례하도록 그 사역장로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역 장로를 파송할 때에는 사역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사역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노회는 이 파송을 최소한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G-2.1002 교육, 시험 및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과정에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해서 승인해야 한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G-2.1003 파송식

위에 명시한 사역을 하며 개체교회를 섬기기에 사역장로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노회가 결정하면, W-4.04에 있는 질문들을 확인한 후에 노회가 지정한 목회 사역에 그 사역 장로를 파송해야 한다.

G-2.1004 감독

G-2.1001의 조건에 따라 파송받은 사역 장로는 노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역해야 한다. 충분히 타당한 근거에 기초해 노회는 언제라도 그 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한 명을 멘토와 감독자로 배정해야 한다.

G-2.11 교회 인증 사역

G-2.1101 교회 인증 사역의 형태

사람들은 개체교회, 공의회, 교회 산하 조직체에서 사역하도록 인증받고 청빙받아 직원으로 섬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애써야 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소속 당회와 노회는 총회가 승인한 교단 인증 조직의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교단 인증 조직을 통해 인증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총회의 해당 조직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직은 그 명단을 각 사람들이 속해 있는 노회의 정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G-2.1102 교회 인증 사역과 노회

노회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위한 재정과 시간을 제공하도록 당회를 격려해야 하며, 인증 시에 인증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들 인증받은 사람들의 능력과 헌신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노회는 교회 인증 사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노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다.

G-2.1103 기독교 교육사

a. 기술 훈련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개체교회나 공의회의 교육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인증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성경 해석, 개혁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간 발달, 신앙 성장, 종교 교육 이론과 실행, 미국장로교 정책, 프로그램, 사명에 대한 기술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b. 노회의 책임

노회는 공인 기독교 교육사, 공인 기독교 준교육사의 급여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사역을 감독하는 노회의 관련 부서와 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G-3.0307). 노회 관할권 하에서 교육 사역을 하는 임기 중에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사역 장로이면, 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자와

공인된 기독교 준교육자는 성적 비행 주제가 포함된 경계 교육과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을 소속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수료증은 최소 3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노회는 이 두 훈련 과정 수료 증명서를 국가 인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교회의 공의회

G-3.01 공의회의 일반 원칙

G-3.0101 교회의 하나됨의 표현인 공의회

교회가 여러 공의회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하나 됨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지녔으나, 그 자체로 교회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증거의 소명은 모든 신자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 공의회의 특별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원인 증인들을 돌보고 인도하며 통솔하여, 그 증언이 전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에 의해 운영된다(F-3.0202). 이 공의회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한다. 각 공의회는 서로 독립적이나, 서로 관련되어 있기에 어느 한 공의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의 결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각 공의회의 조치들은 상위 공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노회에 귀속된다.

교회 공의회는 개체교회와 교단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더 신실하게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공의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의 약속에 응답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전한다.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천국
잔치가 올 것을 기대하며,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성례전을 올바로
집전하며 또 올바로 받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을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G-3.0102 교회적 관할권

본 교단의 공의회는 교회적 관할권만을 가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진리, 섬김, 규례, 권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고 이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공의회는 신앙고백을 작성할 수 있으며, 교리상의 오류나 일상의 부도덕성을 지적할 수 있고, 교리나 권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양심의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이 *규례서*의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공의회에 제기된 사안들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의회는 '예배 지침'에 따라 성례전의 집전을 허가할 수 있다. 공의회는 교회의 예배, 사명, 운영, 권징에 대한 계획과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 진보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공의회는 해당 관할권 내의 교회의 리더십, 지침,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G-3.0103 참여와 대표성

교회 공의회는 교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잘 드러내어야 하며, 의사 결정과 고용 과정에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적인 참여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F-1.0403). 이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회는 사역 관련 은사와 자격(G-2.0104)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또 임원을 선출하는 개체교회와 공의회 회원의 권리(F-3.0106)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단은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 공의회는 이에 대한 실행을 더 북돋우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대표성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일치와 다양성 원칙의 실행과 관련해 공의회에 조언하며, 리더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직원 채용과 관련해 F-1.0403에 명시된 일치와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공의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대표성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될 수 없으며, 다른 위원회의 하부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G-3.0104 임원

개체교회의 담임목사가 해당 당회의 의장, 즉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동사 목사가 있는 개체교회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당회장이 되며, 특정 회의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그 담임목사는 그 노회의 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만일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없다면, 또는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다른 의장을 찾을 수 없다면, 노회가 의장을 보내야 한다. 온라인 당회 회의를 허용하는 절차를 공의회가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의회의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공의회 안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공의회 의장은 해당 공의회 자체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고 폐회해야 한다.

당회보다 상위에 위치한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가 정한 임기에 따라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공의회 의장은 선출될 당시에 진행을 맡게될 공의회의 회원이거나 대의원이어야 한다 의장은 그 임기 중에 그 공의회의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의회는 의장의 부재 시 누가 사회를 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서기를 선출해야 하며, 그 서기는 그 공의회의 업무를 기록하고, 회원 명부를 관리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등록명부를 관리하고, 공의회 기록물을 보관하며, 교단의 다른 공의회가 요청할 경우 기록물을 발췌하여 제공해야 한다. 서기의 확인을 거친 이러한 발췌물은 교단의 모든 공의회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당회의 서기는 당회가 정한 임기에 따라 당회에 의해 선출된 사역장로여야 한다. 노회, 대회,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라 칭하며, 공의회가 정한 한시적 임기로 공의회에 선출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역장로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여야 한다. 정서기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G-3.0110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의 요구에 따라 다른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G-3.0105 회의

공의회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a] 회의는 *로버트 의사진행규칙 신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의 최신판에 기초해 진행해야 한다. 다만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또한 공의회는 투표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그 조직체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분별의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의 최신판에 따라, 공의회와 그 전권위원회와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회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자기술의 활용을 통해 동시적으로 듣고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면 회의에 전자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의회는 해당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의사 진행 규칙과 일반 진행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지만, 투표에서 그 결정과 다른 방향으로 투표를 했던 구성원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개시나 저지의 의미가 아니다.

a. 이의는 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선언이다. 이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회기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성원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b. 항의서는 공의회의 결정이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에 해당되거나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는 서면 진술서이다. 항의서는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공의회의 회기 내에 폐회 전에 해당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의서가 격식에 맞는 정중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면, 이를 회의록에 첨부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의회가 작성한 답변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다.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G-3.0106 사명의 수행

교회가 사역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태와 구조는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 수행은 공의회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사명의 수행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정책과 절차 실례를 모아 참고 자료집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행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은 공의회의 재량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고 자료집은 특정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 사역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사명 수행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적 비행 정책, 괴롭힘 관련 정책, 유소년 보호 정책, 반인종차별 정책. 각 공의회의 정책에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 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공의회는 그 임무의 일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조직체가 해당 공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공의회는 서로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하고 있기에,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이 드러난다(F- 3.0203). 하위 공의회는 그 구성원이나 대의원을 파견하여 상위 공의회 사역의 기획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명, 예산, 직원 관리, 평등 고용, 공정한 보수 같은 사안과 관련해 조직 간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 교회 사명의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 교회의 하나됨과 상호의존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사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해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행정 직원 경비를 포함, 운영 경비 관련 예산을 준비해 채택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그 산하 개별 교회들이 낸 상회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상회비를 걷어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산하 교회의 당회에 상회비 분담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회비를 결정하는 당회의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G-3.0107 기록물

각 공의회는 완전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공의회의 회의록과

기타 모든 공식 기록물은 해당 공의회 또는 그 공의회의 합법적인 승계 기관의 영구 자산이다. 공의회가 해체될 경우, 그 공의회의 기록물들은 그 해체 직전에 해당 공의회의 바로 위 공의회의 기록물이 되어야 한다. 각 공의회의 서기는 그 조직의 기록물을 '장로교 역사협회'에 영구 보관할 것을, 또는 미국장로교 신학교의 온도 및 습도 조절 문서보관 환경에 영구 보관할 것을 해당 조직에 추천해야 한다.

G-3.0108 행정 감사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의 업무를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

a. *일반 행정 감사*

각 공의회는 그 조직의 회의 빈도에 따라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하며, 해당 조직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체의 회의와 조치들, 그 조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임원들, 그 조직의 관할권 안에 있는 공의회를 감사해야 한다. 하위 공의회의 절차들을 감사할 때에, 상위 조직은 그 절차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헌법에 부합하는지[b], 신중하고 공평한지, 전체 교회의 사명에 충실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상위 조직의 합법적 명령이 준수되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b. *특별 행정 감사*

상위 공의회가 하위 공의회의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을 어느 때라도 감지하면,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게 어떤 기록물이라도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시정 지시*

사안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가 이 사안을 재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행정 감사 외에도, 교회 권징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 절차에 의거해 감사와 시정을 진행할 수 있다.

G-3.0109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공의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해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바로 위의 공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타 공의회와 연합하여 상기 기구들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의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F- 1.0403, G-3.0103).

위원회는 시행방안을 연구하여 권고하거나,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에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공의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회 위의 공의회들의 위원회는

가능하면 거의 동수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공의회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의회는 전권위원회 권한의 범위와 해당 권한에 대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공의회는 두 유형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a. *사법 전권위원회*

사법 전권위원회는 **'교회 권징'**에 의거해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의 절차를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사법 전권위원회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D-5.0000 참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대회들은 G-3.0404 와 D-5.0101에 따라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b. *행정 전권위원회*

행정 전권위원회는 교회의 사법 절차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을 다루며 판단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의회의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당 공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행정 전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기능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당회 사역) 사역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교인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체교회 내 기관을 방문하는 일.

(2) (노회 사역)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3) (노회 사역) 노회 가입을 원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일, 즉 청빙 조건의 승인, 안수와 위임 위원회 승인. 견습 중인 후보생을 받아들이는 일.

(4) (노회 사역) 이민자 사역 개발, 새로운 개체교회의 조직, 개체교회 간의 합병, 또는 연합 (G-5.05).

(5) (노회, 대회, 총회 사역) 직속 관할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고된 특정 공의회, 개체교회, 기관을 방문하여[c],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 다만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그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목회관계를 해소할 권한이 없다 (G-2.0901).

(6) (모든 공의회 사역)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 피의자의 사망 또는 관할권 거부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 관련 관할권이 종결되었을 경우에 피의자에 대해 목회적 조사를 하는 일 (D-10.0401c). 이 조사를 사법적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되나, 제기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해당 공의회에 적절하게 권고해야 한다.

노회, 대회,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가능하면 동수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이를 구성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이 결정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여서는 안 된다. D-5.0204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당회의 전권위원회는 최소한 두 명의 사역장로와 한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한 명의 평신도 목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해당 당회가 관리하는 개체교회와 위임 목사 또는 임시 목사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그 모든 활동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그 기록물을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에 제출해 공의회의 기록물로 보존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조치는 그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의 조치로 간주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임무는 위원회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행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이를 그 공의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공의회는 공의회의 조치들을 수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 전권위원회의 조치를 부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특정 조직이나 공의회 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통보해야 하며 이로써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G-3.0110 행정 담당 직원

당회 위의 공의회들은 그 조직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F-1.0403). 공의회는 바로 위의 공의회와 협의하여, 그 조직의 사역에 필요한 직원을 공유할 수 있다. 공의회는 사명 수행 지침서(에 임원 선출 절차, 기타 직원의 고용, 직무 설명, 업무 평가 방법, 고용 해지 방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G-3.0104).

G-3.0111 공천 절차

당회 위의 모든 공의회는 공의회에서의 선출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절차는 조직체의 공천이 해당 공의회 구성원을 잘 대표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에 대한 교단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도록 해야 한다(F-1.0403).

G-3.0112 보험

각 공의회는 재산 보험과 책임 보험을 구입해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선출직 임원, 지명직 임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G-3.0113 재정

각 공의회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채택해 해당 공의회의 영역 내에서 교단의 사명을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회계사가, 또는 회계 절차에 정통한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모든 재정 장부와 기록물에 대한 전체 재정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사자는 회계 담당자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려는 차원이다. 전문 회계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감사의 절차나 실행을 요구하거나 혹은 요구하지 않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G-3.02 당회

G-3.0201 구성과 책임

당회는 개체교회의 공의회다. 당회는 개체교회가 사역장로로 선출한 사람들[d], 위임 목사, 부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당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담임목사가 당회의 의장(당회장)이 되어야만 한다. 담임목사 또는 임시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는 모일 수 없다. 만일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또는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다른 당회장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노회가 당회장을 보내야 한다. 공석,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당회장이 없는 경우, 노회는 규정에 따라 당회장을 보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이끌고[e] 개체교회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증거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개체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더욱 그러한 공동체로 발전한다.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당회는 교회의 표지(F-1.0302)와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정립해온 정체성(F-1.0303)과 교회의 궁극적 목표(F-1.0304)를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당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개체교회가 예배, 교육, 영적 양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말씀 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승인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하도록 하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의 헌신을 촉구하며 공동체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이끄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계획하고 이끄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범교회적 차원의 노력을 시작하고 이에 호응하는 일이 책임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예배 지침의 원칙에 따라 주의 만찬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진행하게 하며, 필요할 때 세례식을 진행하게 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며 개체교회가 성례전에 구현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개체교회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활동교인 명부를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검토하여 교인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권면하는 일, 양육, 교육, 교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 개체교회가 선출한 사역장로와 집사를 훈련하고 검증하며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대한 관대함과 신실한 청지기적 자세를 장려하는 일, 교회 사역의 증대를 위해 개체교회의 물리적 자산을 관리하는 일, 집사, 이사, 개체교회의 모든 기관의 사역을 인도하는 일, 개체교회의 행정 직원을 고용하는 일, 전체 교회의 사명에 개체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일, 개체교회와 공동체 내에서의 교리의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증거하는 일, **교회 권징** *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G-3.02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당회는 타 공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체 교회의 삶에 동참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당회가 다음의 일을 행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a. 개체교회 내에서 사역장로를 최소 일 년의 임기의 노회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

b. 대회 및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대회 및 총회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 장로를 노회에 추천하는 일. 이를 위해 당회는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포용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함(F-1.0403).

c. 노회, 대회, 총회의 방향과 지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또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준수하며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

d. 노회 대표들이 방문했을 때 이들을 환영하는 일.

e. 교회의 사명에 있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노회에 제안하거나, 노회를 통해 대회 및 총회에 제안하는 일.

f. 노회와 총회가 그 관련 조항에 따라 요청한 통계 자료, 기타 정보를 자발적 헌금과 함께 노회[8], 총회에 보내는 일.

G-3.0203 회의

당회는 그 정기 회의를 최소 분기에 한 번 열어야 한다. 당회장[h]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당회원 두 명이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임시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 당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회의 소집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건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임시 당회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 노회가 지시했을 경우에도 당회는 모여야 한다. 당회는 회의 성립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정족수에는 당회장을 포함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수의 사역 장로, 또는 당회에서 현재 시무하고 있는 사역 장로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G-3.0204 회의록과 기록물

당회의 회의록은 G-3.0107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체교회의 모든 회의, 그리고 집사와 재정부가 함께하는 모든 합동 회의의 회의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회는 다음의 명부와 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a. *교인 명부*

G-1.0401, G-1.0402 , G-1.0403에 따라 세례교인 명부, 활동교인 명부, 임시 교인 명부가 있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소천했을 경우, 타 교회 또는 노회로 교적을 옮겼을 경우, 또는 관할권을 거부했을 경우에 교인 명부에서 해당 교인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교인이 요청했을 경우, 교인이 이사갔을 경우, 또는 2년간 교회 활동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당회는 교인 명부에서 해당 교인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당회는 해당 교인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활동 결여로 명단을 삭제할 경우엔 사전에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b. *기록부*

당회가 승인한 세례를 기록한 세례 기록부, 사역 장로와 집사 기록부, 재임 기간을 기록한 위임 목사 기록부, 그 외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기타 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G-3.0205 재정

G-3.0113에 기술된 책무 외에, 당회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채택해 헌금의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헌금을 기독교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헌금과 사용내역을 설명해야 한다. 당회는 헌금 사용 결정에 관한 정보를 개체교회에게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당회는 당회가 정한 임기로 회계 담당자를 선출해야 한다. 당회는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거나 집사회 또는 재정부가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회계 담당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또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표준 재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 모든 헌금은 적법하게 임명된 두 사람 이상이 계수하고 기록해야 하며, 또는 신원 보증 보험에 가입된 한 사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b. 모든 재정 기록을 기록한 재정 장부와 기록물은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임명받은 제직이 감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c.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모든 재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당회 또는 재정 감독 조직체에 제출해야 한다.

G-3.03 노회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지역 내의 교회들의 연합체로 기능하는 공의회로서 그 지역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i]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각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몇 명의 사역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될 수 있으면 동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당회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j]을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F-1.0403과 G-3.0103의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반영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 장로는 그 임기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역 장로가 노회 또는 노회 산하 개체교회 내에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동안, 노회는 해당 사역 장로를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노회의 최소 구성 요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열 개의 당회와 열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다. G-3.01과 G-3.03에서 노회에 부여된 책임을 고려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가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노회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개체교회가 증거[k]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개체교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발전한다. 노회 산하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노회는 교회의 표지(F-1.0302),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를 통해 정립해온 정체성(F-1.0303), 교회의 여섯 가지 궁극적 목표(F-1.0304)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교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받아들이고 합병하며, 그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개체교회를 해산하는 일,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 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 노회 영역 내 교회의 삶과 사명을 확장하는 범교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 전도,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 행정의 부문에서 개체교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노회 회의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미조직 친교모임, 새 개척 교회, 개체교회는 아니지만 노회 영역 내에서 만나고 있는 조직체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 집전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의 만찬을 집전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역 장로를 승인하고 훈련하는 일, 성례전을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여,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일치의 삶을 노회가 살아가도록 노회의 개체교회와 회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실행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인 노회 회원을 안수, 입회, 해임, 위임, 제명, 권징하는 일', 평신도 목회자를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증진하며 개체교회 내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개체교회가 관대함, 청지기직, 섬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가 사명을 발전시키고 전체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에 대한 관할권을 받고 그들의 교인 자격을 다른 개체교회로 옮기는 일, 노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G-3.0302 대회, 총회와의 관계

노회는 다음을 통해 대회, 총회와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a. 대회, 총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음.
b. 교단 안수 시험 채점자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선출함.
c. 대회, 총회의 방향과 지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또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준수하며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함.
d.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대회에 제안하거나, 총회에 헌의안을 제안하거나, 제안된 헌의안에 동의함.
e. 대회, 총회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와 기타 정보들을 매년 제출함.

G-3.0303 당회와의 관계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그 영역 내에 있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개체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그 사역을 조정하고 인도하며 격려하고 지원하며 자원을 제공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a. 노회에 속한 교회의 사명을 위한 전략을 개발함.

b. 성도들과 협의하여 새 개척 교회의 위치를 조정하며, 이전, 분할, 탈퇴, 해산하려는 교회의 위치를 성도들과 협의하여 조정함.

c. 노회 내의 목회자, 임시 목회 사역자, 공인 기독교 교육자, 공인 기독교 준교육자에 대한 관계 해소 조항이 포함된 최소 급여 기준을 마련함.

d. 개체교회 내의 문제를 보고한 당회에 조언함. 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포함한다:

(1.) 보고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조치를 당회에 조언함.

(2.)조정자 역할을 함.

(3.) 문제 해결에 대해 당회의 요청이 있거나, 당회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의지가 없을 경우, 노회는 **교회 권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시정할 조치를 취함.

e. 당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노회가 판단했을 경우 당회의 관할권을 환수함. 자세히 조사한 후에, 또 당회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노회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사안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없거나 다룰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회의 모든 권한을 지닌 행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이 전권위원회는 기존 당회가 있다면 그 관할권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며, 해당 당회는 노회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해야 함.

f. G-4.0206에 명시된 부동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허가를 개체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논의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함.

G-3.0304 회의와 정족수

노회는 매년 적어도 두 번의 정기 노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회의 방향에 따라 회의를 해야 한다. 노회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적으로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m] 그러나 노회 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세 명 이상, 그리고 세 개의 다른 개체교회에서 파송한 대의원 사역 장로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

G-3.0305 회의록과 기록물

노회의 회의록과 공식 기록물들은 노회의 자산이며, G-3.0108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를 받는다. 노회의 정서기는 노회의 회의록과 기록물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노회 회원 명부, 공인 기독교 교육자 명부, 공인 기독교 부교육자 명부, 특정 목회 사역 파송 사역 장로 명부가 이 기록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G-3.0306 노회 회원 자격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며 이들이 하려는 사역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그 영역 내의 사역 승인을 위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 기준을 따라야 한다(G-2.0503a).

노회는 각각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노회 가입 후보자들을 교단의 신학, 성례전, 운영체제 측면에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확인해야 한다.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교사, 전도자, 행정가, 기관 목사, 그리고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역 형태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이들은 노회가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노회는 노회의 지리적 범위 밖에 있거나 노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인증된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회도 다른 노회의 지리적 범위 내에 있으며 다른 노회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다른 노회의 동의없이 허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두 노회가 모두 허락해야 하며 매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사역 기간 중에 노회의 허락 하에 그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이 교단의 노회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3.03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개체교회에게 목사, 상담자, 조언자가 됨

노회는 노회 내의 개체교회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항상 의사소통해야 한다.

각 노회는 노회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 (파송받은 사역장로), 그리고 노회의 공인 기독교 교육자를 목사와 조언자로서 섬기는 일, 노회와 노회 내 개체교회/'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평신도 목회자/공인 기독교 교육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 노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지도하고 교육하며 감독할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망생과 후보생에 대한 노회의 감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회원의 입회와 감독, 목회자 청빙과 임시 목회자 청빙의 승인,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에 대한 감독, 관계 해소, 회원의 제적, 개체교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노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노회는 노회의 권위를 노회 내의 해당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할 때에는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거의 같은 수로 기용하여야 한다. 이는 F-1.0403의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위임된 권한의 결과로 수행된 모든 조치는 노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노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G-3.04 대회[n]

G-3.0401 구성과 책임

대회는 해당 지역에서 교회들의 조직적 표현으로 기능하는 중간급 공의회이다. 대회는 특정한 지리적 관할 내에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가 소집되면, 대회는 노회가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노회는 대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적어도 한 명의 사역 장로와 한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선출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과 F-1.0403과 G-3.0103에 명시되어 있는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이행할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방안은 대회 산하 노회들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노회에서 파송된 대의원은 같은 수의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회는 대회 사역을 위해 선출된 기간동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를 가능하면 거의 동수로 등록하거나, 규정에 의거해 이러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록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참여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대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 인종 지도자를 등록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의장 또는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위임될 때까지 대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대회는 그 영역 내의 교회의 삶과 사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노회가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지원하고자 할 때 대회 산하 노회들의 사역과 사명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로써 대회 산하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성장한다. 대회 산하 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대회는 교회의 표징(F-1.0302)과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정체성으로 삼았던 특징(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궁극적 목표(F-1.0304)를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대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산하 노회들과 협력하여 대회 구역 내에서, 또 총회의 더 큰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청빙, 안수, 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하 노회를 지원하는 일, 산하 교회의 삶과 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범교회적 관계를 산하 노회들과 협력하여 만들고 유지하는 일, 대회 영역 내의 타 교단 그리고 기관과의 연합 선교 사역을 조율하는 일, 대회 산하 노회들 간의 의사소통과 대회 산하 노회와 총회 간의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일, 광범위한 지역적 기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산하 노회에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대회 회의에서, 또 대회 관할권 내에서의 기타 행사와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며 대회가 성례전에 구현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회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산하 노회들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선교, 예언적 증거,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화, 행정의 부문에서 노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 노회의 사역을 감사하는 일, 대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G-3.0402 총회와의 관계

대회는 총회의 방향과 지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또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준수하며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또 전체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총회에 제안함으로써, 총회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o]

G-3.0403 노회와의 관계

각 노회는 대회에 파송하는 대의원을 통해 대회의 책임과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그 산하 노회들의 사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사항들이 그 책임에 해당한다:

a. 산하 노회들을 격려하고 노회들에게 지침을 제시하며 노회들의 사역을 감독하면서,

사명 완수를 위한 연합 계획과 목표를 산하 노회들과 협의하여 개발하는 일.

b. 산하 노회들의 사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요청했을 경우에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c.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는 일, 노회들 또는 기존 노회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연합시키며 합병시키는 일, 기존 노회들의 동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비지역 노회를 신설하는 일, 소수 인종 또는 이민 교회에 있어 선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타의 조치를 취하는 일. 이러한 노회는G-3.0301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게 조직되어야 하며, 노회가 속해 있는 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G-3.0404 기능의 축소

대회는 산하 노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 기능을 축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노회 사역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행정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대회의 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G-3.0401c). 대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와 상임 행정 전권위원회의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최소한 2년에 한 번 모여야 한다. 대회 산하의 노회들은 노회와 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이와 같은 대회의 기타 역할들을 맡아야만 한다.

서로 인접해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회들은 각 대회 산하 노회의 3분의 2의 승인으로 행정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으며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각 대회 내의 노회들의 수에 비례하여 전권위원회의 수를 정한다. 각 대회는 그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법적 사안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G-3.0405 회의와 정족수

대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의 정기 노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의 방향에 따라 회의를 해야 한다. 대회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회는 자체적으로 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정족수에는 동수의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적어도 세 노회를 대표하거나 대회 산하 노회들의 3분의 1을 대표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더 큰 쪽을 반영한다.

G-3.0406 회의록과 기록물

대회는 그 회의와 사역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규제를 위해 다음 총회에 이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산하의 노회 수, 그리고 그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모든 중요한 변화들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G-3.05 총회

G-3.0501 구성과 책임

총회[p] 는 전체 교회의 공의회로서 미국장로교 대회, 노회, 당회, 개체교회의 일치를 보여준다. 총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영역 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F-1.0403, G-3.0103). 이들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대의원으로 사역한다:

소속 교인 6000 명 이하: 1 명의 사역 장로와 1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6001-12,000: 2 명의 사역 장로와 2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12,001-19,000: 3 명의 사역 장로와 3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19,001 이상: 4 명의 사역 장로와 4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위임될 때까지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총회는 산하 개체교회들, 공의회들 사이의 일치, 공동체, 사명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이로써 전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 목표를 이룬다. 전체 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총회는 교회의 표징(F-1.0302),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동일시해 왔던 특징(F-1.0303), 그리고 교회의 여섯 가지 궁극적 목표(F-1.0304)를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교회를 위한 종합적인 사역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다른 기독교 조직과의 범교회적 관계와 의사소통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미국장로교의 신앙과 체제와 상응하는 다른 기독교 조직을 총회의 관할권 내에서, G-5.02 와 G-5.03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고 이들과 연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선교 사역자들을 위임하며 파송하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해야 한다.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총회 회의, 관할권 내의 기타 행사와 모임에서의 주의 만찬의 집전을 승인하는 일, 총회의 공식 대표가 참석한 범교회 행사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며 교회가 성례전에 구현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체 교회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교단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전체 교회와 의사소통하는 일, 교회, 세상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노회가 요청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선교, 예언적 증거,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화, 행정의 부문에서 노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와 비전의 사안들을 분별하고 제시하여 교회와 세상에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교육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 이 헌법에 따라 총회에 제시된 갈등을 해결하고 사안 별로 조언하는 일, 전체 교회에 구속력을 갖는 사안에 대해 *규례서* 최신판을 G-6.02 조항에 의거해, 또는 시정과 징계 사안에 대한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규례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가장 최근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갖고 해석하는 일, 총회 정서기 사무처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G-3.05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총회는 다음을 통해 노회, 대회와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a. 노회와 대회가 그들의 헌법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조언하고 자원을 제공함.

b. 대회의 사역을 감독함.

c. 대회의 기록물들을 검토하고 대회가 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함.

d. 새로운 대회를 조직함, 기존의 대회나 대회의 일부분을 분할하거나 연합시키거나 합병시킴.

e. 노회 또는 노회의 일부분을 조직하고 분할하며 연합시키고 합병시키는 대회의 조치를 승인함.

G-3.0503 회의와 정족수

총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바로 이전 정기 총회에 참석한 사역 장로 대의원의 최소 4분의 1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대의원의 최소 4분의 1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면, 총회장, 또는 총회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엔 총회 정서기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요구하거나 동의한 대의원들은 최소 다섯 개 대회의 관할권 내의 최소 열 다섯 개의 노회를 대표해야 한다. 임시 총회의 대의원들은 직전 정기 총회의 대의원들이거나 그들의 교체 대의원이어야 한다. 임시 총회에 대한 공지는 총회 소집 60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이 총회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지문에 명시된 안건 외에는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총회의 정족수는 100 명의 대의원이어야 하는데, 그 중 50명은 사역 장로여야 하며 50 명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여야 한다. 이들은 적어도 전체 대회들의 4분의 1을 대표하는 노회들로부터 파송되어야 한다.

제 4 장
교회와 민법

G-4.01 법인과 이사

G-4.0101 법인과 권한

민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각 개체교회는 법인을 조직해 유지해야 한다. 법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개체교회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집사와 사역 장로를 그 직제 사역에 선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교인 중에서 이들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사역 기간은 G-2.0404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이나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부동산 또는 자산을 수령, 보유, 저당, 관리, 이전함.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각하거나 융자를 얻을 때, 적법하게 구성된 회의에서 개체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사들이 조치를 취해야 함. 해당 자산 증서를 수령하고 행사함. 해당 자산 증서를 보유하고 지킴. 개체교회의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모든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함. 이 모든 목표는 당회의 권위에 따라야 하며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이사들의 권한과 책무는 당회 또는 집사회의 권한과 책무를 침범해선 안 된다.

민법에 허용된 경우에, 노회, 대회, 총회는 각각 법인을 설립하여 유지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의거해 이사회를 구성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는 다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공의회의 지침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 또는 자산을 수령, 보유, 저당, 관리, 이전함.

G-4.0102 법인의 구성원

개체교회 또는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법인의 구성원이 될 자격과 이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법인체가 이사 선출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민법상 자격에 문제가 없는 개체교회 당회의 사역장로들이 법인체의 이사가 되어야 한다. 노회, 대회, 총회는 공의회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사를 선출한다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

G-4.02 교회 자산

G-4.0201 사명 완수의 도구로서의 자산

미국장로교, 산하 공의회, 조직체, 산하 개체교회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세상에서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G-4.0202 자산과 관련된 결정

이 교단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검토하며 수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이 헌법의 조항들은 자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G-4.0203 교회 자산의 신탁 보유

개체 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를 위해 보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소유권이 법인, 수탁자 또는 비법인 단체에 귀속되어 있든, 그 재산이 개체 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사역에 사용되든,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든 관계없이, 모두 미국장로교의 유익과 사용을 위한 신탁 형태로 보유된다.

G-4.0204 헌법에 어긋나는 자산의 활용

미국장로교 개체교회가 소유한 자산 또는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를 위해 소유된 자산을 미국장로교 개체교회가 헌법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노회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보유하거나 활용하며 적용하고 이전하며 매각해야 한다.

G-4.0205 해산 또는 소멸된 개체교회의 자산

개체교회가 노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거나, 교인의 이탈, 사역 포기, 기타 사유로 인해 개체교회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산은 노회가 지정하고 제한하며 지명할 수 있는 사용,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되거나 활용되며 적용되어야 하고, 또는 해당 자산은 노회가 지시한 대로 매각 또는 처분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두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G-4.0206 교회 자산의 매각, 저당, 임대

a. *교회 자산의 매각 또는 저당*

개체교회는 해당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융자를 얻거나 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조건이 걸려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b. *교회 자산의 임대*

개체교회는 해당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타 부동산들을 5년 이상 임대해서는 안 된다.

G-4.0207 분열된 개체교회의 자산

노회가 헌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만, 개체교회와 미국장로교 사이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G-3.0303b). 개체 교회 내 구성원 간에 분열이 발생하고, 노회가 미국장로교 안에서의 화해나 개별 교회로의 분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경우, 노회는 어느 한 분파가 미국장로교 내에서 진정한 교회로 식별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분파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에 어느 분파가 개체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받았는지와는 관련 없다.

G-4.0208 예외 사항들

이 장의 규정은 미국장로교의 모든 개체교회에 적용된다. 다만 개체교회가 미국 남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와 미국 연합장로교(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연합하여 미국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U.S.A.))를 형성하기 전에 해당 개체교회가 속해 있던 교단 헌법의 비슷한 조항에 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개체교회가 미국장로교 설립 이후 8년 이내에 정기 회의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투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소속 노회에 그 투표 사실을 통보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투표한 개체교회는 미국장로교 설립 직전에 속해있던 헌법 규정하에 그 자산 명의를 보유하며 법인 설립과 자산 소유의 특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문단은 수정할 수 없다(G-6.05).

G-4.03 비밀보장과 그 예외인 경우

G-4.0301 신뢰와 개인 정보 보호

목회적으로 사람들을 돌볼 때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제한된 목회 사역에 위임된 사역장로(G-2.10)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신뢰의 공동체, 책임을 지는 공동체,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개인의 비밀 보호는 근심, 의문, 염려를 공유하고 영적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성스러운 공간이 만드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비밀 보호가 피해 사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 취약 성인에 대한 신체 학대, 방치, 성적 학대 관련 피해 사실 인지 또는 위험성을 감추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파송 사역 장로는 목회 과정에서 그들이 받은 모든 정보와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그 비밀과 관련된 사람이 개인 정보를 밝혀도 된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경우,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파송 사역장로가 어떤 사람에게 급박한 신체 위해의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파송 사역장로는 그 개인 정보를 밝힐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G-4.0302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

직제 사역을 맡고 있는 교단의 구성원, 그리고 미국장로교 또는 미국장로교 소속 개체교회 에 의해 고용된 모든 공인 기독교 교육자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방치 및/또는 성추행과 성적 학대로 인한 위험 또는 위험의 가능성을 다음의 경우에 교회 사법 당국 또는 민사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 G-4.0301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외 의 의사소통으로 이와 같은 정보를 얻었을 때, (2) 전문가-고객 비밀 보장 의무에 법적으로 영향 받지 않을 때, 또는 (3) 앞으로도 신체적 위해나 학대가 행해질 위험이 있다고 목회자가 합리적 으로 판단했을 때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범교회적 연합과 일치

G-5.01 범교회적 일치 노력

G-5.0101 범교회적 연합

미국장로교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 됨을 더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교회와의 대화, 협력, 행동의 기회에 열려 있다. 미국장로교는 다른 개혁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교 조직체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G-5.0102 종교 간 관계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비기독교 종교 조직체들과의 대화와 이해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타종교 조직체나 사람들과의 정중한 대화와 상호 관계를 나눌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징이요 이를 이루는 도구임을 믿기 때문이다.

G-5.0103 일반 사회 조직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장로교는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관과의 대화와 공동 행동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고 또한 상대방의 노력에 호응할 것이다.

G-5.02 타 교단과의 관계

G-5.0201 교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G-5.0101), 총회는 다른 기독교 조직들과 함께 언약, 협정을 맺고 목적과 지향 선언문을 만들도록 허가하고 지시할 수 있다. 총회가 허가하고 승인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세례의 상호 인정, 목회자 교류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을 다룰 것이다. 교단의 모든 공의회들은 기독교 타 조직과의 상호 인정과 격려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회를 갖도록 권고 받는다.

총회는 총회사무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관들의 최상위 공의회 또는 운영 기구와 교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 미국 밖에 있는 교단으로 미국장로교와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에 있으며 총회가 인정한 교단.

b. 미국장로교가 회원으로 있는 범교회 조직의 회원 교단.

c. 미국장로교가 총회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인 범교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교단.

G-5.0202 완전 교류

미국장로교 총회는 총회가 인정한 교단들과 완전한 교류 관계를 유지한다. 완전한 교류 관계에는 범교회적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의 상호 인정과 목회자의 상호 교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단의 모든 공의회들은 미국장로교와 완전한 교류 관계에 있는 교단들과의 상호 인정과 격려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회를 갖도록 권고 받는다.

G-5.0203 범교회적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F-1.0302a, G-5.0101), 위에 언급된 관계에 더하여, 총회사무국은 타 기독교 조직과 함께 공식 협정과 범교회적 양해 선언문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정과 선언문은 상호 협력에 대한 지침으로 총회가 승인해야 하며, 노회의 찬반 투표를 위해 각 노회에 보내야 한다.

G-5.03 완전한 유기적 연합

다른 교회 조직과 미국장로교 간의 완전한 유기적 연합은 다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a. 제안된 연합안에 대해 총회가 승인하고 그 권고안을 노회들로 보냄.

b. 모든 노회들의 3분의 2의 서면 승인;

c. 차기 총회, 또는 제안된 연합안에 명시된 다른 총회에서의 승인과 완결.

G-5.04 연합 노회

미국장로교 노회는 타 개혁 교단의 회원으로 하나 이상의 동등한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a과 연합 노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또는 각 조직이 속한 동등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G-5.0401 헌법적 권위

연합 노회는 연합체에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만 한다. 교단의 헌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한 교단의 모든 강행 규정은 다른 교단의 헌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 서로 상충될 때, 연합 노회는 각 교단의 최고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에 유권 해석 또는 헌법 수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G-5.0402 연합을 위한 계획

연합 노회는 연합 당사자인 각 노회 또는 운영 조직의 3분의 2 투표로 연합 계획에 찬성할 때에만 창설할 수 있다. 그 연합체를 구성하는 각 조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대회 또는 운영 조직이 연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G-5.05 연합 개체교회 전도 사역

선교 전략의 필요에 따라, 노회는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 간의, 또 타 기독교 교단의 개체교회와의 연합 전도 사역을 만드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기독교 타 교단의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식하며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지키는 교단이어야 한다.[b]

a. 이와 같은 연합 사역은 이에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교단들의 헌법들이 서로 다를 경우, 한 헌법의 강행 조항은 다른 헌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사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강행 조항들이 상충될 경우, 개체교회의 공의회는 바로 위 상위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에 이의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b. 이와 같은 연합 사역은 적법하게 구성된 각 개체교회의 정기 회의에서 각 개체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교단의 노회 또는 동등한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이 승인해야 한다. 연합 전도 사역 계획안의 조항을 미국장로교 헌법에 대한 수정 또는 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c. 연합 사역에 관련된 개체교회 및 이에 관련된 타 교단의 다음 상위 공의회나 운영 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노회는 그 교단으로부터 개체교회를 받아들이거나 그 교단으로 개체교회를 이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전을 통해 그 개체교회의 선교 전략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당시에 이 교단은 미국장로교와 완전한 교류 또는 교신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G-3.0303b).

제 6 장
헌법의 해석과 개정

G-6.01 개혁

미국장로교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된 교회,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한다(F-2.02).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헌법 해석과 개정 절차는 신실함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G-6.02 헌법에 대한 해석

총회는 *규례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징계 사안에 대해 이 항목에 설명된 방식으로 또는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졌다면, 이 해석은 전체 교단의 공의회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총회는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자문위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가능한 한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 정서기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 헌법 자문위원으로 6년의 전체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6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추가로 4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재선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총회는 헌법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자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교단 공의회에서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다음 총회 개회 120일 이전에 총회 정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서기는 해석에 관한 모든 요청을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련된 해석은 예외이다. 헌법자문위원회는 다음 총회 개회 60일 이전에 그 보고서와 권고안들을 총회 다음 회기에 제출해야 한다.

G-6.03 신앙 고백서 개정

미국장로교의 고백문들[a] 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모든 단계가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a. *신앙 고백서* 개정 제안을 교단 내에서 연구하도록 총회가 승인한다.

b. 총회가 이 제안을 검토하도록 15명 이상의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 중 같은 대회에서 참여한 사람이 2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 위원회는 제안을 기안한 위원회 또는 공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c. 다음 총회는 연구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정 제안을 승인한 후에 투표를 위해 각 노회에 보낸다.

d. 개정 제안은 노회의 3분의 2의 서면 찬성을 통해 승인을 받는다.

e. 개정 제안은 노회의 3분의 2의 찬성 이후에 개회되는 다음 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제정된다.

G-6.04 규례서 개정

*규례서*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모든 단계가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a.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 요청은 다음 총회 개회 120일 이전에 총회 정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b. 정서기는 *규례서* 개정 제안을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G-6.02). 헌법 자문위원회는 언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또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양립성 측면에서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총회 개회 전 적어도 60일 이전에 자문위원회는 권고안과 함께 그 연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에 대한 채택 또는 거부 의견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제안안에 대한 수정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총회는 헌법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모든 권고안을 검토하기 전엔 어떤 개정안도 검토해선 안 된다.

c. 동일한 총회가 개정 제안안을 승인하고 그 안을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낸다.

d. 노회는 개정 제안안을 보낸 총회가 폐회하고 1 년 이내에 총회 정서기에게 투표 결과를 보내야 한다.

e. 총회 정서기는 모든 노회의 과반수가 규례서 수정안에 대해 찬성했음을 적시한 서면 보고서를 접수한다.

f. 이렇게 승인된 개정안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총회의 폐회 후 1년 후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G-6.05 예외 사항

이 헌법의 G-4.0208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G-6.06 특별 조항의 개정

신앙 고백문들의 개정 절차와 완전한 유기적 연합(G-5.03)을 이루는 절차는 각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예배 지침

예배 지침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예배 지침'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가 한다고 기술한 역할을 사역 장로도 수행할 수도 있다.

머리말

이 '예배 지침'은 교회의 신앙, 삶, 예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예배 지침'의 신학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의 방향을 따르며, 범교회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풍부한 전통 유산과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권장하고 있다.

'예배 지침'은 정해진 예배 순서와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예배 책자가 아니다. 이는 우리 예배의 바탕에 있는 신학을 설명하고 있으며, 적절한 예배 형식을 제시하고,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 섬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지침서는 미국장로교 개체 교회와 공의회의 예배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제시한다. 이는 개혁주의 예배의 비전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발전을 장려하며,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도록 이끈다. 예배 지침은 우리 예배에 질서를 부여하는 헌법 문서로 교단 내에서 권위를 갖는다.

성경, *신앙고백서*, *규례서*의 다른 부분들을 직접 인용한 것들은 괄호로 표기하며, 기타 성경, 신앙고백, 교회 자료들은 각주로 표기했다.

제 1 장

기독교 예배의 신학

W-1.01 기독교 예배: 서론

W-1.0101[12]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모여 예배한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섬긴다.

W-1.0102[13] *은혜와 감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에 응답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이 흐름은 성경 전체와 역사, 일상에서 나타나며, 기독교 신앙과 삶, 예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W-1.0103[14]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다윗의 집안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람들이 이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셨다.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

---

12 W-1.0101: 사 6:3. 계 4: 8, 11. 7:12. 니케아 신경 1.1. 사도 신경 2.1; 스코틀랜드 3.01; 하이델베르크 4.122; 제 2 헬베틱 5.023; 웨스트민스터 6.011–6.013, 6.112–6.113; 스코틀랜드 7.001, 7.045–7.048; 대요리문답 7.111, 7.213–7.216, 7.289; 1967년도 신앙고백 9.35–9.37; 벨하 10.1; 간추린 신앙고백 11.1;

13 W-1.0102: 시 136:1; 렘 33:1–9; 롬 6:1–11, 8:12–17; 요일 4:19; 하이델베르크 4.002; 1967년도 신앙고백 9.17; 간추린 신앙고백 11.4;

14 W-1.0103: 창 2–3. 9:1–17. 15–17; 출 19–31, 34; 삼하 1:1–17; 렘 1:4–10, 31:31–34; 히 8:8–12; 스코틀랜드 3.02–3.06; 웨스트 민스터 6.037–6.042; 1967년도 신앙고백; 9.18–9.19; 간추린 신앙고백 11.3.

W-1.0104[15]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간추린 신앙고백 11.2)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모든 이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창조 시에 선포되셨고, 성경 안에 약속되었고 계시되었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또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형상화된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응답의 본보기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완전하고 분명한 계시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닫는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경배한다.

W-1.0105 성령

성령은 "생명을 주며 새롭게 하는 존재"(간추린 신앙고백 11.4)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한다. 성경은 창조가 시작될 무렵 성령이 어떻게 운행했는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름부었는지,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는지, 오순절에 어떻게 교회에 임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같은 성령이 여전히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해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감사하며 응답하도록 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준비시키며, 성례전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고 양육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보내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구성원이 교회 내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W-1.0106[16]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

기독교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세례와 주의 만찬이 거행되는 모든 곳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의 신비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 일상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같은 예배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15 W-1.0104: 요 1; 롬 10; 고후 4; 빌 2; 골 1; 히 1–2; 계 19; 니케아 신경 1.2; 사도 사도신경 2.2; 스코틀랜드 3.06–3.11; 제 2 헬베틱 5.001–5.004, 5.062–5.079; 웨스트민스터 6.043–6.50; 바르멘 선언 8.10–8.15; 1967년 신앙고백 9.07–9.11, 9.21–26, 9.32–33; 간추린 신앙고백 11.2.

16 W-1.0106: 눅 24:13–35;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8; 하이델 베르크 4.065;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34–5.13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78–6.080, 6.140–6.145; 소요리문답 7.088; 대요리문답 7.264; 바르멘 신학선언 8:16–8.18, 8.26;
1967년도 신앙고백 9.27, 9.30, 9.35–9.37; 간추린 신앙고백 11.4.

W-1.0107[17] *예배와 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씀과 성례전은 교회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준비시킨다.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사명은 세례를 통해 시작되며, 주의 만찬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며,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은 세례에서 시작되어, 주의 만찬을 통해 성장해, 주의 말씀을 통해 그 형태를 갖춘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W-1.02 시간, 공간, 물질

W-1.0201[18] *창조와 구속*

시간, 공간, 물질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으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물질의 봉헌을 통해 드려지는 기독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공간, 물질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

W-1.0202[19] *시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일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으며, 토라, 즉 모세오경은 칠 일 중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도록 가르친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기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한 주의 첫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도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선포했다.

---

17 W-1.0107: 사 55:1–13; 마 28:1–20; 요 21:15–19; 고전 13:13; 고후 13:13; 엡 4:1–16; 니케아 신경 1.3; 바르멘 신학선언 8.26; 1967년도 신앙고백 9.48-9.52.

18W-1.0201: 롬 12:1–2; 1967년도 신앙고백 9.16.

19 W-1.0202: 창 1:1–5. 2:1–3; 시 1:2, 92:1–4; 사 58:1–14; 욜 2:1–16; 눅 24:13–35; 행 1:14; 2:42; 3:1, 10:9, 20:7; 롬 14:5–6; 골 2:16–17; 계 1:9–11; 하이델베르크 4.103;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23–5.2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8–6.119; 소요리문답 7.057–7.062;

대요리문답 7.225–7.231.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거행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주의 첫째 날에 계속 모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만찬을 했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교회는 예배 절기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 중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지키셨던 이스라엘의 절기와 금식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기독교 교회력의 이러한 양식은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고자 할 때,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갈 때,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한다. 교회의 새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한다.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공현이 포함된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이 그 시작이다. 주현절 후에는 예수의 세례와 산상 변모를 기념한다. 교회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이다. 재의 수요일, 성 삼일(세족 목요일, 성 금요일, 부활 전야), 주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절이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이 바로 그 시기다. 성령 강림절 이후 삼위일체 주일, 모든 성도의 날, 그리스도 통치 주일을 기념한다.

또한 매일 기도의 전통은 교회를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수백 년간의 기독교 전통, 예수님의 삶의 실천과 연결시켜 준다. 큰 모임에서, 작은 모임에서, 또는 집에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예배와 개인의 삶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일반 생활 및 농업 생활 주기, 문화 및 가족 기념 행사, 중요한 사람 및 사건 기념 행사,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고려해 예배에서 다른 기념일들을 기념한다.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도 적절한 일이다.

W-1.0203[20] *공간*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구약 성경은 돌 제단, 성막, 성전 등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 드렸지만, 또 동시에 광야, 산등성이, 호숫가에서도 예배 드렸다고 전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집에서, 동굴에서, 또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교회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예배 공간은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주로 형성된다.

---

20 W-1.0203: 창 28:18; 출 25–31; 왕상 6–8; 스 6:13–22; 시 24:1; 눅 2:22–52;

4:16–21; 요 4:20–24; 6:1–14; 행 2:43–47, 16:25–34; 고전 3:16–17; 벧전 2:4–5;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14–5.2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7.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공간은 공동체를 북돋우며,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공간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 기독교 예배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공간, 세례단, 주의 만찬 제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이 상징물의 배치는 이 상징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예배에서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1.0204[21] *물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를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물질의 선물을 사용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 가지 물건들, 즉 언약궤, 세마포, 제사 도구, 기름, 향료, 악기, 곡식, 과일, 동물을 사용했다고 구약 성경은 전하고 있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우상숭배, 즉 눈에 보이는 물체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흔한 물건들, 곧 그물, 물고기, 병, 기름, 수건, 물그릇, 물, 빵,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그의 가르침, 치유, 나눔의 사역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쳤다.

예수를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물, 빵, 포도주를 상징, 곧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상징,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으로 여겼다. 우리는 이를 성례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이에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의 상징이다.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성장시키신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몸을 찬양의 산 제사로 드린다.

예배 중에 물질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드리는 행위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우리가 지켜가겠다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린다.

또한 우리는 예배 중에 창의적인 은사, 곧 음악, 미술, 연극, 율동, 영상, 휘장, 의상, 도구, 집기, 건축물을 드린다. 우리가 이 은사들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이들은 우상이 된다. 그러나 그 단순한 형식과 기능을 통해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들은 예배에 적합하다.

21 W-1.0204: 창 1:31; 출 25–31, 32; 시 50:7–15; 사 1:11–17; 암 5:21–24; 미 6:6-8; 마 26:6–13; 막 14:22–25; 눅 5:1–11; 요 13:1–20; 롬 12:1–2; 고전 11:17–34, 12:12–13; 스코틀랜드 3.2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6–4.068, 4.096–4.098;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020–5.022, 5.169–5.18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49–6.153; 소요리문답 7.092–7.093; 대요리문답7.272–7.274;1967년도 신앙고백 9.50.

W-1.03 언어, 상징, 문화

W-1.0301[22]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동일하며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람, 곧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셨다.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상징, 문화 형식은 예수의 성육신의 선물에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며 은혜로 다가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릴 수 있다.

W-1.0302[23] 언어

하나님의 신비와 실재는 우리의 경험, 이해, 언어를 초월하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세계에, 성경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한 인간의 모습, 곧 창조주, 언약의 주체, 위로자, 해방자, 심판자, 구속자, 산파, 어머니, 목자, 주권자, 잉태하는 자, 잉태케 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자 하는 단어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은 자연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하나님을 바위, 샘물, 불, 빛, 독수리, 암탉, 사자로 묘사한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한 단어를 쓰시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다 쓰셨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본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미지들 중 몇몇을 사용하셨다. 선한 목자, 신부, 인자가 바로 그것이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언어들을 받아들여 사용했다. 특히 이 세계의 권세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여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성경과 우리의 신학 전통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예배 중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언어는 포괄적이다. 이러한 언어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사용한 깊고 너른 용어와 이미지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을 진실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언어는 포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사람, 문화, 배경,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언어들을 통해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동일하게 포용하시고 이끄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22 W-1.0301: 요 1:1–18; 골 1:15–20; 히 1:1–4; 1967년도 신앙고백 9.27.

23 W-1.0302: 출 3:13–15, 24:17; 신 32:11–12, 18; 시 22:9–10, 23:1, 27:1; 사 40:18–26; 42:14, 43:14–15, 49:15, 55:3–9, 66:13; 겔 34:11–31; 호 11:3–4, 10; 마 17:9; 막 14:36; 눅 5:33–35; 요 10:11–18; 롬 11:33–36; 갈 3:27–29; 약 2:1–9; 제2헬베틱 신앙고백 5.2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4; 간추린 신앙고백 11.1, 11.3.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은 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어 왔으며, 이를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하나되게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들은 여러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의 언어,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언어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며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다.

W-1.0303[24] *: 상징물*

성경에서 일부 이미지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러 면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를 상징물이라 부른다. 구약 성경에는 나무, 성전, 무지개, 강, 양, 종이 두루마리, 건물, 몸 같은 수많은 상징의 예가 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아는 상징에 의존하여 그리스도,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전달했다. 빛, 책, 물, 빵, 잔, 십자가와 같은 일부 친숙한 상징물들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징물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표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선포되고 구체화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완전히 알게 된다. 구약 성경은 예배에서의 상징적 행위들, 곧 금식과 잔치, 기뻐함과 탄식함, 춤추고 노래함, 재의 수요일 십자가 긋기와 기름부음, 씻음과 드림, 정의를 행함과 자비를 베풂과 같은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기존의 신앙 관습, 특히 빵을 찢는 일과 세례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또 일반적인 구제행위, 곧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예배에는 다양한 상징적 행위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신앙 관습들, 또 그 외의 신앙 관습들과 분명하게 연계되어 있다. 모임과 보냄, 무릎 꿇음과 일어남, 말함과 노래함, 씻음과 드림, 재의 수요일 십자가 긋기와 기름 부음, 먹음과 마심, 축복함과 손을 얹음이 바로 그 상징적 행위들이다.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전달하며 우리의 감사의 응답을 전한다.

W-1.0304[25] *문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 또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들은 당시 형성되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과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으며"(갈 3:28),

---

24 W-1.0303: 창 2:9; 9:8–17; 출 15:20–21; 삼하 6:1–5; 시 23:5, 30:11–12; 겔 3:1–3, 34:11–31, 36:24–28, 47:1–12; 욜 2:12–14; 미 6:8; 습 3:14–20; 마 26:26–29, 28:18–20;

막 6:56, 10:21; 눅 9:1–2, 12–17, 10:1–2; 요 6:35, 8:12, 13:1–20; 고전 1:18; 갈 6:14; 계 20:11–15, 22:1–5, 17; 간추린 신앙고백 11.2.

25 W-1.0304: 욜 2:28–32; 행 2:17–21, 10:9–16; 롬 10:13; 고전 9:19–23, 10:23–33; 계 7:9–12; 벨하 신앙고백 10.3; 간추린 신앙고백 11.4; *예배와 문화에 대한 나이로비 성명서* (루터란 세계 연맹, 199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천 년 동안 성장하고 퍼져나가면서, 교회는 온 세계의 문화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곳에서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어린양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상황적이다. 특정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말씀, 이미지, 상징물, 행위를 통합시킨다. 또한 기독교 예배는 교차문화적이다. 신앙 공동체 안팎의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문화 초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편적인 의미를 선포하며, 모든 문화를 초월한 우리 삶의 공통 요소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기독교 예배는 반문화적이다. 복음의 도전적인 면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공의, 정의, 평화의 나라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상호문화적 행사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성, 대화, 평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우리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따라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또 그 교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 외의 문화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제 2 장
개혁 전통 예배의 순서

W-2.01 근거와 원리

W-2.0101[26] *예배 순서의 근거*

예배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야 한다.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교회는 성경의 증언을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이들은 미국장로교 헌법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개혁 전통의 지혜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보편 교회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배 공동체의 문화와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W-2.0102[27] *형식과 자유*

형식과 자유 사이의 긴장은 기독교 예배를 언제나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이다. 어떤 전통은 정해진 예배 순서를 강조하면서 성경에 충실하고자 한다. 또 어떤 전통은 정해진 예배 순서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자유를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예배 형식이 잠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고정된 예배 형식은 신앙의 삶과 신실함을 형성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유형과 관습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좀더 자발적인 형태의 예배 방식은 예상치 않은 통찰력과 영감의 공간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창의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W-2.02 예배를 위한 모임

W-2.0201[28]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한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집합적 행위이며

---

26 W-2.0101: 수 22:5; 요 4:23–24; 계 2:7, 22: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6, 6.112.

27 W-2.0102: 요 3:8;고전 12–14; 갈 5: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08–6.112;
제2 헬베틱 신앙고백 5.219.

28W-2.0201: 출 19:5–6; 신 6:4–9; 마 19:13–15; 막 12:28–31; 벧전 2:9–10; 신성

전례 법전 (제 2 바티칸 공의회, 1963).

우리 공동의 삶과 사역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온 지체들은 마음, 정신, 영혼, 힘을 다하여,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온전히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특별한 은사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개체교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풍성함과 그 개체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적 상황을 예배 순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배 순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W-2.0202[29] 기도로 참여함

기도는 예배의 핵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며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기도는 믿음의 태도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 또 기도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주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며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신실하게 하며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기도에는 찬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헌신 기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침묵이나 찬양으로 할 수도 있으며, 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시편, 찬송가, 영가를 부르는 것은 중요하고 오래된 기도 형식이다. 찬양은 우리의 전인격이 행하는 것이며, 공적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중 자체가 교회의 주 성가대이다. 성가대나 그 외의 찬양 사역자를 조직하는 목적은 기도의 찬양을 하는 회중을 이끌고 돕기 위함이다. 특별 찬양, 성가, 악기 연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체교회의 기도를 더욱 뜨겁게 한다. 더 나아가, 예배의 많은 요소들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예배에서의 음악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한다. 이는 예술적 표현, 즐거움의 원천, 또는 침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의 행위들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릎 꿇는 것, 고개 숙이는 것, 일어서는 것,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춤추는 것, 북을 치는 것, 박수 치는 것, 껴안는 것, 손을 잡는 것,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배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사람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들만이 인정받게 하고 전체 개체교회의 필요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29W-2.0202: 엡 5:19; 골 3:1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16–4.118;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18–5.221; 웨스트민스터
6.114–6.115; 소요리문답 7.098–7.099; 대요리문답 7.288–7.296; 1967년도 신앙고백 9.50.

W-2.03 예배 인도와 직제 사역

W-2.0301[30] 예배를 위한 은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부름 받는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누구라도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며,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보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어떤 이들은 그 은사와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특별한 사역에 부름받기도 하며, 예배 진행과 관련해 특별한 책임을 맡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님과 회중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만 제한되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없고, 예배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W-2.0302[31] 집사

집사는 구제, 전도, 섬김에 대해서 회중을 이끌어, 세상에서 교회가 사역하고 있음을, 또 교회 내에 세상이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집사는 예배 순서에서 특별한 책임을 맡진 않지만, 당회는 집사가 (예배에 참석한 경우)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구제, 전도, 섬김의 사역을 교회의 예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W-2.0303[32] 사역 장로

사역 장로는 그들의 분별력과 운영 능력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의 삶을 성장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노회가 사역 장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파송하면, 사역 장로는 특정 회중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G-2.1001).

특정 회중에서 사역 장로는 예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함께 당회를 섬기는 가운데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설교, 성례전, 합심 기도, 찬양을 준비함. 회중 내의 모든 공적 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하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책임으로 규정된 것은 관여하지 않음. 예배의 종류, 일자, 시간, 장소를 결정함.

---

30 W-2.0301: 롬 12:4–8; 고전 12:1–11; 엡 4:7–16; 벧전 4: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55. 1967년도 신앙고백 9.38–9.40.

31 W-2.0302: 딤전 3:8–13;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8.

32 W-2.0303: 딤전 5:17–22;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7.

예배 공간의 배치, 특별 장식물-꽃, 초, 현수막, 강단 장식, 기타 물건-의 사용,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짐.

W-2.0304[3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라고도 함)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전하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준비시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다음의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성경 봉독 본문 선정, 설교 준비, 예배 기도, 예배 찬양 선정, 예배 보조 유인물 또는 영상, 특정 예배에서의 연극, 무용, 기타 예술 형식의 사용.

W-2.0305[34] *공동 책임과 의무*

특정 회중 내에서, 예배 순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책임이며 당회의 동의를 통해서 정한다. 찬양, 예식서, 성경, 기타 영구 예배 자료의 선정은 당회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동의, 교회 찬양사역자와 교육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다.

찬양 사역 담당자나 성가대 담당자가 있는 곳에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가와 기타 음악 프로그램에 관해 그 담당자와 협의할 것이다. 당회는 이 논의가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특정 예배를 계획할 때 위원회와 논의할 수도 있다.

당회는 회중이 교회 예배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에 관해 회중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가 이 '예배 지침'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특히 사역 장로와 집사 교육 시 이를 교육한다.

당회는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 책임을 지며, 노회의 방향에 따른다. 노회가 개체교회의 예배의 성격, 예배 운영 기준, 교회의 선교와 사역 면에서의 예배의 열매에 관해 당회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노회가 목회 후보생을 준비시키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교육할 때, 이 '예배 지침'을 활용해 예배 관련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33 W-2.0304: 딤전 4:6–16;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7, 5.163.

34 W-2.0305: 고전 12:4–31; 엡 4:11–16.

제 3 장
주일 예배

W-3.01 주일의 예배

W-3.0101[35] *부활의 날*

우리는 주일(일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그 주의 첫째날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은 또 창조의 "여덟째 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창조의 표시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며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W-3.0102[36] *주일 예배 형식*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 말씀을 듣고 떡을 뗀다. 주님은 그 주의 첫번째 날, 곧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날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는 주님의 날에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복음의 온전함을 선포한다.

주일 예배에는 그 외의 행위들이 또 포함된다: 모여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축복받고 파송받는다.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보냄 받는다.

주일 예배의 형식은 주일 아침 이외의 날과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활 전야와 같은 토요일 저녁 예배 때에 주일 예배의 순서를 따른다. 고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새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중 예배는 주일 외의 주중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제시한다.

W-3.0103[37] *예배의 순서*

예배 순서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의미있고 신뢰할 만한 구조를 제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 순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형성시키고,

---

35 W-3.0101: 창 1:1–5; 계 1:9–11; 소요리문답 7.060.

36 W-3.0102: 눅 24:13–35; 행 2:42, 20:7;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6; 1967년도 신앙고백 1967 9:35–37.

37 W-3.0103: 스코틀랜드 3.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08–6.112.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형식이 된다.

이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일예배 순서는 성경, 보편 교회의 전통, 우리의 개혁 전통 유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는 교회의 믿음, 삶,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전이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려 함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주일 예배 순서는 하나의 권장 사항이며, 다른 예배 순서 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특정 개체교회나 문화의 상황 속에서 다른 유형의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것도 적합할 수 있다. 물론 이 순서가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W-3.02 예배 드리기 위해 모임

W-3.0201 예배를 준비함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된다. 서로 인사하고 묵상 기도하며 공지 사항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행위이다.

W-3.0202 예배 초청 문구

예배로의 부름은 대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예배 처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함으로써 예배의 상황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으로 설정된다.

W-3.0203 시편, 찬송가, 영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로 시편을 노래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 죽음, 부활에 비추어 시편을 해석하며, 시편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연구했다. 시편을 찬양하는 것은 개혁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교회는 시편 외에 다른 찬양, 찬가, 영가를 추가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또 다양한 문화로부터, 교회는 여러 악기가 반주하는 회중 찬양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이 풍부한 곡들에서 선곡해 주일 예배 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다.

W-3.0204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여, 또 모인 예배 공동체 위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다. 이 기도는 기도를 하는 그 날의 성경 구절이나 교회력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부터 주제나 형상을 활용할 수 있다.

W-3.0205[38] 죄의 고백과 용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세상과 우리 삶의 죄악된 상태를 마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믿기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 공동체 전체의 찬양에서 공동체 전체의 죄의 고백으로의 이 전환은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혁 전통의 특징들 중의 하나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약속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의 삶에 죄, 포로됨, 상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한다. 고백의 기도에는 은혜를 간구하는 찬양을 넣을 수 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것이다.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한다. 세례대에서 이 예배 순서를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세례의 은혜와 정결케 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으로의 부르심을 우리의 죄의 고백과 연결시킨다. 이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고백으로의 부름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뒤에 다른 순서들을 더할 수 있다. "아버지께 영광을"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과 같은 찬양, 율법의 요약 또는 신실함으로의 부름, **세례식,**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표시인 평화의 나눔과 같은 것이다.

W-3.03 말씀

W-3.0301[39] 말씀 선포의 신학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요 1:14).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신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며 주일 예배에선 필수적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적 예배에서 봉독할 성경 본문을 정할 책임이 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 본문을 정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경의 광범위한 내용과 전체 주제를 균형있게 드러내야 한다. 성경 본문 선정은 교회력의 주기,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

---

38 W-3.0205: 스코틀랜드 3.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31–6.036, 6.081–6.086, 6.097–6.100.

39 W-3.0301: 창 1:1–5; 시 19:1–14; 사 40:1–31; 55:10–11; 눅 4:16–21; 24:13–35;

요 1:1-18; 롬 10:8–17; 약 1:22–27; 히 1:1–4; 4:12–13; 스코틀랜드 3.19;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001–5.00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1–6.010, 6.055–6.058, 6.187–6.190; 소요리문답 7.002–7.003; 대요리문답
7.113–7.115, 7.265–7.270; 바르멘 신학선언 8.10–8.12; 1967년도 신앙고백 9.27–9.30, 9.49.

지역 회중 내의 목회적 관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구집은 다양한 본문을 다루면서 보편 교회와 일관성있게 연결되게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적 예배에서 사용할 성경책 판본을 정할 책임이 있다. 성경 본문은 예배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중요한 변화, 의역, 새로운 번역에 대해 회중에게 알려야 한다.

선포하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그러면서도 분별력있게 연구해야 하며, 매일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복음의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상황에 민감해야 하며,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깊게 들어야 하며,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한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찬양, 연극, 춤, 미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한다: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세례식을 진행하거나 재확인하는 것, 교회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그 응답이다.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말씀의 선포는 불완전하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며,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

W-3.0302[40] 조명을 위한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선포하고, 또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다.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는 개혁 전통의 중요하고 구별되는 특징이다. 성경 봉독과 설교 전에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며, 또 말씀 선포 뿐만 아니라 모든 봉독 전에 이 기도를 한다.

W-3.0303[41] 성경

성경을 공적으로 읽을 때에는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읽어야 한다. 교회 강대상에 비치된 성경을 통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무게감을 전달하며 성경 내용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라도 성경 봉독할 수 있다. 집사는 복음 증거 사역을 맡고 있고 사역 장로는 말씀의 선포에 책임이 있으므로, 집사 또는 사역 장로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회는 모든 성경 봉독자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한다.

---

40 W-3.0302: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005; 소요리문답 7.089; 대요리문답 7.114, 7.265.

41 W-3.030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6; 소요리문답 7.090; 대요리문답 7.267.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개체교회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것이 개체교회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들으려면, 기대감, 집중력, 상상력이 필요하다. 개체교회는 함께 성경을 읽거나, 인도자와 교대로 성경을 읽거나, 노래하듯 성경을 읽거나, 유인물이나 프로젝터 화면을 따라 읽으며 성경 봉독에 동참할 수 있다. 성경 봉독은 말로 응답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성경 본문을 음악을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W-3.0304 음악으로 응답함

시편, 찬가, 성가, 알렐루야 송, 찬양, 기타 음악으로 성경 봉독 후에 응답할 수 있다. 첫 번째 봉독에 대한 응답으로 시편을 찬양할 수 있으며, 이는 개체교회가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에 기초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W-3.0305[42] 선포

예배 중에 읽은 성경 본문에 기초한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이 주는 은혜의 선물과 그에 따른 부름을 회중 앞에 제시한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를 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설교는 기도, 설교 후 찬양, 또는 제자로의 부름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이므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일반적으로 설교한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 외의 방법에는 찬양, 연극, 춤, 미술, 간증이 있다.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배 시간에 봉독한 성경 말씀을 조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의 선포를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 예배 인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과 이들을 서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W-3.0306[43] 믿음의 확인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 믿음의 확인 문구는 성경, 신경, 신앙고백문, 요리문답에서 가져오면 된다. 회중 찬양, 성가, 기타 음악을 통한 응답은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때 개인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세례나 세례의 재확인 때, 세례 예식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가장 초기의 범교회적인 신앙고백인 니케아 신경은 전통적으로 주의 만찬과 연관이 있다.

---

42 W-3.0305: 대요리문답 7.268.

43 W-3.0306: 고전 15:1–11; 빌 2:5–11; 골 1:15–20; 딤전 3:16.

W-3.0307[44] *세례와 그 제자도*

세례식(W-3.0402–W-3.0408), 또 세례 언약과 관련된 기타 예배는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한다. 이 예배에는 신앙고백에 따른 세례의 재확인(W-4.0203), 새 교인 환영(W-4.0204), 섬김을 위한 파송(W-4.03), 직제 사역을 위한 안수와 위임(W-4.04), 삶 또는 사역의 변화(W-4.05), 공동 행사의 기념, 결혼(W-4.06), 부활에의 증거(W-4.07)가 포함된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이때 선언할 수 있다. 곧 예배자들이 세례받도록, 또는 세례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촉구할 수 있다.

W-3.0308[45] *중보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인도자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전체 개체교회가 함께 하는 행위이다. "아멘"이나 기타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한다.

중보와 간구의 기도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보편 교회와 지역 개체교회의 선교와 사역, 피조 세계에 대한 보호와 자원의 적절한 활용, 세계의 평화와 정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사람들, 가난하고 주리고 억압받는 자들, 지역 공동체 내의 구제와 화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치유와 온전함, 그 외의 특별한 필요. 성찬식 중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성도들 중에서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음악을 통한 응답이나 상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배 순서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할 수 있다.

목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섬기도록 부름받았기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중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집사는 구제 사역에 책임이 있고 사역 장로는 개체교회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집사와 사역 장로가 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 그 외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W-3.0309 헌금과 주의 만찬

십일조 및 헌금 봉헌(W-3.0411)과 주의 만찬 집전(W-3.0409–W-3.0414)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한다. 이 행위들은 복음에서 선포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이다. 주의 만찬이 없는 경우에, 봉헌을 한 후에 감사 및 헌신의 기도를 한다(W-3.0415).

---

44 W-3.0307: 마 28:16–20.

45 W-3.0308 요 3:16–17; 롬 8:26–27; 딤전 2:1–7; 히 4:14–16; 벧전 2:4–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16–4.118;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18–5.2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4–6.115; 소요리문답 7.098–7.099;

대요리문답 7.288–7.297; 1967년도 신앙고백 9.50.

W-3.04 성례전

W-3.0401[46] 성례전 신학

성례전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삶에 구현되고 인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다. 또한 이는 인간의 감사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섬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례전은 교회의 공동 예배의 맥락에서 물리적 표시이며 동시에 영적 선물이다. 여기에는 말씀과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기도에 둘러싸여 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들, 곧 물, 빵, 포도주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 개혁 전통은 세례와 주의 만찬-성체 또는 성찬이라고도 함-의 성례전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보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켜오셨음을 인정한다.

W-3.0402[47] 세례의 신학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확정하는 표시이며 봉인이다. 예수는 그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본인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사 기름 부으셨다.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는 생명수의 선물을 주셨다. 예수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통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제자로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사명과 사역을 계속해 나가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이다(롬 6:11).

세례의 성례전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품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 용서, 정결케 됨, 새로워짐,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됨, 하나님 통치의 표지가 그것이다.

---

46 W-3.0401: 스코틀랜드 3.21–3.2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6–4.06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49–6.153; 대요리문답 7.286–7.287.

47 W-3.0402: 창 1:2; 6:1–9:17; 17:1–14; 출 14:1–31; 사 43:1–4; 44:1–4; 55:1–3; 렘 31:31–34; 겔 36:25–27, 47:1–12; 암 5:21–24; 마 3:1–17; 28:16–20; 막 1:1–11;

10:35–40; 눅 3:1–22; 요 1:19–34; 3:1–5; 4:7–15; 7:37–38; 행 1:4–5. 2:37–41; 22:16; 롬 6:3–11; 고전 6:11; 10:1–4; 12:12–13; 고후 1:21–22; 갈 3:27–29; 엡 1:13–14; 2:11–22; 4:4–6; 5:14; 골 2:11–12; 딛 3:4–7; 벧전 3:18–22; 계 7:13–17; 21:6; 22:1–5, 17; 스코틀랜드 3.21–3.2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9–4.074;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85–5.19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54–6.160; 소요리문답 7.094–7.095;
대요리문답 7.275–7.277; 1967년도 신앙고백 9.51.

개혁 전통은 세례를 하나님 언약의 표지로 이해하고 있다. 세례 시의 물은 창초, 홍수, 출애굽 때의 물과 연결된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죄사함의 능력,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구속의 약속과 연결시킨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은혜의 언약의 표지인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하나님이 교회와 맺은 은혜의 언약의 표지이다. 이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또한 세례는 정의와 공의가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상징한다.

세례는 말씀이 선포한 것,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형상화하고 인증한다. 동시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개, 신실함, 제자도로 부르신다. 세례를 통해 성령은 교회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파송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되며 사람들과 서로 하나되며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교회와 하나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의 장벽은 무너지며,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를 찾아가도록 부름 받는다.

신자와 그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포함된다. 신자의 세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감사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어린이의 세례는 그들이 믿음으로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셨다는 진리를 증거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증거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성례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따라서 세례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의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시간을 예배 시에 자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믿음의 고백 시간, 다른 이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 교회에 등록하거나 떠날 때, 안수식, 위임식, 파송식 때,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새로운 삶의 모습은 깊은 헌신, 훈련된 분별,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다. 세례 받을 때에, 또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며,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강건하게 한다.

세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일반적으로 주일에 진행한다. 언약 공동체가 세례식에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속하게 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증거한다. 세례를 공적 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의 대표로 한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세례도 하나다. 미국장로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용하여 집전된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모든 세례를 인정한다.

W-3.0403 세례에 대한 책임

세례는 당회가 승인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전해야 한다. 세례에 대한 당회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모-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이들-가 아이들이 세례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받게 하지 않도록 격려함; 새 신자가 세례 받도록 권면함; 세례 대상자나 그 부모를 심사하고 성례전의 중요성을 교육함; 세례 받은 이를 개체교회의 구성원으로 등록함; 이들이 세상에서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함. 전체 회중은 세례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편 교회를 대신하여 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세례 받은 이들이나 그 부모를 위해 개체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후견인이나 조언자를 지명할 수 있다.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적어도 부모 -또는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세례를 진행하는 회중, 곧 기독교 교회의 활동 교인이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다른 교회의 활동 교인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당회는 이를 검토할 수 있다. 당회가 이 세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당회는 그 다른 교회의 공의회와 의사소통해야 하며 성례전을 집전할 시기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한 이들은 그들의 자녀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활동 교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

공의회는 특정한 경우에 교회 외의 장소, 곧 병원, 교도소, 학교, 군 기지, 기타 사역 장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세례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새롭게 세례 받은 사람의 이름이 공의회의 해당 명부에 기록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G-3.02, G-3.03).

W-3.0404 세례 대상자 소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세례의 성례전을 시작한다. 다른 성경 구절을 사역 장로, 개체교회의 구성원, 또는 세례 증인이 읽을 수 있다. 당회를 대표하여 사역 장로가 각각의 세례 대상자를 소개한다.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하거나 본인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성례전을 받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한다. 부모, 후견인(후견인이 존재하는 경우), 개체교회는 세례를 받으려는 이들을 지지하고 양육할 것을 선서한다. 세례식에는 아무도 혼자 오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가 기뻐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한다.

W-3.0405 믿음의 고백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들의 부모는 악을 거부하고, 우리의 주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믿음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세례를 받는 이들은 교회의 예배와 사명에 적극적으로, 또 책임감있게 참여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선포한다. 초대 교회에서 세례를 확정할 때 사용했던 사도신경으로 그들은 회중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다.

W-3.0406 세례 전 감사 기도

세례를 집전하려는 곳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이끈다. 지난 역사에 걸쳐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음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의 행위를 찬양하고, 성령께서 세례에 임하사 권능을 베푸시고 죄로부터 이끌어내사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간구한다.

W-3.0407 세례의 집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물이 보이게, 그러면서도 물을 적절하게 사용해, 각 사람의 세례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피세례자의 이름]에게 세례를 주노라"(마 28:19). 세례에 사용할 물은 그 지역의 물이어야 할 것이며, 세례수를 손으로 바르거나,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다른 행위들, 곧 손을 얹는다거나 기름으로 안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핵심적인 행위는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된다.

W-3.0408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임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기뻐하며 받아들인다. 적절한 선물을 줄 수 있다. 양초(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함)나 세례 예복(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임)과 같은 선물이다. 예배 순서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 사람을 맞이하는 교회의 방식은, 반복될 수 없는 세례 성례전과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만찬 성례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비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신다. 이 고대의 입문 과정에는 두 성례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세례 이후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다. 방금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W-3.0409[48] 주의 만찬의 신학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되었음을 확증하는 표지이자 봉인이다. 이 땅에서 살며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셨다. 곧 일상의 저녁 식사, 기적적인 연회,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기념식과

48 W-3.0409: 출 12:1–28; 16:1–36; 시 107:1–3; 사 25:6–9. 43:5–7. 55:1–3; 마 5:23–24; 8:11; 14:13–21; 15:32–39; 22:1–14; 26:17–29; 막 6:30–44; 8:1–10; 14:12–25; 눅 4:18–21; 5:27–32; 7:36–50; 9:10–17; 10:38–42; 14:15–24; 22:7–23; 24:13–43; 요 2:1–13; 5:1; 6:1–13; 7:1–39; 10:22–42; 12:1–3; 13:1–35; 21:1–14; 행 1:1–11; 2:42–47; 롬 14:1–

23; 고전
8:1–13; 10:14–33; 11:17–34; 15:20–28; 갈 3:27–29; 엡 1:22–23; 빌 2:5–11; 골 3:1–4;
살전 4:16–17; 약 2:1–7, 14–17; 요일 3:16–18; 계 19:9; 스코틀랜드 3.21–3.2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75–4.082;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93–5.21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61–6.168;
소요리문답 7.096–7.097;
대요리문답 7.278–7.285; 1967년도 신앙고백 9.52.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 참 포도나무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지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드셨다. 그는 빵과 포도주가 각각 그의 몸과 피, 곧 새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으며 이 만찬을 계속 함으로써 그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셨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기도, 공동 식사에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빵과 잔을 나눌 때, "많은 우리는 한 몸이 된다"(고전 10:17).

주의 만찬의 성례전은 신학적 의미가 풍성한 연회를 베푸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 드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성령님을 모셔 들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통함,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 개혁 전통은 주의 만찬을 하나님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의 만찬의 빵은 유월절의 빵, 광야에서의 만나와 연결된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과 우리를 연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며 올렸던 제물과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찬양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또 주의 만찬은 우리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부르심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영원히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주의 만찬은 말씀이 선포한 것,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하고 봉인한다. 동시에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고, 신실하게, 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주의 만찬을 통해 성령은 교회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를 파송한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이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의 교회와 하나가 되신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성도들,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시 다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는 이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왔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다. 주의 만찬의 식탁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연령이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빵과 잔을 받는다. 주의 만찬에 참여했으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도록 적절한 때에 정중하게 권해야 한다.

예배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다. 의심이 드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 주의 만찬에 나아올 수 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가운데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 후에 정기적으로 기념해야 한다. 지역 교회의 상황 때문에 주의 만찬의 횟수를 좀더 줄여서 해야 하는 경우, 당회는 이 주의 만찬 일정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기별 1회 이하로는 할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매주일마다 하지 않는 경우, 주의 만찬을 하는 주의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를 미리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W-3.0410 주의 만찬에 대한 책임

주의 만찬은 당회가 승인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전해야 한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 사역 장로가 주의 만찬을 집전하도록 노회가 승인하고 사역 장로를 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G-3.0301b). 당회는 주일 예배 외의 사역에서도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 안수식 및 위임식, 치유 예배, 심방 사역,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식과 같은 사역이다. 이 모든 사역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해야 한다. 주의 만찬이 공적 예배와는 별개로 진행되면, 개체교회의 한 두 사람이 회중을 대표하여 참여해야 한다.

공의회는 어떤 경우에 교회 외의 장소, 곧 병원, 교도소, 학교, 군 기지, 기타 사역 장소와 같은 곳에서 주의 만찬을 집전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G-3.02, G-3.03).

W-3.0411[49] 우리의 삶을 드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과 마주하게 된다. 그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자들로서 우리는 감사로 응답한다. 곧 그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은사,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응답하는 기회가 모든 예배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기지 자세를 표현하며, 이웃에 대한 우리의 돌봄을 보여주며,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며,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운다.

십일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음식의 헌물도 이때 받는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위한 성찬단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모든 헌금과 헌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기도와 함께 받는다. 이 기도를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 사역 장로와 집사가 교회 자원에 대한 청지기직을 맡고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을 인도하고 있으므로, 사역 장로나 집사가 이 기도를

---

49 W-3.0411: 창 1:28–31. 2:15–17; 레 23:22; 민 18:21–29; 신 28:1–12; 대상 29:10–22; 대하 24:8–14; 말 3:8–10; 행 2:43–47, 4:32–37; 롬 12:1–8; 고전 12.16:1–2; 고후 8:1–15; 9:6–15; 엡 4:1–16; 딤전 5:17–18; 약 2:1–8; 요삼 5–8; 스코틀랜드 3.14; 제 2 헬베틱 5:110–5.123, 5.211; 웨스트민스터 6.087–6.093, 6.146–6.148.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나누는 시간을 앞 순서에서 갖지 않았으면 이때 이를 해도 좋다.

W-3.0412 성찬식 기도

헌금을 하고 성찬단을 준비한 후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배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찬단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깊은 돌봄,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주의 만찬 당일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 감사함; 예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예수의 성만찬 제정-주의 만찬으로 초대할 때, 또는 빵을 뗄 때 하지 않았다면-을 기억함;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예배자들을 이끌어 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들을 양육하며, 모든 곳의 성도들과 교회와 교통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들을 사명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도록 간구함.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친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멘"과 같은 송영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나서 주기도문을 한다.

W-3.0413 빵을 찢음

성찬단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빵을 찢고 포도주를 따른다. 또는 미리 채운 잔을 들어올린다. 이때 성경 구절을 같이 언급할 수도 있고 아무 말하지 않고 집전할 수 있다. 빵 한 덩이와 잔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과 성례전의 공동체성을 표현한다.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빵은 개체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어야 하며, 빵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개체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의 만찬에 포도주를 사용할 것인지를 당회가 결정할 것이다. 포도주를 사용할 땐,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도 같이 제공해야 하며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W-3.0414 성찬식

빵과 잔은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눈다. 예배자들이 성찬단 주변으로 모일 수도 있고, 예배자들이 성찬위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예배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빵과 잔을 받을 수도 있다. 빵을 떼어서 사람의 손에 놓아줄 수 있으며, 나눠주기 위해 미리 잘라둔 빵 조각을 줄 수도 있다. 하나의 잔으로 같이 마실 수도 있고, 개별 잔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은 빵을 잔에 찍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역 장로, 집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빵과 잔을 나누며, 당회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이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예배자는 찬양할 수 있으며, 음악이 연주될 수 있으며, 적절한 성경 구절이 낭독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묵상기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빵과 잔을 받고나면, 남은 성찬물은 성찬단 위에 올려 놓는다. 이후 기도를 하는데, 성례전이라는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예배가 끝난 후 가능하면 빨리 (대개 당일에), 두 명 이상의 직제 사역자들이 빵과 잔을 예배에 오지 못한 성도들, 외출하지 못하는 성도들,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 이 성찬 확대 사역을 하는 이들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신학, 목회, 예식과 관련해 필요한 은사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성례전의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나서, 빵과 잔은 성찬단에서 치우고 당회가 승인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이는 성례전에 대한 개혁 전통의 이해와 선한 청지기직의 원칙에 일치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남은 것을 먹거나 주의 만찬 요소들을 땅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는 완결될 수 있다.

W-3.0415 주의 만찬을 하지 않는 경우

주의 만찬은 주일 예배, 곧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에 필수적인 요소다. 교회의 상황과 당회의 결정으로 주의 만찬이 주일 예배에서 생략되는 경우, 예배는 헌금 기도, 감사와 헌신의 기도의 순서로 이어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W-3.05 파송

W-3.0501 결단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결단의 행위를 통해 응답한다. 이러한 결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폐회 찬양, 시편, 영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하는 창의적 또는 상징적 행위. 세례의 성례전을 받거나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려는 의도의 선언. 복음화, 구제, 정의, 화해의 사역에 대한 파송. 교회를 떠나는 성도에 대한 작별 인사.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초청 또는 광고.

W-3.0502 축도와 권면

주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써 끝난다. 제사장적 축도나 사도적 축복이 그것이다. 이 축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표현이며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의 표현이므로,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선포한다.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권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집사가 증거와 섬김의 사역에 책임이 있고,

사역 장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지 살필 책임이 있으므로, 집사나 사역 장로가 권면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W-3.0503 세상에서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섬김은 주일 예배가 마무리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아간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 곧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일을 추구한다.

제 4 장
목회적 특별 예배

W-4.01 세례에 기초한 예배, 세례를 완성하는 예배

W-4.0101 세례로부터 비롯됨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는 이에 감사함으로 응답한다. 이 행함과 응답의 표시와 봉인인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토대가 된다. 다음에 언급된 목회적 특별 예배는 세례의 언약에 기초하며 세례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일 예배 중에 말씀의 선포가 있은 후 하거나, 따로 공적 예배로 할 수 있다. 세례는 교회의 세례반이나 세례장에서 한다.

W-4.02 세례 언약의 재확인

W-4.0201 세례 받은 이를 목양함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며, 성령에 의해 봉인되고, 주의 만찬에서 환영을 받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섬김의 삶을 위해 택하심을 받는다.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노력할 때, 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개체교회 전체의 책임이며, 구체적으로 당회가 그 책임을 진다.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때, 당회는 이를 위해 부모-양측 혹은 한 명, 혹은 보호자로서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를 준비시키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 당회는 그 사람이 기독교 교육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W-4.0202 주의 만찬 참여를 격려함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성례전을 받기를 원할 때, 그들을 주의 만찬에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당회는 이들이 성례전의 의미와 신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W-4.0203 공적 신앙 고백

어린이일 때 세례받은 이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준비가 되었고 교회 생활의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종종 "입교"라 함), 당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들은 신앙 교육을 받고, 당회의 심사를 거쳐, 활동 교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공적 예배에서 이들을 회중에게 소개해야 한다. 이 때, 이들은 악을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세례의 서약을 재확인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예배, 삶, 운영, 사명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의지를 밝힌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세례 언약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4.0204 새 교인

새 교인이 되려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신앙을 재확인하거나 이명 증서를 제출한다. 당회는 교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재)확인하려는 신앙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당회는 그들을 심사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인 후, 예배 시간에 그들을 소개한다. 공적인 환영의 일환으로, 이미 세례받은 이들이 세례 언약을 다시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예배, 교회 생활, 교회 운영,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또 책임감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에,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세례 언약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4.0205 새롭게 되며 다시 다짐함

믿는 이의 삶과 개체교회의 삶 안에는 새롭게 깨닫고 새로워지며 다짐하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순간들과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이 당회와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공적 예배에서 인정되고 확정된다.

W-4.03 섬김을 위한 파송

W-4.0301 그리스도인의 섬김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며 또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활동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 회중 안에서 교사, 이사, 음악 담당자, 위원회 일원으로 사역하도록; 회중을 대표하여 지역 사회 내의 개체교회의 사역을 하도록; 교단 공의회나 범교회적 공의회에서 일하도록; 그리고 교단 밖에서 복음화, 긍휼, 정의와 평화, 피조물 돌봄의 사역을 하는 이들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한 종류의 소명은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혹은 파송 행위로 공식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다른 예배를 통해 이를 공식화할 수도 있다.

W-4.04 안수, 위임, 파송

W-4.0401 사역으로 부르심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심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회중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을 불러내어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다. 안수식을 통해, 교회는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섬기도록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각기 구별하여 세운다. 위임식을 통해, 교회는 이전에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각 사역을 섬기도록 다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기도하여 그 직임에 세운다. 파송식에서 교회는 교회 내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승인한다. 여기에는 제한된 목회사역을 위해 파송받는 사역장로, 공인 기독교 교육사, 다른 형태의 섬김으로 인증받는 이들이 있다.

W-4.0402 안수, 위임, 파송 예식의 기본 요건

안수식, 임명식, 파송식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안수식, 위임식, 파송식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특별 예배에서 할 수도 있다. 이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할 수도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식이나 위임식은 상당수의 노회원이 참석 가능한 시간에 해야 한다.

W-4.0403 예배 순서

안수식, 위임식, 파송식은 그 초점을 그리스도에 두어야 하며, 또 교회가 사명과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둔다. 설교 후에, 해당 공의회 의장(또는 의장 대리인)이 안수, 위임, 파송을 받는 사역의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안수, 위임, 파송 받는 이들은 세례반 앞에 모인다. 의장(혹은 대리인)이 그들에게 헌법 질문을 한다(W-4.0404 참고). 사역장로 한 명이 이에 상응하는 질문을 회중에게 묻는다.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을 했다면, 안수받는 이들은 안수와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는다. (노회의 안수 위원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한다. 해당 위원회 의장은 안수를 위해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를 초청할 수 있다. 당회 구성원은 사역장로와 집사의 안수식에서 안수한다. 당회는 안수를 위해 다른 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초청할 수 있다. 각 직책에 대해서 한번만 안수하기에, 안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전에 이미 안수 받은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경우, 회중과 더불어 일어서서 위임 기도를 받는다. 새로 위임받았거나 파송받은 사람에게 축복의 표시와 상징을 수여할 수 있다.안수나 위임 기도를 마치고나면, 의장은 안수, 위임, 파송 선언을 한다. 당회나 노회 회원들은 새로이 안수, 위임, 혹은 파송된 사람(들)을 환영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위임식의 경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회중에게 신실한 사역과 친밀한 관계맺음을 권면할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안수나 위임받을 때, 막 안수나 위임받은 사람이 그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집전하는 것은 적합하다.

또 이 사람은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할 수도 있다. 사역장로나 집사가 안수받거나 임직받을 때, 이들 중 한 명 이상이 예배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W-4.0404 헌법 질문

안수, 위임, 파송받는 이들이 속한 공의회 의장은 이들이 회중을 바라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a. 당신은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까?

b. 당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고, 보편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c. 당신은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러한 신앙고백서를 지침으로 삼고 따르시겠습니까?

d. 당신은 성경의 권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사역을 완수하며, 계속해서 신앙고백서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운영 절차를 따르며 교단의 규율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역 동료들과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따르시겠습니까?

f. 당신의 삶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화해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g.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까?

h.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정, 지성, 상상력,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i.

(1) (사역장로를 향해) 당신은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신실한 사역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운영과 권징에 참여하고, 교단의 공의회에서 일하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2) (집사를 향해) 당신은 신실한 집사가 되어 사랑을 가르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친구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향해) 당신은 신실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어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운영과 권징에 참여하고 교단의 공의회에서 일하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4) (파송 사역 장로[commissioned pastor; commissioned ruling elder]를 향해) 당신은 이 파송에 걸맞게 신실한 사역장로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5) (공인 기독교 교육자를 향해) 당신은 신실한 공인 기독교 교육자가 되어, 신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사역장로나 집사의 임직식에서: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헌법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사역장로 한 명이 선출된 사역장로들이나 집사들과 함께 회중을 마주하고 다음의 질문들을 회중에게 해야 한다:

a. 우리 교인들은 [이름을 언급함]을,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사역장로 혹은 집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를 것을 동의합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위임식에서: 위임받는 사람(들)이 헌법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한 사역장로는 위임받은 (부)목사와 함께 회중을 마주하고 다음의 질문을 회중에게 해야 한다:

a. 우리 교인들은 [이름을 언급함]을,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부)목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를 것을 동의합니까?

c. 이들이 우리 중에서 사역할 때, 이들에게 공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까? 곤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눌 것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이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이들의 목회적 돌봄을 기쁘게 받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순종하려고 힘쓸 때에 이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입니까?

W-4.05 변화를 기념하며

W-4.0501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각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변화, 계절, 시련, 기쁨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속적으로 돌보실 것을 세례를 통해 확신을 얻는다. 사역의 변화와 관련된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증거하며, 예배자들이 감사, 지원, 관심을 표현하게 한다.

W-4.0502 떠나는 교인

떠나는 교인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주일 예배 안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이나 파송으로 이루어진다. 예배는 떠나는 교인을 위한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W-4.0503 섬김의 종료

특정 사람들의 소명과 은사에 감사하며, 그들의 섬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섬김이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같은 안수 사역이든지, 특별한 제자도의 역할을 했든지, 교회, 공동체, 세상 속 다른 형태의 사역이든지 그러하다. 이러한 인정은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혹은 파송 행위로, 혹은 다른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이 예배에는 사역을 종결하는 이를 위한 감사기도와 중보기도가 포함된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다른 중요한 공적이나 업적을 예배 중에 기념할 수 있다.

W-4.0504 문책과 복권

교회는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구속과 화해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권위의 표현으로서의 권징을 행한다. 문책과 복권의 형식은 *규례서* **교회 권징** 편에 제시되어 있다. 문책과 복권은 기도와 목회적 관심 속에서, 적절한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의회의 예배 중에 진행되어야 한다.

W-4.06 결혼 언약

W-4.0601[50]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례를 통해서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전체 인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결혼은 두 사람,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고유한 약속이다.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 희생적인 사랑은 이들이 교회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의 신실하고 책임감있는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 민법상으로 결혼은 결혼한 두 사람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계약이다. 개혁 전통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언약이기도 하다. 이를 신앙 공동체가 공적으로 증언하고 인정한다.

W-4.0602 결혼 준비

만약 결혼하고자 하는 지역의 민법상 관할권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결혼하려는 두 사람은 미국장로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기독교 결혼 예식의 집전을 요청할 수 있다. 결혼 사실을 기록할 때,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민사 관할권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결혼 예식을 요청한 두 사람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이 두 사람이 결혼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언약의 가치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헌신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이 두 사람의 요청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결혼 예식를 위해 교회 건물이나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당회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W-4.0603 결혼 예식 순서

결혼 예식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당회의 감독 하에 결혼 언약과 개혁 예배 형식에 적절한 방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W-2.03). 결혼 예식에서 상호 서약을 주고받음으로써,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이루어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이 두 사람의 서약의 증인이 되며 이 결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다. 신앙 공동체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서원한다. 이 두 사람, 이들을 지지하는 공동체들,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

W-4.0604 사회법에 따른 결혼을 인정하는 일

만일 두 사람이 요청한다면, 사회법에 따른 결혼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

50 W-4.0601: 제2 헬베틱 신앙고백 5.245–5.251; 웨스트민스터 6.131–6.139.

이를 확증하는 예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이미 일반 사회법에 따라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 예식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 예식은 기독교 결혼 예식과 비슷할 것이다.

W-4.0605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됨

여기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당회가 그들의 성령을 통한 분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결혼 예식에 대해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예식을 거행하도록, 혹은 당회가 해당 결혼 예식을 위한 교회 건물 사용을 허가하도록 그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W-4.07 죽음과 부활

W-4.0701[51] *부활에 대한 증거*

세례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세례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죽음을 마주하여,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소망을 슬픔과 기쁨으로 확인한다. 우리는 홀로 슬퍼하지 않으며, 성령의 권능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는다.

W-4.0702 장례식 방침

당회는 장례 예식에 관한 일반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품위있고, 선한 청지기직을 표현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장례식을 할 수 있다.

W-4.0703 장례 예식의 요건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은 개체교회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공동체의 신앙, 삶, 소망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장례 예식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자택, 장례식장, 화장터, 무덤가에서 장례 예식을 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주중에 할 수도 있지만, 당회의 승인이 있다면 주일 예배의 일부로서 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 이 예식은 그 예식이 진행될 개체교회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도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재량에 따라, 예식을 인도하는 데 참여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W-4.0704 장례 예배 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그 시신을 땅에 묻거나,

---

51 W-4.0701: 스코틀랜드 3.17; 웨스트민스터 6.177–6.179; 제 2 헬베틱 5.235–5.237.

화장하거나, 의료 목적으로 기증하거나, 또는 책임감 있고 경건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사망한 이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 교회의 목사(들)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타 예배 행위를 하면서 시신 안치 장소까지 사망자의 시신과 동행한다.

안치 장소로 그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의 일부로, 혹은 이 과정의 전후로, 보다 온전한 예배 예식을 할 수 있다. 예식은 성경구절로 시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있는 산 소망과 부활에 대해 증거한다. 예배 참석자들은 부활, 영생, 성도의 교통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찬송가, 시편, 영가를 부를 수 있다. 치유와 화해를 위해 신앙 고백과 죄사함의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한다. 이후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다. 이후에 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대해, 복음의 약속에 대해, 고인의 삶과 증언 사역에 대해, 성령의 위로에 대해, 신앙 공동체가 함께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슬픔에 잠긴 이들, 유족을 돌보는 이들, 고인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린다. 상실의 시간에 은혜와 믿음을 주시도록 구한다. (주의 만찬 예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기도문으로 끝맺는다. 당회의 승인이 있다면 주의 만찬을 거행할 수도 있다. 고인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고, 고인의 시신이 다루어질 다음 장소로 보내며(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석자들을 돌려 보내면서 예식을 마친다.

관이나 유골함은 세례식에서 그리스도로 옷입었음을 상징하는 천으로 덮을 수 있다. 예식은 세례반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만일 부활절 양초를 사용하는 것이 개체교회의 관행이라면, 이를 관 주위에 놓을 수 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꽃과 기타 장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전함과 단순함을 보여준다. 신앙 공동체와 그 문화적 맥락에서 친숙한 기타 행위를 예배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호회 예식, 민간 예식, 군대 예식은 별도로 치루어야 한다.

제 5 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W-5.01 예배와 개인의 삶

W-5.0101[52] 개인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공적 예배와 섬김 그리고 개인적인 헌신과 제자도로 응답한다. 개인의 삶과 공적 예배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독교 예배에서 시작된다. 예배에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제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 훈련, 제자 훈련, 가정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날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성령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W-5.0102[53]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

기도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꾸준한 기도의 삶이다. 하루하루 제자로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도전들로 말미암아 매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여는 것이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대화, 주의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침묵, 성경 묵상, 예배서나 묵상집이나 시각 예술의 사용, 찬송이나 춤이나 노동이나 신체 노동. 교단의 주중 예배 형식(W-5.0202)을 개인적인 신앙의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기도는 공적인 증언과 항거, 긍휼의 행동, 기타 형태의 규율에 따른 섬김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기도는 과제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오는 영감과 강인함을 끌어내는 기회이다. 기도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와 인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기도는 일평생 가꾸고 실천해야 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52W-5.0101: 엡 4:15; 벧후 3:18;

53 W-5.0102: 시 119; 130; 마 6:5–14; 눅 11:1–13; 롬 8:26–27; 12:12; 고전 12–14;

살전 5: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7.

W-5.0103[54] *그 외의 제자도 실천 사항*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안식일 준수, 성경공부, 묵상과 행동, 금식과 잔치, 청지기직과 자기 봉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이러한 실천사항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배, 쉼, 회복을 위한 시간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다. 초대 교회 시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혹은 일요일)에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다. 한 주의 첫 날로서, 주일은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빚어낸다. 그러므로 주일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며, 섬김, 증거,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날이고, 쉼과 회복의 시간이다. 주일에 일해야만 하는 이들에게는 주중에 안식일을 지킬 방식을 찾아보도록 권유한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삶에서 의미, 방향, 위로, 도전을 찾는다. 성경으로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말씀 읽기, 성경을 이용하여 기도하기, 주석을 공부하기, 주요 성경구절을 암송하기,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항상 성령의 조명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에 의지하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식과 축제는 탄식과 기쁨을 표현하는 오랜 신앙의 실천이다. 교회력의 축일과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역사 속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금식과 축제의 주기를 나타낸다. 세상, 국가, 지역사회, 또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감사, 애도, 회개, 또는 항의의 행위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청지기직과 자기 희생의 훈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고, 관대하고, 환대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 피조물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는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과 자기 헌신의 주된 실천이다. 우리는 물질, 영적 은사, 시간을 책임감있게 사용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W-5.0104[55] *가정 예배*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데, 특히 함께 사는 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하다. 가정 예배는 개혁교회 전통 내에서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

54 W-5.0103: 창 2:1–3; 출 20:8–11; 신 5:12–15; 고전 4:1–2; 벧전 4:10; 히 4:12; 하이델베르크 4.103.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23–5.226, 5.227–5.2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7–6.119; 소요리문답 7.057– 7.062; 대요리문답 7.225–7.231.

55 W-5.0104: 신 6:4–9; 수 24:15; 웨스트민스터 6.117; 대요리문답 7.228.

중요한 관행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가정 예배나 가족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안식을 누리며 매일 기도하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식전 기도; 찬송가, 시편, 영가 부르기; 다른 이들에게 주고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일. 가정이나 가족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가 그들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한다.

가정 예배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정해진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같은 기독교력의 절기 또한 가정 예배의 형태와 의미에 영향을 준다.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의 예배에서 생일, 세례일, 기타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으며 자연의 주기, 일반 사회의 행사, 지역이나 국가나 전 세계의 사건들을 반영할 수 있다.

가족 식탁에서의 감사, 축복, 탄식의 기도는 고대 유대인의 관습과 예수님, 제자들,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범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다. 일상의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한다.

어린이들은 부모나 그들을 돌보는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교리를 배우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눔으로써,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의 형태와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면, 어린이들은 교회의 예배에 온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W-5.0105[56] *그리스도인의 소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세례식에서 우리는 온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어드렸고,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을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사적인 관계에서나 공적인 관계에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소명이 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개혁 전통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의 삶과 일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일, 증거하는 일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56 W-5.0105: 엡 4:1.

W-5.02 신앙 공동체 내의 교회 사역과 예배

W-5.0201[57] 신앙 공동체 내의 교회 사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예배는 깊이 연계되어 있다. 사실 예배가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교회의 사역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 기독교 교육과 목회적 돌봄의 사역, 교회 공의회 활동, 교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한다. 교회의 사역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형성되고 성장하며, 신실한 제자 훈련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수행된다*(F-1.0301; F-1.0302a; F-1.0303; F-1.0403).*

W-5.0202[58] 매일 드리는 기도 예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교회를 부르신다. 매일 드리는 기도 예배는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길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예배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 찬송 혹은 기도, 성경 봉독, 감사의 기도와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친다. 주중 예배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아침, 정오, 저녁, 하루의 끝 시간)에 드리거나, 일상 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개인 및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형식을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공의회, 회중, 교인의 소그룹, 가정, 개인이 드릴 수 있다. 개체교회 내에서 드려질 때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의 어느 교인이든지 이러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W-5.0203[59] 기독교 교육

하나님은 교회가 삶의 모든 계절과 변화들을 통과하는 동안 서로를 인도하고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르신다. 특히 교회는 교인이 신앙 공동체로 들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을 목양할 때, 교회가 사용하는 주된 기준과 자료는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이다.

---

57 W-5.0201: 요 13:12–17, 31–35; 롬 12:9–21; 갈 6:2; 엡 4:11–16.

58 W-5.0202: 롬 12:12; 살전 5:17.

59 W-5.0203: 마 28:20;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6, 5.233.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육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이다. 이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된다. 공적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성 과정 외에도, 예배 중에 사용되는 말과 행위는 학습과 성찰의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모든 교인을 격려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적인 활동이 예배의 참석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교육 사역은 개체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세례의 약속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회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감독, 사역장로와 집사를 위한 훈련, 교인의 제자훈련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 교회 학교 수업,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이 됨으로써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훈련받고 공인된 기독교 교육자는 가르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교회의 양육과 교육 사역에 더하여준다. 당회는 기독교 교육의 은사를 가진 다른 이들을 분별하고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나 다른 이들을 지원할 책임도 있다.

교회 학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찬양, 기도, 말씀 듣기로 구성된다. 또한 교회 학교 모임은 자기 봉헌과 섬김의 기회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 학교의 예배가 전체 개체 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목양하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한다: 신학교의 교육과 평생 교육, 특정 주제나 문제에 관한 워크샵, 음악 프로그램과 리허설, 선교와 프로그램 설명회, 위원회, 이사회, 공의회 회의, 수련회 캠프 컨퍼런스 등이 그것이다.

W-5.0204[60] 목회적 돌봄

하나님은 서로를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고, 충고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계속하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에 의지하면서, 교회는 위험과 죽음, 질병과 상실, 위기와 축하, 투쟁과 죄를 겪고 있는 교인들을 돌보려고 노력한다. 특히 이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와의 관계의 표지이자 봉인인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시작되고 성장한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회적 돌봄 사역의 토대이자 배경이다. 교인들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배 자원들을 사용하며,

---

60 W-5.0204: 고후 5:16–20; 약 5:13–16;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34; 웨스트민스터 6.086, 6.147;
1967년도 신앙고백 9.07, 9.22.

말씀의 은혜와 도전, 성례전의 은사와 부름, 기도 시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능력, 신앙 공동체의 교제와 위로를 함께 나눈다. 그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가정, 병원, 호스피스, 학교, 및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나눈다.

모든 교인은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는 목회적 돌봄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청받는다. 사역장로, 집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목회적 돌봄을 행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 특별한 은사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이들은 특정 목회적 돌봄 특별 사역에 부름받을 수도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자격증이 있는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야만 할 수도 있다.

온전함과 치유를 위한 예배는 목회적 돌봄을 하는 교회 사역을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요소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간구, 또는 삶과 죽음, 영, 혼, 육을 통해 받은 치유에 대한 감사이다. 온전함을 위한 예배는 그리스도 안의 평화와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에 초점을 둔 말씀의 선포를 포함한다. 기도는 손을 얹고 성유를 붓는 일을 통해서도 행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심스럽게 도입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 형태의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 기도의 성취물이 아니다. 주의 만찬은 말씀 안에서 선포된 온전함에 대한 약속을 인증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온전함을 위한 예배는 당회가 승인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방향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사역장로, 집사나 기도 은사를 가진 이들이 인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는 정기적으로 특별 행사 혹은 주일 예배의 일환으로 드려질 수도 있다.

수용과 화해의 예배는 죄와 고통의 실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부서진 관계들과 죄로 가득 찬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책임을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요소는 평화와 화해의 표시와 함께 하는 적절한 고백과 용서이다. 이러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성경 말씀 봉독이 포함되며, 기도, 감사의 표현, 헌신의 실행 등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W-5.0205[61] 교회의 공의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미국장로교 교인들은 함께 공의회를 이루면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른다. 이러한 공의회들은 성경의 가르침, 신앙 고백서의 증언, 이 예배 지침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예배한다. 당회보다 위에 있는 공의회는 정기적인 말씀의 선포와 주의 만찬을 준비한다. 공의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61 W-5.0205: 빌 2:5; 웨스트민스터 6.173–6.176.

마친다. 공의회들은 분별과 숙고를 하는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중보기도와 간구를 할 기회들도 마련한다.

W-5.0206[62] 기타 모임

하나님은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누리도록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모이도록 부르신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언약 그룹과 기타 모임들은 주중이나 하루 중 다양한 시간에 모일 수 있다. 교회 건물 안에서, 또는 교인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다음의 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일; 그리스도인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 이웃, 교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 개인적인 이야기, 축하할 일, 걱정거리를 나누는 일;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 증언과 섬김의 행위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 수련회, 캠프, 컨퍼런스에서 모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하는 예배는 관련 공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이 예배 지침의 원칙을 따른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또는 이 예배 지침에 설명된 다른 예배 순서들을 사용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의 거행은 해당 행사를 감독하는 공의회 혹은 행사가 열리는 지역 공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한다. 이러한 예배는 교단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교단의 공통분모인 세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모임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이에 참여해도 되는데, 그들의 참여가 성례전에 대한 개혁 신앙의 이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종교간 모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러한 모임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기회이기도 하다. 종교 간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타종교의 자율성, 고결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말과 행위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

W-5.03 예배 그리고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W-5.0301[63]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신다.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예배는 깊이 연계되어 있다.

---

62 W-5.0206: 마 18:20; 히 10:25.

63 W-5.0301: 요 20:19–23.

사실, 예배는 곧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에서 시작되며,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실체와 그 약속을 엿볼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다시 예배로 이어진다.

세상에서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긍휼을 베풀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며 피조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려고 노력한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성장하며, 세상을 위한 기도의 삶을 드러낸다***(F-1.01; F-1.0303; F-1.0304)***.

W-5.0302[64] *복음화*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에 대해 약속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렇기에 세례받은 자로서 그 세례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권면이 매 주일예배 때마다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이 받은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초청한다.

당회는 복음화를 위한 특별 예배를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요소는 말씀의 선포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인되심, 제자로 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의 선포 전후로 기도를 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양육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만일 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주일 예배 때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의 성례전을 받는다.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은 세례를 재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갖는다.

W-5.0303[65] *긍휼*

하나님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도록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고, 포로된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집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낯선 이들을 환영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한다. 이 긍휼의 행위는 혼자서 하든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당면한 상처와 어려움을 직접 도와주라고 부름받았다. 우리는 인간의 불행을 지속시키는 체제에 맞서고 도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64 W-5.0302: 웨스트민스터 6.055–6.058, 6.187–6.190.

65 W-5.0303: 사 61:1–4; 마 25:31–46; 막 1:32–34; 눅 4:18–21; 6:17–19; 갈 6:9–10; 약 1:27, 2:14–17.

지역 사회에서의 증거와 옹호 행위를 통해서, 더 큰 범위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 행복에 헌신하는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에 참여한다.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서 실행된다. 우리는 억압적인 지배 구조에 동조했음을 고백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고통을 없애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돌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며, 무시받는 이들을 돌볼 것이며, 받을 뿐만 아니라 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도 감수할 것을 맹세한다.

W-5.0304[66] 정의와 평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공동선을 위해 교회의 힘을 발휘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영역에서 정직하게 처신하며,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며, 자신이 사는 곳에 낯선 이들을 환영하며, 법적인 정의와 공정성을 높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며, 폭력적 억압 체제에 저항하고, 개인, 단체, 민족에게 가해진 부당함을 시정한다. 하나님은 또한 평화를 이루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보편 교회나 교단이나 개체교회 차원에서의 평화; 국가와 종교 단체 혹은 민족들이 서로를 배척하며 전쟁을 벌이는 세계 속에서의 평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학교, 직장, 이웃, 가정에서의 평화. 이런 평화와 정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자리이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확신하게 되며 이 선물을 이웃과 나누도록 감동과 격려를 받는다. 세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우리를 갈라놓는 적대감의 벽을 무너뜨릴 힘을 얻는다. 우리는 불의한 체제에 동참해 온 것을 고백하며, 폭력과 불의가 그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해방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헌신한다.

W-5.0305[67] 피조물을 돌봄

하나님은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직을 교회가 맡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선함과 영광됨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

66 W-5.0304: 출 22:21–27; 레 19:33–34; 시 82; 사 2:1–5; 32:1–8, 16–17; 암 5:6–15, 21–24;
미 6:6–8; 마 23:23–24; 눅 4:16–21; 고후 5:16–21; 약 3:13–18; 웨스트 민스터 6.127–130; 소요리문답 7.067–7.081; 대요리문답 7.244–7.258; 1967년도 신앙고백 9.43–47.

67 W-5.0305: 창 1:26–31; 2:15–20; 시 8; 24:1–2; 사 11:6–9; 1967년도 신앙고백 9.53; 간추린 신앙고백 11.3.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소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경외하고 놀라워하며 땅, 물, 공기를 돌봄; 약탈, 오염, 파괴없이 지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기; 모든 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가; 출산과 생식에 있어 책임감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아름다움, 질서, 건강, 조화, 평화를 추구하기.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피조 세계에 대한 돌봄을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며 표현한다: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감사하며 피조물이 지속가능하게 하심에 감사함; 지구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인식하고 피조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함;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기뻐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과 자원을 내어놓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피조물의 선한 청지기로 헌신함.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이, 성례전 용품, 예배 공간 건축이나 기타 자원 등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들을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W-5.04: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

W-5.0401[68] 하나님의 통치

교회는 예배와 그에 따른 삶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표지이다. 이 통치는 현재에 실현된 현실이자, 미래에 약속된 희망이기도 하다. 교회의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이 활동은 오히려 세상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의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 통치가 머지않아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힘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린다(빌 2:10-11).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 7:12)

68 W-5.0401: 마 6:33; 막 1:15; 히 12:28–29; 계 11:15; 스코틀랜드 3.2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28–4.129; 웨스트민스터 6.180–6.182; 소요리문답 7.107; 대요리문답 7.306; 1967년도 신앙고백 9.54–56.

교회 권징

교회 권징

제1장
교회 권징의 원칙
전문

D-1.01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부여한 권한, 즉 교회 징계의 행사를 통해 드러나는 권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권한이지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D-1.02 교회 권징의 정의

D-1.0201 교회 권징의 정의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를 교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그 성도들을 인도하고 통솔하며 양육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과오를 시정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사법 절차는 사회의 사법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사법 절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함이다. 미국장로교 헌법에는 모든 활동 교인 및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원칙과 기준이 담겨있다.

D-1.0202 교회 권징의 한계

신학, 체제, 정책, 권력, 신뢰에 기인한 본질적인 차이를 교회 권징만으로 중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갈등은 헌법 개정, 조정, 행정 감사, 행정 전권위원회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사법 절차를 통한 교회 권징은 교회의 개인 또는 공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또는 문제의 해결이 지혜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 않아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개인이나 공의회가 그들의 행위나 불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해야 한다.

D-1.03 교회 권징의 목적

D-1.0301 교회 권징의 목적

교회 권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성도를 양육함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 진리를 추구하고 드러낸다.
-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와 긍휼을 성취한다.
- 과오를 바로잡고 억제해 성도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한다.
-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 불화와 분열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회복한다.
- 심판절차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결정을 보장한다.

D-1.0302 적법 절차

모든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교회 권징의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적 보호와 적법 절차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1.04 화해와 조정

교회 권징이라는 방법이 있다 해도, 갈등없이 화해시키고 조정하며 차이를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성경적 의무를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 이 규칙들은 교회 내에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법 절차를 장려하거나 또는 이를 더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다. 사법 절차를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는 성경적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마 5:25). 제기된 사안에 대해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후에, 평화, 일치, 순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과정을 피해야 한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 의무가 종결되진 않는다.

제 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1 사법 절차

D-2.0101 책임을 묻는 절차

미국장로교에서 교회의 권징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게 하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의회의 책임 확인 및 시정은 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의 책임 확인 및 권징은 권징 철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D-2.0102 교단의 공의회

교단의 공의회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당회는 징계 절차에서 교회 성도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노회, 대회, 총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해 시정과 징계 절차에서의 심판 절차 및 상소를 진행한다.

D-2.02 시정 절차

D-2.0201 공의회의 책임

시정은 공의회가 교회, 성도, 다른 공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다. 하위 공의회 또는 총회 조직체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헌법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위 공의회는 시정을 통해 이를 바롤잡을 수 있다.

D-2.0202 부적법 행위와 불이행

D-4.0201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부적법 행위"이며, 헌법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불이행"이다.

D-2.03 징계 절차

D-2.0301 개인의 책임

징계 절차는 활동 교인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교회와 상호 간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며,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목적 아래 시행된다.

D-2.0302 위법 행위의 정의

D-7.0103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위법 행위는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교인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모든 행위 또는 불행위이다.

D-2.04 기준과 절차

사법 절차에서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는 미국장로교 헌법 내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다.

제3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D-3.01 선출

D-3.0101 구성

총회, 개별 대회 또는 연합 대회, 개별 노회는 관할권 내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각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거의 동수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G-3.0111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 조직체의 선출의 원칙에 따라, 또 다양성 속의 일치를 위한 교단의 노력에 따라 공천되어야 한다 (F-1.0403).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구성원의 수가 홀수인 경우, 추가 구성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거나 사역 장로일 수 있다.

a. 총회 전권위원회는 총회 산하 각 대회의 회원 한 명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대회 전권위원회는 열한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대회 산하 각 노회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가 열한 개 미만의 노회로 구성된 경우, 각 노회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위원이 전권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대회가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 위원회는 열두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각 대회 내의 노회의 수에 따른 비율에 의해 구성원을 선출한다. 관련 대회들은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을 다룰 서기를 임명해야 한다.

c. 노회 전권위원회는 일곱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같은 교회에서 두 사람 이상의 사역 장로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D-3.0102 검토자와 정족수에 미치는 효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세 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지정하여, 다음의 사안들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징계 사건 조사 중, 조사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검토 요청 청원(D-7.11); (2) 징계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 청원(D-7.1402); (3) 직위 해제의 필요성 판단(D-7.0902). 특별 위원회는 적어도 한 명의 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D-3.0602b에 규정되어 있는 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두 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별 위원회의 위원들은 후속 심판 절차에 참여해선 안 된다. 사건 기록 검토 이후에 심판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전술한 사건 기록 검토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과반수가 되나, 어떤 경우에도 정족수가 다섯 명 미만이어선 안 된다(D-3.0602). 당회는 모든 검토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회 서기는 이 절차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D-3.02 직책 수행

D-3.0201 조와 임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6년 임기의 3개의 조로 편성되며, 각 조는 가능한 한 그 수가 동일해야 하고 한 조는 그 임기가 2년이다.

D-3.0202 공석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충한다:

a. 사임,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석은 해당 위원을 선출한 공의회에 의해 보충될 수 있으며, 해당 공의회는 차기 회기에서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b. 총회는 매 짝수 해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차기 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발생한 공석 또한 충원하여야 한다.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을 선출한 총회의 해산과 동시에 시작된다.

D-3.0203 자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섬길 자격은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에 따른다:

a.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선출하는 경우, 해당 임기의 절반 이상을 섬긴 위원은 전체 임기를 봉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잔여 임기에 대해 재선거 자격이 없다.

b.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정규 임기를 모두 마친 사람은, 임기 종료 후 최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선임될 수 없다. 누구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 총회에 의해 선출된 다른 조직체의 구성원은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 또한, 공의회의 의장, 서기, 직원 또는 총회 산하 조직체의 직원은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

c. 노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노회 산하 교회 또는 노회 내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른다.

d. 대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대회 산하 교회 또는 노회에서의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복수의 대회가 연합하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G-3.0404), 해당 대회들이 협의한 선출 규정에 따른다.

e.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해당 위원을 공천한 대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나 노회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 상실되며, 그 위원의 활동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D-3.03 위원회 활동 비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필요한 비용은 해당 위원을 선출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이 부담한다. 대회들이 연합하여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비용은 연합에 참여한 대회들이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단, 특정 대회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사법 사건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대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D-3.04 임원

각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따르거나 또는 위원들을 선출한 공의회의 규정을 따른다. 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규정에 의거해 임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D-3.05 권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할당받은 사건에 대해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을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3.06 회의

D-3.0601 시간과 장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구성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없으면, 위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야 한다.

D-3.0602 정족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징계 사건에 대한 노회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D-3.0102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지정된 임무를 수행 중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수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족수는 5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절차에 관련된 당회의 정족수는 당회장과 사역 장로 과반수로 한다.

a. 참여할 수 없는 자

사건의 당사자가 특정 교회인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목회 관계를 맺고 있는 위원이면, 해당 사건에 어떤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사건의 당사자가 공의회인 경우, 그 공의회의 구성원이거나, 해당 공의회 산하 교회의 구성원도 해당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D-3.0102에 따라 이미 지정된 위원들은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b. 이전 위원회 위원 명단 관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최근 6년 이내에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의 명단을 보관하여야 한다. 명단은 조 별로 철자 순으로 정리하며, 가장 최근 조부터 시작한다. 서기는 해당 명단을 매년 공의회 또는 연합 공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c. 정족수 확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심리 또는 심판 절차를 위해 소집될 때마다, 서기는 진행 과정에서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체 위원 명단에서 중복 없이 추가 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의회는 위원 선발 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G-3.0111과 F-1.0403 조항에 명시된 참여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정신을 견고히 해야 한다.

d. 정족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불참, 자격 미달, 기피 등의 사유로 인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위원회는 휴회하여야 한다.

e. 참가자 비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리적 관할 내의 공의회는 참석을 요청받은 이들의 필요 경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시정

D-4.01 시정 절차

D-4.0101 목적

시정의 목적은 미국장로교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교회의 평화, 일치, 그리고 순전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D-4.0102 사법 절차의 한계

시정에 대한 청구는 개인에 ***의해*** 제기될 수는 있으나, 개인을 ***상대로*** 제기될 수는 없다. 시정 청구는 개체교회, 총회 산하 공의회의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개체교회가 헌법에 반하여 저지른 오류나 불행위에 대해서는, 당회가 G-3.0201에 따라 시정할 책임이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정 청구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조직체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교회의 성도 한 명 이상 또는 하나 이상의 공의회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D-4.0103 마감일과 제출

a. 마감일

어떤 서류가 적기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제출 기간을 야기한 사건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의회의 조치가 취해진 다음 날, 또는 당사자가 결정 사항을 받은 다음 날이 서류 제출 기간의 시작일이 된다. 날짜 계산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이 포함된다. 서류가 제출 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수령자에게 도달되었을 경우, 해당 서류는 적기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도착한 서류도 적기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b. 제출 방법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서류는 다음의 방식 중 하나로 전달되어야 한다: 미국 우정국의 접수 영수증 첨부 등기 우편, 배달 확인 영수증이 첨부된 상업 택배, 인편 배달, 또는 이 규정에서 허용한 바에 따른 전자적 전달 방식.

D-4.02 시정심판 청구

D-4.0201 절차의 시작

시정 절차는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의 서기에게 시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청구서에는 공의회의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 혐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a.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나 행위는 "부적법 행위"로 간주한다.

b. 헌법에 규정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는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D-4.0202 서기의 책임

서기는 시정심판 청구서 사본을 시정을 요구받은 당사자와 해당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연합 사법 전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관할하게 되어 다른 서기가 임명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서기는 해당 서기에게도 즉시 이를 전달해야 한다.

D-4.0203 관련 당사자들

시정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 시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개인들, 2. 피청구인(들): 시정 청구를 받은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

D-4.0204 변호인단

a. 구성

공의회 또는 총회 산하 조직체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경우, 해당 조직체는 3인 이내의 변호인단을 임명해야 한다. 이 변호인단은 이 청구 사건의 최상위 공의회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해당 당사자를 대표하여 사건을 담당한다. 변호인단의 모든 구성원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b. 규정에 따른 임명

공의회 또는 총회 조직체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변호인단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된 변호인단 구성원 또는 그 변경사항은 즉시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서기는 이 정보를 관련 당사자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c. 변호인단이 될 수 없는 자

해당 사건 관련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의회의 변호인단으로 임명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공의회의 직원이나 사건이 상소 절차에 따라 올라가게 될 상위 공의회의 직원 역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할 수 없다.

D-4.0205 시정심판 청구 기간 제한

시정 사건에서 시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a. 부적법 행위에 대한 시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부적법 행위 혐의와 함께 4.04항에 명시된 집행 정지를 같이 요청하면, 시정심판청구서는 그 청구의 근거가 된 해당 공의회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 시정심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경우엔, 상소 관련 당사자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 정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심판청구서는 공의회의 해당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b. 불이행 혐의 사건의 경우, 공의회가 특정 불이행 행위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시정해 달라는 서면 요구를 받았음에도, 해당 회의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았거나 시정을 거부했을 경우,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D-4.0206 시정 사건의 시정심판 청구인 자격과 관할권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해당 청구를 다룰 수 있는 공의회(관할권)는 다음과 같다:

a. 공의회는 동급의 다른 공의회를 상대로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심판 청구 대상이 된 공의회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위 공의회에 청구해야 한다.

b. 교회의 성도는 당회를 상대로 하여 노회에 시정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c. 노회의 회의에 등록해 참석한 사역 장로 대의원은 그 회의에서 발생한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에 대해 대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d. 노회 소속 목사 또는 G-3.0301에 따라 노회에 의해 특정 사역에 선출된 사역 장로는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가 발생한 해당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회를 상대로 하여 대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 당회는 노회를 상대로 하여 대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f. 대회의 회의에 등록해 참석한 대의원은 그 회의에서 발생한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 혐의에 대해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g. G-3.0401에 따라 대회에 의해 특정 사역에 선출되어 등록된 목사와 사역 장로는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가 발생한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회를 상대로 하여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 노회는 소속 대회를 상대로 하여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i. 당회, 노회, 대회는 총회 조직체를 상대로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j. 시정 청구가 제기된 후 60일 이내, 또는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시정 청구가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본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가 특정 시정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바로 위 상위 공의회가 이 사건의 관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이 상위 공의회는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첨부해 관할권을 하위 공의회에 돌려보낼 수 있으며, 또는 이 공의회가 관할권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다.

D-4.0207 관할권의 효력

시정 절차에 있어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a. 모든 공의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자신들을 관할하는 상위 공의회의 판결, 결정, 명령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b. 대회나 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상소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대회나 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특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결정을 해당 사건 외의 당사자들에게 확대하려면, 단순히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c. 교단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만 있다(G-13.0103r).

D-4.03 시정의 내용

D-4.0301 시정심판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정심판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청구인(들) 이름 및 피청구인(들) 이름.

b. 일자, 장소, 관련 상황을 명기한 특정 부적법 행위; 불이행 시정 서면 요구 일자와 피청구인(들)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후속 회의 일자를 명기한 특정 불이행 사건.

c.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한 시정심판 청구 이유.

d. 상기 D-4.0206에 따라 청구인(들)의 시정심판 청구를 입증하는 사실 진술서.

e. 요구한 시정 또는 수정 사항 ("구제"라 함). 이는 시정심판 청구를 받은 공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어야 한다.

D-4.0302 시정심판 청구서 제출 방법

시정심판 청구서는 D-4.0103b에 따라 미국 우정국의 접수 영수증이 첨부된 등기 우편, 배달 확인 영수증이 첨부된 상업 택배, 인편 배달에 의해서 전달하거나 배달할 수 있다. 시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수취인이 서명한 영수증 또는 인편 배달 증명서를 해당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심판청구와 관련된 양측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이후의 모든 의사소통은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D-4.04 집행 정지 신청

D-4.0401 집행 정지 신청

집행 정지는 관할권을 가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면 지시에 의해 발동되며, 이는 시정심판청구(또는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결정이나 조치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모든 집행 정지 신청은 상기되어 있는 것처럼 시정심판 청구서 (또는 상소장)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요청은 다음 형식 중 하나를 통해 해야 한다:

a.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신청서.

b. 상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신청서.

c.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3인이 집행 정지를 신청하도록 서명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신청서.

D-4.05 예비 결정

D-4.0501 서류 검토

공의회의 서기는 시정심판 청구(또는 상소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청하려는 목적의 상소)가 접수되면, 해당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 시정심판 청구의 경우,

(1) 해당 공의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

(2) 한 명 이상의 청구인이 시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3) 시정심판청구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되었는가?

(4)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는 사실들을 청구인이 혐의로 제시하였는가?

(5) 청구인은 허용될 수 있는 구제를 주장하고 있는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청구인이 요청한 구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선언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잠재적인 구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지만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의회가 허용할 수 없는 구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해당 구제를 허용할 공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ii. 공의회가 기존의 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의 금전적 보상 요구

iii.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구제

iv.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구제

b. 집행 정지 신청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요청이 D-4.0401a 또는 b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청서가 온전히 작성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D-4.0502 예비 결정

예비 결정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D-4.0501a의 다섯 가지 질문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하거나, 심판을 위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a. D-4.0401a 또는 b에 따라 집행 정지 신청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과 서기는 요청이 완전하고 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며,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가 예비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b. D-4.0501a의 예비 질문들을 고려할 때, 임원, 즉 위원장과 서기는 청구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c. 임원은 시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 결정을 이를 진행하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서기는 예비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예비 결정과 함께 시정심판청구서(또는 그 목적이 상소 중인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라면 상소장), 그리고 집행 정지 신청서(제출된 경우)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D-4.06 D-4.0401c에 의한 집행 정지 신청 처리

D-4.0601 집행 정지 신청 검토

D-4.0401c에 따라 집행 정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세 명이 신청서, 시정심판청구서(또는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장), 예비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집행 정지를 승인하는 각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집행이 정지되는 공의회의 구체적인 행위(들) 또는 결정(들)을 요약해 기록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a. 관련 행위나 결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b. 그러한 결정 또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있음.

D-4.0602 결정과 제출

집행 정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이 적용된다: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진술서는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 공의회의 서기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세 편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그 유예는 허용되어야 하며, 공의회의 서기는 집행 정지 사본을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c. 집행 정지는 관할권을 지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나,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d. 집행 정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공의회의 서기는 이러한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D-4.07 대응과 향후 조치

D-4.0701 예비 결정에서 사건 심리를 결정한 경우

예비 심리에서 임원들이 사건 심리를 결정한 경우, 피청구인 공의회(들) 은 D-4.0703에 따라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임원들은 이를 검토해, 새로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예비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그 예비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유지되거나 수정된 예비 결정은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되며, 서기는 이를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답변서 또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배포해야 한다.

a.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예비 결정이 유지될 경우, 피청구인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건은 아래 D-4.0704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b. 수정된 예비 결정이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사건은 아래 D-4.0702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D-4.0702 예비 결정 원안 또는 수정안이 사건을 기각한 경우

사건을 기각한 예비 결정을 다룰 경우, 다음의 사후절차를 적용한다:

a. 임원들에 의해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 중 한 사람 이상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이 그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래 D-4.0703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답변서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배포된다.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D-4.0704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b.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되며 집행 정지는 해제된다.

D-4.0703 시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들)의 변호인단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임원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통지 또는 임원의 사건 기각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답변서는 시정심판청구서에 제시된 사실들에 대해 그 사실이 사실임을 인정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진술되었음을 주장하며,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간주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다른 사실들을 제시해야 한다.

a. 또한 이 답변서에는 D-4.0501a항의 판단사항들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시정심판청구 기각 신청을 포함할 수 있다.

b. 만일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피청구인의 답변에는 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는 D-4.0704에 따라 진행된다.

c. 공의회 서기는 이 답변서를 청구인(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D-4.0704 예비 결정과 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예비 결정 또는 집행 정지에 대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문제된 결정 또는 집행 정지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토론할 기회가 당사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변론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요약서에 근거하여 변론 심리 없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하도록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다. 그 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사건의 기각 여부나 심판 절차의 속행 여부에 대해, 그리고 집행 정지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집행 정지의 확정 또는 해제 여부에 대해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 5장

시정 사건 심판 절차

D-5.01 사전 심리 절차

D-5.0101 피청구인 공의회 서기의 임무

사전 심리 절차에서의 피청구인 공의회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시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의회(들)의 서기 또는 당회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기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b.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은 사건과 관련된 추가 회의록 또는 서류의 제출을 피청구인 서기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며 합리적인지 여부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 또는 그 지명자가 판단한다.

c. 상위 공의회의 서기가 사건 접수를 공지하면, 피청구인 공의회(들)의 서기 또는 당회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회의록 및 서류를 자료 목록과 함께 즉시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D-5.0102 사건 기록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 관련 회의록과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정리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송부하고, 당사자들에게 심판절차의 심리 기일을 통보해야 한다.

D-5.0103 추가 제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에서 제출할 증거자료 및 관련 당사자의 주장과 반론을 설명한 진술문(변론 요약서)을 당사자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5.0104 사전 심리 회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 위원회는 당사자들(또는 그들의 변호인, 해당되는 경우)에게 합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심리 회합을 통해 사실과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자료를 교환하며, 논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좁혀나가 사건 해결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전 심리 회합은 위원장과 서기, 또는 그들이 지명한 자가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당회나 전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진행한다.

D-5.02 심판절차 진행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시정 사건의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심판절차는 절차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심판절차의 격식을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판절차는 대면 출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D-5.04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심판절차는 G-3.0105에 근거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전자적 방식이 사용될 경우, 사용된 기술을 통해 다음이 가능해야 한다: 증인, 당사자, 위원회의 위원들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발언을 명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D-5.03 소환장과 증언

D-5.0301 사건 관련 당사자와 증인의 소환

심판절차에 출석하도록 당사자에게 발부되는 소환장,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한 증인에게 발부되는 소환장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가 서명해야 하며, 공의회의 서기가 이를 송달해야 한다. 증인은 사실증인 또는 전문가증인이 될 수 있다(D-5.0703b 참고). 시정 심판절차에서의 사실증인은 증언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D-5.0302 소환 대상자

미국장로교의 회원만이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과 전문가 증인(소속 교단과 상관없이)에게는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

D-5.0303 다른 공의회 소속의 증인

다른 공의회의 관할권에 속한 증인을 소환해야 할 경우, 사건을 다루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시정 심판에 관련된 해당 공의회의 서기를 통해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에게 증인 소환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는 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D-5.0304 비용

증인이 심판절차 출석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은 그를 소환한 사건 당사자가 상환해야 한다.

D-5.0305 소환장 송달

소환장은 D-4.0103b에 따라 송달되거나,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신자는 7일 이내에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송달 또는 발송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사건 당사자 또는 증인이 심판절차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출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며, 이에 따라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불복종죄 또는 모욕죄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5.04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증언

G-3.0105와 D-5.02의 규정에 따라, 대면으로 열리는 심판절차에 증인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D-5.05 심판절차의 진행

D-5.0501 변호인

시정 사건의 당사자는 변호인을 동반하여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변호인은 반드시 유급 대리인, 또는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인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재직 중인 동안 해당 전권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두할 수 없다.

D-5.0502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

다음의 규칙은 시정 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사소통에 적용된다:

a.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시정 사건 당사자, 그들의 변호인 또는 기타 관계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서면, 출판, 전자, 시각 자료를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필요 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b. 사건 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과 사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의사소통에 상대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5.0503 심판절차 진행 상의 통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절차의 진행 전반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가진다. 이는 모든 당사자, 증인, 변호인, 방청객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며, 필요 시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심판절차의 적절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절차 통제에 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은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전권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당 결정을 판정한다.

D-5.0504 절차 상 제기되는 문제

심판절차 중 발생하는 절차적 쟁점이나 증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D-5.0505 심판절차 불참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직접 대면으로 심판절차에 출석해야 한다. 심판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위원은 그 사건의 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D-5.0506 정족수의 미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는 무효로 간주되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5.06 심판절차

D-5.0601 위원장의 지침 안내

시정 사건의 심판절차는 기도로 시작되며, 이어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회 권징』 편의 서문(D-1)을 낭독하고, 해당 공의회가 사건 심리를 진행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의회의 심판관으로서 위원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자세와 그들이 맡은 임무의 엄중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D-5.0602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심판절차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구성이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a.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당사자 중 누구에 대해서든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건 당사자인 교회 또는 공의회의 회원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이 될 수 없다.

b. 모든 심판절차 당사자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의 정당성 여부는 남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D-5.0603 예비 결정사항과 이의 제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 결정사항과 제기된 이의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들 모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또한 예비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심판절차의 순서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이의 제기 역시 기록되어야 하며, 역시 다수결 투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모든 증거 제출과 변론 심리를 마치기 전에는 본안에 대한 최종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단, 당사자들이 명백한 사실 또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또는 사전 심리 회합에서 합의하고, 추가 증거 제출의 권리를 포기하며, 변론 요약서 또는 서면 진술서 제출에 기초하여 분쟁을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5.0604 시정심판 청구서의 수정

청구인이 시정심판청구서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절차 중 시정심판청구서를 수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D-5.0605 모두 진술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s)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5.07 증거

D-5.0701 정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거에는 증인의 구두 증언뿐 아니라,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서면 문서, 기록물, 물품, 기타 관련 물건들이 포함된다. 제출되는 증거는 반드시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입증력 판단에 있어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D-5.0702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문서 기록물과 공인된 증언 기록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a.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공인한 문서 기록물은 심판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b.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접수한 공인된 진술 기록은, 다른 공의회에서 진행되는 심판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D-5.0703 증인

증인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심판절차 당사자는 누구든지 증인의 자격이나 증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위원 중 누구든지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수결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증언을 위해 소환된 모든 증인은 적법한 증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증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언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가 증언의 경우, 해당 증인이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견이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전문적 의견이나 기타 관련 증언이 수용될 수 있다.

c.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의 변호인은 어떠한 기밀 사항에 대해서도 증언을 강요받을 수 없다. 변호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증언할 수 없다.

d. “신빙성”이란 증언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언의 정확성 및 증인의 진실성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

D-5.0704 증언

증인의 증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위원장의 명령이 있거나 당사자 중 한 쪽이 요청한 경우, 사실증인은 타 증인의 심문 중 해당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 단, 이 규정은 당사자, 변호인, 또는 사전에 전문지식 증언을 위해 출석하기로 결정된 증인의 심판절차 참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b.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가 먼저 본심문을 하고, 이후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심문을 진행한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재심문 및 재반대심문을 포함한 추가 질문을 허용할 수 있다.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라도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

c. 증언에 앞서 증인은 다음 선서문에 동의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귀하가 본 사안에 대해 제시하는 증거가 오직 진실임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d. 증인이 위 선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확약문에 동의하여야 한다: “귀하가 증언하도록 소환받은 본 사안에 대하여 진실, 온전한 진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진술할 것을 엄숙히 확약하십니까?”

e.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된 기록원 또는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기타 수단(디지털 음성 녹음 포함)을 통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f. 증인이 심판절차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D-5.04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다.

g.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도 증언할 수 있으나, 일단 증언한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사건 심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D-5.08 최후 진술

심판절차에 참여한 각 당사자에게는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청구인은 변론을 개시하고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변론이 종료되면, 심판절차는 기도로써 종결되어야 한다.

D-5.09 결정

D-5.0901 심의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심판절차 심리가 완료된 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b. 시정 사건에서 제기된 시정심판청구는, 그 내용이 증거의 우세성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없다. ‘우세성’이란, 제시된 증거가 반대 증거와 비교했을 때 더 설득력 있고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의 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제기된 각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며, 표결 결과는 회의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각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찬성이 필요하다.

D-5.0902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청구 내용을 인용할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b. 심판절차에 참여한 모든 위원은 결정사항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해야 한다. 회의 중 결정의 서면 개요를 작성하여 채택해야 한다. 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검토해야 한다. 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심판절차 심리가 종결된 후 10일 이내에 직접 모여서 또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c.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 사본에 서명하면, 그 결정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된다. 서면 결정문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된 결정문 사본은 D-4.0103b에 따라,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미리 합의된 경우엔 전자적으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d. 심판절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은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전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D-5.0903 결정의 효력

상소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노회 및 대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D-5.0904 새로운 증거

상소 전 또는 상소 제기 후에도 새로운 증거는 검토될 수 있다.

a. 상소가 제기되기 전이면서 상소 제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심판절차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새로 발견된 증거를 근거로 새로운 심판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증거가 사건의 다른 결론을 낳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심판절차 중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새로운 심판절차 개시를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상소 신청은 원 심판절차를 진행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하위 공의회의 서기는 그 결정 사항을 상위 공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b. 상소 제기 이후, 상소 신청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상소를 접수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재심을 위한 새로운 심판절차로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 절차는 원 심판절차를 담당했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재심 절차를 통해 새로운 결정을 보고할 때까지 중단된다.

c. 새로운 증거의 채택을 요청하는 신청은 상대 당사자에게 송달할 사본과 함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증거 요약 설명서를 추가해 증거 채택 신청을 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이를 심리해야 한다.

D-5.0905 상소

상소에 관한 세부 규정은 D-6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상소 제기 가능 기간 및 제기 자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a. 심판절차 관련 각 당사자는, 심판절차의 결정이 본인에게 전달되거나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 날로부터 상소 신청 기간이 시작된다.

b. 한 명 이상의 원심의 당사자만 상소 신청을 할 수 있다.

D-5.10 심판절차 과정에 대한 기록

D-5.1001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의 임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a. 모든 증언과 구술 기록을 정확하게 그대로 녹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구술 기록은 디지털 음성 녹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b. (증거 채택 여부를 기록해 두며,)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식별하고 잘 보관하며, 증거물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c. 심판절차 진행 과정을 의사록에 기록한다. 사건과 관련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정한 조치나 명령을 기록하되 각각에 대한 투표 현황도 포함해야 한다.

d. 사건 기록을 준비한다. 사건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시정심판 청구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

(2) 사건을 위해 제출된 모든 회의록과 서류들.

(3) 요청받았을 경우, 공식 녹취록.

(4) 적절하게 표시된 모든 증거물, 기록, 문서 및 기타 서류.

(5) 서면 결정문.

(6) 사건과 관련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조치나 명령과 각각에 대한 투표 현황.

e. 심판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사건 관련 기록을 인증하고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의회는 사건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에 관한 공의회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f.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서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심판절차 중 이루어진 모든 진술과 구두 절차 기록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녹취록이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녹취록 작성자가 해당 녹취록이 진실되고 완전함을 인증한 후, 비용 정산 절차를 거쳐 요청한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소가 제기될 경우 D-6.0802에 따라 제출할 자료에 포함하기 위해 녹취록 사본 한 부를 추가로 제작해야 한다.

D-5.1002 기록 추가

심판절차 진행의 책임이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결정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누구도 사건의 기록을 보충하거나 사건 기록에 추가할 수 없다.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공의회의 서기가 서면으로 기록 보완 요구를 접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구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공의회의 서기는 접수된 서면 요청서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록 보충 요청서 사본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D-5.1003 공의회 서기의 임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공의회의 서기는 공의회가 모이는 즉시 그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공의회의 회의록에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만일 공의회가 즉시 소집되지 않는 경우, 공의회의 서기는 해당 공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 연기된 회의 또는 결정 사항을 듣기 위한 임시회의 중 가장 먼저 열리는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회의록에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제 6장 시정
사건에서의 상소

D-6.01 상소 제기

D-6.0101 정의

시정 사건에서의 상소란, 심판 절차와 결정의 수정, 변경, 보류 또는 번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위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다음 상위 단계의 공의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D-6.0102 상소의 개시

상소는 원 사건의 당사자들, 즉 한 명 이상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만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a. 상소 대상 결정은 시정심판청구의 본안을 다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이어야 하며, 해당 결정은 D-4.0702b에 따른 기각 결정이거나 D-5.09에 따른 서면 결정문일 수 있다.

b. 시정 사건에서의 관련 당사자는 각각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 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이라 칭한다.

D-6.02 상소 청구서

D-6.0201 상소 청구서 제출

상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최종 결정문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상소 청구서를 다음 단계의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청구서는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의회 서기는 상소 청구서의 수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 역시 전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전자 제출 시에는 상소 청구서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후 모든 문서 제출은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소 제기자는 결정을 내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소속된 공의회의 서기와 상소를 심리할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 청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피상소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D-6.0202 상소 청구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상소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상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의 성명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의 성명.

b. 상대 당사자(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의 성명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의 성명.

c.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을 내린 공의회의 명칭.

d. 해당 결정문 사본.

e.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의 오류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절차 절차에서의 부적법 행위.

    (2) 심판 절차 관련 당사자가 진술하거나 증거를 수집 또는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3) 부적절한 증거나 진술을 채택했거나, 또는 적절한 증거나 진술을 채택을 거부했을 경우.

    (4) 모든 증거나 진술을 다 받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경우.

    (5) 심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편견이 표출된 경우.

    (7) 헌법 해석상의 오류.

f. 상소를 하게 된 결정을 내린 공의회의 서기에게 D-6.0201에 따라 상소 청구서 사본을 제출한 증명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소통 형식도 가능하다.

D-6.03 공의회 서기의 임무

서면 상소 청구서를 접수한 후,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해당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임원 및 상소의 상대 당사자에게 상소 청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D-6.04 상소의 효력

D-6.0401 집행 정지가 없는 경우

상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을 실행하려는 공의회의 조치가 자동으로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단, 시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요청하여 이를 부여받았거나, 아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집행 정지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상소 대상 결정의 집행은 상소 절차가 종결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된다.

D-6.0402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소의 대상이 된 결정 시점에 집행 정지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D-4.04에 규정된 방식과 D-4.05 또는 D-4.06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소 청구서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D-6.05 상소 철회

시정 사건과 관련한 상소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그들 간의 이견을 해결할 것을 권고받는다. 상소 절차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소를 심리하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공동으로 상소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서기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소가 철회되었음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상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법 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위원 중에서 해당 철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수결에 따라 해당 철회가 정의의 실현에 반하거나 미국장로교 헌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상소 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D-6.06 예비 절차

D-6.0601 상소 청구서 검토

상소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상소를 심리하게 될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의 사항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a. 공의회가 해당 상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b. 청구인이 상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c. 상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는지 여부.

d. 상소 청구서에 D-6.0201d에 명시된 상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D-6.0602 예비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은 위의 예비 검토를 통해 내린 예비 결정을 상소 관련 당사자 및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6.0603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상소 관련 당사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예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상소 당사자 또는 위원은 이의 제기를 심리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리를 요청한 경우, 상소 본안 심리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이의 제기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시간과 자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임원들이 예외적으로 상소 본안 심리 직전에 이의 제기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예비 검토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해당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D-6.0604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a. D-6.0701에 명시된 필수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임원이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별도 조치나 명령 없이 해당 사건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b. D-6.0601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임원들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일자이며, 동시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가 출석 가능한 일자를 고려하여 심리 일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D-6.07 사건 기록

D-6.0701 문서 목록

상소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위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타 자료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소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5.1001d 및 e 참조). 이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해당 서기가 작성한 자료 목록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기는 해당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단,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이의는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D-6.0702 상소 관련 기록 제출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소속된 공의회의 서기가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면, 상소를 제기한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 관련 기록을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D-6.0703 기록의 수정

어느 당사자에게든 중요한 자료가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누락 또는 오기는 수정될 수 있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수정 사항을 상호 인증하거나, 하위 공의회의 서기가 보충 기록을 인증하여 제출하거나,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직접 해당 누락 및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기록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모든 문제 제기는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상소 심리일 최소 45일 이전에, 적법하게 소집된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회의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

D-6.08 변론요약서

D-6.0801 상소인의 변론요약서 제출

상소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청구서에서 주장한 오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근거·판례·헌법 조항·법령 등을 포함한 변론요약서를 서면으로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해당 변론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과 피상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D-6.0802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 포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D-6.0803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 제출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한 경우, 피상소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a. 변론요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상소인은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소속된 공의회의 서기에게 답변요약서를 서면 제출한다.

b. 피상소인은 해당 답변요약서에서 상소가 제기된 결정과 관련된 추가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서기는 답변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과 상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D-6.0804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상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답변요약서 제출, 출두, 및 변론권의 포기로 간주된다.

D-6.0805 상소인의 추가 변론요약서

피상소인이 추가 사안을 제기한 경우, 상소인은 최초 변론요약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추가 변론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서기는 이 추가 변론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과 상대측 상소 관련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D-6.09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D-6.07 또는 D-6.08에 규정된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D-6.10 기록과 요약서의 전달

기록과 요약서가 접수되었거나,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관련 기록과 요약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D-6.11 사전 심리 회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가 접수된 후 언제든지, 관련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 사전 심리 회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상소가 제기된 사안 중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논점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좁힘으로써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 이 회합의 결과,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소 철회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상소 철회 요청은 D-6.05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D-6.12 상소 심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상소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두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대리 출두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해당 심리에의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상소의 근거에 대한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진다. 상소인은 모두진술과 최후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D-6.13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6.1301 검토 기준

심판 절차를 담당했던 하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사실 판단 결정은, 상소 과정에서도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판단 결정은 부정되어선 안 된다. 단, 해당 결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명백히 잘못된 경우,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명백히 부당한 경우. 한편,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판단에는 이와 같은 정확성 추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D-6.1302 투표 절차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리 후 개별적인 숙의 절차를 거쳐, 상소인이 주장한 각 오류 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각 투표는 "오류 사실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다수결 투표로 진행된다. 모든 투표는 개수로 기록되어야 한다. 각 오류 사실에 대한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각 오류 사실의 인정 여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D-6.1303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상소인이 제기한 오류 사실에 대한 판단 결과, D-6.0101에 따른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 위원회는 모든 사안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주요 쟁점에 국한하여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결정문에는 각 결정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a.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을 갖는다.

b. 어떤 오류 사실도 인정되지 않고, 추가적인 오류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정된다.

c.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인정된 경우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할 수 있으며, 일부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수정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혹은 사건을 재심리를 위해 환송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d.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소 심리에 참여한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문은 회의 중에 서면 개요로 작성되어야 한다. 상소 심리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이 서면 결정문을 검토해야 한다. 상소 심리를 진행한 회의 중에 이를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심판절차가 종결된 후 10일 이내에 직접 모여서 검토할 수 있으며, 또는 G-3.0105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e.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에 서명하면,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서명된 결정문 사본은 D-4.0103b에 따라, 또는 상소 관련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전자적 형식으로 즉시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7장
징계 절차

D-7.01 징계 절차

D-7.0101 목적

징계 절차는 개인이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개인의 행위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의 교인들을 지도하고, 규율하며, 양육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며, 오류를 시정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징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며, 성도의 회개와 회복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평화와 일치를 회복시키며,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다.

D-7.0102 징계 절차의 시작

징계 절차는 교회 활동교인 또는 미국장로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담긴 서면 진술서가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 또는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될 때 시작된다. 이후, 조사 위원회의 조사와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거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미국장로교의 징계를 받게 된다.

D-7.0103 위법 행위의 정의

위법 행위란,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교인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모든 행위 또는 불행위를 말한다. 단, 위원회, 전권위원회 또는 공의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에 참여한 단순한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D-7.0104 마감일과 제출

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마감일*

어떤 서류가 제때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제출 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기한의 시작을 유발한 사건의 다음 날로 한다. 예를 들어,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다음 날, 또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수령한 다음 날이 후속 서류 제출 기간의 시작일이 된다. 기한 계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모든 요일이 포함되며, 기한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수령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했다면, 서류는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날 다음 영업일에 수령된 서류도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제출 방법***

모든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의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우정국(USPS)을 통한 접수 영수증 첨부 등기 우편, 배달 확인 영수증이 첨부된 상업용 택배, 인편 배달, 또는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D-7.02 혐의 제기

D-7.0201 혐의

징계 사안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a. ***기간 제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서면 혐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단, D-7.0901에 명시된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사건들에는 5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D-7.0901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 관련 사건에서, 합리적인 위험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했어야 할 사람이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b. ***혐의 제기 주체***

모든 미국장로교 교인은 다른 미국장로교 교회 성도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 혐의를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미국장로교 교인이 아닌 사람은 미국장로교 회원에게 대신 서면 혐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c. ***혐의 제기의 내용***

제기된 혐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법 혐의가 적용되는 행위 또는 행위들에 대한 서면 진술서.

(2) 진실로 판명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는 사실들.

d. ***혐의 사항 제출***

서면 혐의서는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혐의자가 위법 행위 당시 파송 사역장로(commissioned pastor)가 아닌 교회 성도였다면, 해당 성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피혐의자가 위법 행위 당시 노회의 목사 회원 또는 파송 사역장로였다면, 해당 피혐의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e. ***위법 행위 정황을 알게 된 회원들***

미국장로교의 회원은 어떠한 출처를 통해서든 다른 회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될 경우,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혐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가 미국장로교 비회원으로부터 위법 행위에 관한 서면 진술문을 접수하였고, 그 진술문에 조사가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그 비회원을 대신하여 서면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제기자"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f. ***자기 자신에 대한 혐의 제기***

미국장로교 회원은 자신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D-7.0202 해명 확인 요청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국장로교에 법적 책임관계가 없는 출처에서 비롯된 소문이나 험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미국장로교 회원은 사실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혐의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a. 해명을 요청하는 회원은, 문제가 되는 소문이나 험담을 기록한 서면 진술서를 해당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b. 공의회는 D-7.0501a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c. 조사 위원회는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첫 회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의회는 이를 회의록에 첨부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2) 모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피조사인이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확신할 경우, D-7.15에 따라 징계 심판을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청구한다. 또는,

(3) 만약 미국장로교 회원 한 명 이상이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들에 대한 서면 혐의서 한 건 이상을 해당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D-7.03 관할권

D-7.0301 1차 관할권

각 공의회는 그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책임지며, 해당 회원들에 대한 모든 혐의 제기와 심판 절차에 대해 1차 관할권을 가진다. 단, D-7.0201d(2)에 제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D-7.0302 1차 관할권에 대한 예외 사항

D-7.0301에서 언급된 1차 관할권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노회에서 특정 사역에 파송된 사역 장로는 D-7.0201의 조항을 따른다.

b.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의 지리적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역하거나 거주할 경우, 그 목사가 소속된 노회는 그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해당 노회에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그 조사 보고서를 소속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 조사, 대안적 해결 절차, 또는 심판 절차에 있어 소속 노회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 공의회가 연합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회의 운영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그러나 관할권은 해당 목사가 소속된 공의회에 귀속된다.

c.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가 아닌 다른 공의회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혐의가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관할 공의회의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징계 심판 청구 여부와 심판 절차의 결과를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 또는 해당 당회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d.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가 징계 사건에 대해 징계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바로 위 상위 공의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e. 피혐의자인 교회 회원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G-2.0407 또는 G-2.0509에 의거하여 미국장로교의 관할권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절차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는 관할권 거부 사실과 그 당시 사건의 상태를 해당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피혐의자의 이름, 조사 또는 심판 절차 중 관할권을 거부한 시점 및 그 사실, 그리고 징계 심판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 혐의 행위의 성격을 보고해야 한다.

(1)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G-3.0109b(6)에 따라, 목회적 차원의 조사를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의회는 이 요청을 논의해야 한다.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후속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 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을 규정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2) 만약 피혐의자가 사망하였거나 더 이상 미국장로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혐의제기자와 (가능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즉, 이들이 G-3.0109b(6) 조항에 따라 목회적 차원의 조사를 계속하도록 공의회에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그 외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목회적 조사를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제기자나 피해자가 이러한 요청을 하거나, 조사 위원회 또는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 해당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이 사안을 공의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목회적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해당 공의회에서만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시점에서 D-7.1501c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f.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전입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새 노회가 그를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기존 소속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또한, 노회에 의해 다른 교단으로 전출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역시, 새 교단이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기존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g. 교회가 해산된 경우,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징계 사건에 대해서는 노회가 그 사안의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D-7.04 회부 의뢰서

D-7.0401 회부 의뢰서의 정의

징계 절차에서의 회부 의뢰서는 당회 또는 노회 혹은 대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바로 위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다음 중 하나를 요청하는 서면 문서이다:

a. 위법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이후의 모든 관련 절차들 (D-7.05와 그 이하 참조).

b.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의 절차들 (D-7.15와 그 이하 참조), 또는

c. 징계 사건 상소에 대해 하위 공의회가 심리한 내용.

D-7.0402 하위 공의회의 임무

하위 공의회는 상위 공의회에 제출하는 회부 의뢰서에 회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그동안의 모든 관련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해당 사안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 단,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D-7.0404b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보낸 경우는 예외이다. 회부 요청이 상위 공의회에 의해 수락되면, 징계심판 또는 상소 심리를 포함한 모든 징계심판 절차는 상위 공의회가 담당하게 된다.

D-7.0403 상위 공의회의 임무

상위 공의회는 회부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그 요청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사건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D-7.0404 회부 요청에 대한 조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회부 요청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회부 요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의회 서기에게 필요한 경우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징계심판절차나 상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b.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회부 요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하위 공의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또는 하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조사, 징계심판절차, 상소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한다.

c. 상위 공의회가 회부 요청을 수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공의회, 관련 당사자, 또는 조사 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취할 조치의 모든 기한 및 마감일은 자동으로 연기된다.

D-7.05 조사

D-7.0501 조사 위원회로의 회부

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는 혐의 사항을 접수하면, 구체적인 추가 조사 없이, 피혐의자의 이름이나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단지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혐의 사항 진술문을 즉시 조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조사 위원회는 아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G-4.0302 조항에 따라, 서기는 미성년자나 인지 장애 성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추행과 관련하여 해를 입었거나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민사 법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는 혐의 제기자에게 징계 절차의 진행 방식과 이 절차에서 본인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a. 당회는 규정에 따라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당회의 상위 공의회는 규정상 반드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b. 당회는 혐의 사항 접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사건을 노회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D-7.04).

c.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은 당회 서기나 공의회 서기가 혐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서기는 즉시 혐의 사항 진술문을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 서기나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공의회는 D-7.0301c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7.0502 회원 자격 이전

조사나 징계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당회는 해당 성도의 회원 자격 이전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노회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 이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는 회원 자격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성도나 목회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D-7.06 조사 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사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른 공의회의 회원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당회는 현재 해당 당회에서 사역 중인 장로를 조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모든 조사 위원회 위원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D-7.07 조사 위원회의 비용

조사위원회의 비용은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가 부담해야 한다. 단, **D-7.0302b**에 따라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공의회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D-7.08 보조적 역할

다음 인물들은 이 절차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징계 절차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D-7.0801 변호인

여기서 언급되는 변호인은 반드시 유급 대리인이거나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변호인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 중일 때는 그 위원회에서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D-7.0802 옹호자

옹호자의 역할은 혐의제기자, 피해자, 또는 피혐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옹호자는 미국장로교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

D-7.0803 조정인

조정인은 침착하며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변호사나 공인 조정인일 필요는 없다. 미국장로교의 회원일 필요도 없으나, *규례서*의 교회권징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노회는 조정인 후보군을 사전에 정해둘 수 있다.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는 조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부담해야 한다.

D-7.09 성적 학대 관련 혐의 제기

D-7.0901 정의

성적 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강제, 위협, 강압, 협박, 직제 사역이나 직위의 남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성적 행위에 관련된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학대는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므로 항상 징계의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이다. 성적 학대는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며, 항상 징계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D-7.0902 직위 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직위 해제나 기타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D-7.0901에 정의된 성적 학대 혐의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제기된 경우, 그 혐의를 접수한 공의회의 서기는 D-3.0102에 따라 지명된 3명의 위원에게 즉시 해당 혐의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b. D-3.0102에 따라 지명된 위원들은 혐의 진술서를 검토하고, 피혐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혐의의 성격과 신빙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잠재적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유급** 직위 해제나 기타 제재가 필요한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해당 목사의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유급** 직위 해제나 제재 조치는 징계 절차가 명시한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거나, 전권위원회 위원이 해당 해제나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까지 유효하다. **비용은 가능한 한 고용 기관이 부담하되, 필요에 따라 노회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

D-7.0903 직위 해제의 효력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목회, 행정, 교육,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성례전 집전, 장례식, 결혼식 등의 사역도 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 관할권을 벗어난 특수 사역에 종사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경우, 직위 해제는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사역에 대한 목회 승인 정지를 의미하며, 이 조치는 노회 서기를 통해 고용주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D-7.0904 직위 해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D-3.0102에 따라 지명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직위 해제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 위원회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직위 해제 또는 제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언제든지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D-7.0905 직위 해제에 관한 노회 정책

이 항목의 어떤 내용도 노회가 직위 해제 또는 목사의 사역 제한 관련 자체 규칙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D-7.10 징계 절차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

D-7.1001 혐의 제기자의 권리

조사 위원회는 혐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a.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b. 조사 위원회, 징계심판청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와 만날 때마다 옹호자를 동반할 권리. 옹호자의 역할은 격려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옹호자는 위원회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혐의제기자를 대신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c.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한 통지를 받고 참석할 권리. 단, 혐의제기자가 심리 과정에서 타인의 증언을 들은 경우, 그 증언이 혐의제기자의 진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판단하면 예외로 한다.

D-7.1002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

조사 위원회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서에 언급된 사람에게 다음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a. 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b. 조사 위원회, 징계심판청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와 만날 때마다 옹호자를 동반할 권리. 옹호자의 역할은 격려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옹호자는 해당 위원회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c.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한 통지를 받고 참석할 권리. 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심리 과정에서 상대측의 증언을 들은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그 증언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판단하면 예외로 한다.

D-7.1003 피혐의자의 권리

조사 위원회, 징계심판청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와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조사 위원회는 피혐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a. 전체 징계 절차 기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b.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c. 조사 과정 동안, 자비로 고용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옹호자를 동반할 권리. 옹호자의 역할은 격려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옹호자가 동시에 변호인의 역할을 겸하지 않는 한, 위원회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 추후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한 통지를 받고 참석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D-7.0104), 또한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지정받을 권리.

D-7.1004 조사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에는 적절한 기록의 보존과 절차 진행 중 기밀 유지가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D-7.1003 참조).

D-7.11 조사 과정

D-7.1101 예비 검토

조사 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이내에 첫 회의를 열어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D-7.0103에 명시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조사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a. 제기된 혐의가 이전에 피혐의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혐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공의회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해당 혐의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혐의 사항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기존 조사의 일부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서기를 통해 혐의제기자와 피혐의자 모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c. 혐의제기자는 조사 위원회의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에 대해,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검토를 청원할 수 있다(D-7.1402 참조).

D-7.1102 피조사인들에게의 통지

조사 위원회가 D-7.0103에 정의된 위법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피혐의자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1년의 기한이 시작된다(D-7.1501).

(2) 조사의 사유.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서 사본을 첨부하며, 조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혐의제기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조사 과정에서의 기밀 유지 의무에 대한 안내.

(4) D-7.1003과 D-7.1004에 규정된 피혐의자의 권리와 책임.

b. 혐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 이 날짜부터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시작된다(D-7.1501).

(2)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

(3) 혐의제기자와, 또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그 피해자의 D-7.1001, D-7.1002, D-7.1004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

(4) 조사 진행 중 혐의제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알릴 것이라는 조사 위원회의 약속.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징계심판청구 제기 여부도 포함된다.

D-7.1103 조사의 진행

조사 위원회는 위법 혐의 행위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 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조사의 내용은 기밀로 유지된다. 정보는 조사 위원회가 공의회 서기 또는 당회 서기와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무혐의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조사 위원회는 공의회 정서기 또는 당회 서기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 문서 및 기록을 검토한다.

b.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증인을 가능한 한 확인하고 조사한다.

c. 피혐의자가 위법 혐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G-3.0102와 D-7.0103에 따라 판단한다.

d. 모든 증거를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징계심판청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실이 진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도록, 위법 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e. 피혐의자를 관할하는 공의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합동 조사의 경우,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 여부만을 양 공의회에 보고한다.

f.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D-7.15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사건의 징계심판청구를 위해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지명한다.

g. 징계심판청구 절차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도 검토한다(D-7.16 참조).

D- 7.1104 회부 요청

조사 위원회는 첫 회의 이후 6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D-7.04에 따라 공의회가 회부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D-7.12 조사 절차 검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사 과정 중 언제든지 조사 위원회의 절차에 대해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검토를 청원할 수 있다.

D-7.1201 검토 사항

검토는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 조사 위원회가 D-7.1003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적절하게 증거를 추적했는지 여부, 검토 중인 증거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혐의자가 제출한 관련 증거를 조사했는지 여부.

D-7.1202 검토의 수행

검토는 D-3.0102에 따라 지명된 3명의 위원이 수행한다. 지명된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검토 과정 중 심리를 열 수 있으며, 심리에는 조사 위원회와 피혐의자가 출석할 수 있다. 검토는 청원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결정은 조사 위원회, 피혐의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그리고 공의회의 서기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D-7.13 조사 위원회의 결론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징계심판을 청구하지 않음(D-7.14),

b. 징계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절차를 진행함(D-7.15), 또는

c. 대체안을 첨부하여 징계심판을 청구함(D-7.16).

D-7.14 징계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D-7.1401 서면 보고서

징계심판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 불청구 사실만을 기록한 서면 보고서를 당회 서기나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회 서기나 노회 서기는 이 결정을 혐의제기자와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7.1402 결정에 대한 검토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에 대한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조사 위원회의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에 대한 검토를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b. 청원은 조사 위원회가 D-7.10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해야 한다.

c. 조사 위원회는 청원서에 제기된 사실들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d. D-3.0102에 따라 지명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청원서와 답변서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 D-7.10에 명시된 의무를 충실히 고려하고,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이 징계 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청원서 및 답변서에 대한 결정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e. 만약 지명된 위원들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면, 당회 또는 노회는 재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조사 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원래 지정된 기한 중 더 늦은 기한까지 징계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 만약 지명된 위원들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조사 위원회가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을 내리면, 징계 절차는 종료된다. 조사 위원회의 기록은 당회나 노회의 방침에 따라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D-7.15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D-7.1501 징계심판청구 제기의 기한

혐의 사항 진술문이 접수된 경우,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징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피혐의자에 대한 민간 법원의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경우, 조사 위원회는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요청하여, 민간 조사 또는 재판이 종료된 후 6개월까지 징계심판청구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당회 서기나 공의회 서기는 민간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해당 절차의 종료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b. D-7.0901에 규정된 성적 학대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5년의 혐의 제기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D-7.0901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할 사람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 제기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은 위법 행위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징계심판청구 대상이 된다.

c. 이전에 노회원이었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이전에 교회의 활동교인이었던 이가 징계 절차 진행 중 관할권을 거부한 이후 다시 교회의 활동교인(G-1.0402)이 되었거나 노회의 회원(G-2.0502, G-2.0503)이 된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 이후 절차는 새로 시작되어 1년의 제기 기한이 적용된다.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가 피혐의자의 미국장로교 재가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된다. 관할권을 포기한 시점에 이미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었다면, 해당 위원회에는 심판절차 전까지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새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심판절차 전까지 최소 9개월의 시간이 부여된다. 피혐의자는 조사 또는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교회의 직제 사역을 수행할 수 없다.

D-7.1502 조사 위원회의 의무

조사 위원회가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결정할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기소가 제기될 것을 피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각의 기소 사실을 목록화해 적음.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임을 피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b. 징계심판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판절차에서 제시할 사실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c.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서 활동할 한 명 이상의 위원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징계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상소가 있을 경우 교회를 대표한다. 필요시 공의회는 조사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D-7.1503 징계심판청구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은 하나의 위법 행위만을 명시해야 한다.

a. D-7.0103의 정의에 따라, 위법 행위는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교인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행위 또는 부작위이다.

b. 위반된 성경 또는 헌법의 구체적 조항을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명시해야 한다.

c.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는 번호를 부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상황을 가능한 한 기재해야 한다. 동일한 위법 사항이 반복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d. 심판절차에서 입증하려는 사실의 요약을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첨부해야 한다.

e.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당회 서기나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회 서기가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접수한 경우, 해당 서기는 당회의 다음 회의에서 이를 제출하고, 당회가 직접 심리할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D-7.04).

(2) 노회 서기가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접수한 경우, 해당 서기는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D-7.16 대안적 해결책

D-7.1601 대안적 해결책의 시도

조사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고 징계심판청구문이 작성되었으나 아직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대안적 해결책을 시도할 수 있다.

조사 위원회는 피혐의자와 합의한 대안적 해결책의 내용을 징계심판청구문과 함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해결책의 결과물은 조사 위원회와 피혐의자가 서명한 합의문이어야 하며, 징계심판청구문과 함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안적 해결책은 징계심판청구 가능 기간인 1년 이내에 합의 및 제출되어야 한다. 단, 회복적 정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D-7.1603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조사 위원회와 피혐의자는 상호 합의 하에, 대안적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심판청구 제기 기한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대안적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거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해당 합의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 절차 또는 이 절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 진술도 후속 조사 또는 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조정 비용 또는 회복적 정의 절차 촉진을 위한 비용은 심판절차를 담당하는 공의회가 사전에 논의하여 부담한다.

D-7.1602 대안적 해결책의 종류

대안적 해결책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다: 회복적 정의, 조정, 기타 협상.

D-7.1603 회복적 정의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피해자가 피해의 회복과 위법 행위의 원인 시정을 원하는 경우, 조사 위원회는 그 판단에 따라 관련자 간의 화해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회복적 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사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를 위한 정의가 합당한 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징계심판청구 제기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a. 회복적 정의의 목적

(1) 회복적 정의는 위법 행위 혐의를 받는 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다. 회복적 정의 절차는 심판 절차 이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또는 피혐의자가 유책 결정을 받은 이후 유책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가 책임을 수용할 시간이 주어지고 피해자들에게도 회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치유 과정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가 심판절차 이전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가 이를 요청하고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공의회는 언제든지 회복적 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2) 회복적 정의는 용서 또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용서하거나 화해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용서 또는 화해 여부는 절차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b. 회복적 정의의 실행

회복적 정의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1) 피해자는 누구인가?

(2)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 이 필요의 해결,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 공동체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c. 회복적 정의 절차는 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조정인이 주관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필요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피해자: 피해자는 위법행위자와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절차에서의 발언과 지지를 통해 정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위법행위자 또는 공동체의 공식 사과문 등 상징적 보상 행위를 통해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2) 위법행위자: 위법행위자는 피해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트라우마, 중독, 기타 유해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문제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법행위자는 개인의 역량과 경계를 개발해야 한다. 또 공동체 복귀를 위한 격려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제한 또는 면직 등의 문책이 요구될 수 있다.

(3) 공동체: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경험한 피해와 정서적 충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체는 피해자 및 위법 행위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볼 책임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확실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방적 조치를 통해 향후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D-7.1604 조정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의사가 있으나, 회복적 정의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조정을 대안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에게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고, 피혐의자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절차이다. 또한 신앙공동체로서 무너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조사위원회는 고려해야 한다. 중재인과 조정인은 침착하고 지혜로운 조언자여야 하나, 변호사나 공인 조정인일 필요는 없다.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규례서* D 항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노회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갖춘 조정인을 활용해야 한다. 조정 합의서에는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한 징계심판청구 사실과 이에 따른 문책 권고가 명시되어야 한다.

D-7.1605 협상을 통한 기타 합의 사항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협상 합의서를 대안적 해결책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해당 합의서에는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한 사실과 이에 따른 문책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혐의자 혹은 피혐의자의 변호인과의 협상 전, 조사위원회는 해당 협의의 근거에 대해 혐의제기자 및,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 혐의 사건에는 협상 합의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D-7.1606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서명된 대안적 해결책을 접수하면 다음을 시행한다:

a. 합의서, 징계심판청구문, 그리고 합의서 채택 근거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설명문을 접수한다.

b.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서를 승인한다(D-3.0602).

c. D-8.1201d에 따라 피혐의자의 이름, 징계심판청구 내용 및 문책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해 절차의 경과를 기록한다.

d. 결정사항을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전달하며, 이들은 D-9.0102에 따라 보고한다.

e. 만일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합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일 년의 기한 내에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새로운 대안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f. 대안적 해결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제 8 장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

D-8.01 사전 심리 절차

D-8.0101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

모든 징계 사건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공의회가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를 통해 제기한다.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교단을 대표하며, 해당 사건에 관해 그 공의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징계 사건의 당사자는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와 피혐의자이다.

D-8.0102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

징계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과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a.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당회 서기 또는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는 서면·인쇄·전자·시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당회원이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b. 사건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은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D-8.0103 사전 심리 회합

사전 심리 회합은 사전에 일정을 정하여야 하며, G-3.0105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a. 사건을 심리할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전 심리 회합을 개최하여야 한다. 사전 심리 회합의 장소와 일시는 해당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 혹은 해당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이 정하며, 당회 또는 전권위원회를 대표하여 회합을 주관한다.

b.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는 피혐의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그리고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 사전 심리 회합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c. 피혐의자는 사전 심리 회합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가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 심리 회합은 피혐의자의 부재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

d. 회합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 지명인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 권징편 서문(D1)을 낭독한다.

(2) 피혐의자에게 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를 받을 권리와 침묵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3) 피혐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피혐의자의 재정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피혐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변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의회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서면 합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4) 피혐의자에게 징계심판청구의 내용을 낭독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i. 피혐의자 및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와 함께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혐의를 확인하고, 정식 심판절차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

ii. 징계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피혐의자의 이의 제기를 청취하고, 일부 청구의 기각, 통합 또는 수정을 권고한다. 해당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 혹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은 논쟁이 있는 모든 사실을 심판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iii. 피혐의자에게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지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진술을 기록한다.

(5)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문서에 대해 피혐의자에게 설명하고, 그 시점까지 확인된 증인의 목록 및 각 증인이 해당 사건과 갖는 관련성을 설명한다.

(6) D-7.10에 따라 제출된 검토 청원 보고서를 검토한다.

(7)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 개시 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전 심리 안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에 따라 마감일 및 심판기일을 정한다.

사전 심리 회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치는 예비적이며, 심판절차에서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8.0104 사전 심리 회합과 심판절차 사이의 기간

사전 심리 회합과 심판절차 사이에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당회장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심리 회합 후 최소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절차가 열리도록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가 모든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을 인정할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열지 아니한다. 징계 청문회는 사전 심리 회합이 열린 날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b. 심판절차가 시작되기 최소 45일 전에,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 및 피혐의자에게, 심판절차에서 제시할 증인의 목록과 증거의 개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혐의자 또한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 및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 증인 예비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절차 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심판절차 이전에 상대방의 증인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c.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대안적 해결책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며, 전적인 재량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고 D-7.16에 명시된 대안적 해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D-8.02 심판절차 진행

D-8.0201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는 해당 사건을 맡은 당회 또는 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주관한다.

a. 심판절차는 절차에 적합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b. 진술의 전자적 제출에 대해 D-8.04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대면 출석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재량으로 G-3.010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기술을 통해 증인, 당사자, 당회원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을 서로 명확히 식별하고 그들의 발언을 서로 명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c. 투표권이 있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삼분의 이 이상이 유책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피혐의자는 무혐의로 간주되어야 한다(D-3.0602

참조).

D-8.03 소환과 증언

D-8.0301 소환

사건 당사자 또는 양측이 요청한 증인을 심판절차에 소환하려면, 당회의 당회장 또는 서기, 혹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가 서명한 소환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의회의 서기가 송달하여야 한다. 증인은 사실 관련 증인 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D-8.0704b 참고).

D-8.0302 소환 대상자

미국장로교(PCUSA)의 회원만이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소환의 대상이 된다.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과, 전문가 증인(소속 교단에 관계없이)에 대해서는 출두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D-8.0303 다른 공의회 소속의 증인

다른 공의회의 관할권에 속한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건을 다루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해당 심판절차와 관련된 공의회의 서기를 통해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에게 소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른 당회 또는 공의회의 서기는 증인에게 심판절차에 출두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D-8.0304 비용

증인은 심판절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본인을 소환한 심판절차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D-8.0305 소환장 송달

소환장은 D-4.0103b에 따라 송달되거나, 전자적으로 전달하되 수신자가 7일 이내에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송달 또는 발송 사실과 그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사건 당사자 또는 증인이 D-8.0302에 따른 심판절차 출두 소환을 따르지 않거나, 심판절차에 출석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경고했음에도 계속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은 불복종죄 또는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인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8.04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증언

G-3.0105와 D-8.02에 따라, 대면으로 열리는 심판절차에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D-8.05 심판 절차

D-8.0501 변호인

징계 사건의 당사자는 변호인과 함께 심판절차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대리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반드시 유급 대리인이나 법률전문가는 아니어도 된다. 변호인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속한 해당 전권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 출두할 수 없다.

D-8.0502 심판절차 진행 상의 통제

당회장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절차의 전반적인 진행과 당사자, 증인, 변호인, 청중의 행동을 통제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에는 퇴정 조치도 포함된다. 이는 심판절차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절차 통제와 관련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당회 또는 전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해당 당회 또는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이를 결정한다.

D-8.0503 절차상 제기되는 문제

심판절차 중 절차나 증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 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당회 또는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해당 당회 또는 위원회는 다수결 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D-8.0504 심판절차 불참

당회원이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대면 출석 방식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심판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당회원 또는 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해당 인원은 그 이후 심판절차의 심리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D-8.0505 비공개 진행

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심판절차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 출석한 당회원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D-8.0506 정족수의 미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심판절차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8.06 징계심판절차

D-8.0601 위원장의 지침 안내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는 기도로 시작하며, 그 후 위원장은 '교회 권징' 편 서문(D-1)을 낭독하고 해당 공의회가 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의회의 심판관으로서의 위원들의 고결함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엄숙한 사명에 대해 상기시켜야 한다.

D-8.0602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은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구성과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할 수 있다.

a.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사건의 결과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당사자 중 누구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 중 한 편을 위해 또는 그와 대립하는 측을 위해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우.

b. 심판절차 당사자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나머지 당회원 또는 위원들이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D-8.0603 예비 결정과 이의 제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 결정과 모든 이의 제기를 기록해야 하며, 이들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심판절차의 순서 또는 절차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이의 제기 또한 기록하고 다수결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거를 심리하고 최종변론을 듣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D-8.0604 유책 또는 무혐의 인정

피고소인은 각 기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인지 혹은 "무죄"인지 주장해야 한다. 피혐의자는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 또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그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피혐의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무혐의" 주장으로 간주해 기록하고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혐의자가 모든 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을 인정한 경우, 해당 공의회는 D-8.0903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D-7.16에 따른 대안적 해결 절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8.0605 모두 진술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진술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부터 진술을 시작한다.

D-8.07 증거

D-8.0701 정의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증거에는 증인의 구두 증언뿐 아니라,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제출되는 기록물, 문서, 물건, 기타 물품이 포함된다. 증거는 반드시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증거의 채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증거 또한 인정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는 증거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토대를 놓는다"는 것은 다른 증거의 진정성과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비적 증거를 제시함을 의미한다. 진정성에 대한 증거란, 해당 물건이 그것을 제출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는 증거이다. 이러한 입증능력에 있어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사이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D-8.0702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식 문서 기록과 인증된 증언 기록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a.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인된 문서 기록물은 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b.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접수한 공인된 진술 기록은 다른 공의회에서 진행되는 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D-8.0703 전해들은 증거

전해들은 증거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되지 않은 진술로서, 서면이든 구두이든 관계없이, 그 진술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징계 절차에서는 공의회가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하거나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전해들은 증거를 허용한다. 전해 들은 증거의 신뢰성과 증거로서의 비중은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판단한다.

D-8.0704 증인

증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는 누구든지 증인의 증언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의 자격을 결정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상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b. 소환된 증인은 증언할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어떤 증언이라도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증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증인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고, 그 전문 의견이나 기타 증언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증언은 전문가 증언이나 기타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c. 심판절차 당사자의 변호인은 기밀 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 변호인은 대리하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없다.

d. 공의회의 관할권 내 사람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의회에 의해 적법하게 임명된 사람은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증언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증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e. 신빙성이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언의 정확성과 증인의 진실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

f. 결혼한 사람은 증언 자격을 갖추었다면, 배우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g.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인의 증언을 강요하지 않는 근거로서 치료사-환자, 의사-환자, 목사-성도, 변호사-의뢰인 간의 특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

D-8.0705 증언

증인의 증언을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증인을 심문하는 동안 사실증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다만, 이 규정은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변호인, 또는 사전에 전문 증언을 하기로 정해진 증인의 절차 참여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b.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가 먼저 심문을 하고, 이어서 상대방이 반대 심문을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추가 질문을 허용할 수 있으며, 재심문 및 반대 재심문도 동일하게 허용된다.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c.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 질문에 동의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이 제시하는 증거는 오직 진실임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d. 증인이 위와 같이 선서하기를 거부할 경우, 다음 질문에 동의해야 한다: "증언하도록 소환받은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은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엄숙히 확약합니까?"

e. 모든 증인의 증언은 공인 기록원이나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수단(디지털 음성 녹음 포함)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f. 증인이 심판절차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D-8.04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다.

g. 심판절차를 진행 중인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도 증언할 수 있으나, 증언한 이후에는 해당 사건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D-8.08 최후 진술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변론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 모든 변론이 종료되면 심판절차을 기도로 마쳐야 한다.

D-8.09 결정

D-8.0901 심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비공개로 모여 심의해야 한다. 당회원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D-8.0902 유책 결정

징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표되어야 한다.

a.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별로 투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모든 증거를 비교·검토한 결과,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실들이 진실임을 분명히 확신하는 경우에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피혐의자를 유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당회원 또는 위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심판 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 결정을 내릴 수 없다(D-3.0602 참조).

b.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한 결정은 당회 또는 위원회 회기 중에 결정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한 서면 결정문 사본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c.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당회장 또는 위원장은 공개 회의에서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한 평결을 각각 공표해야 한다.

D-8.0903 문책의 강도에 대한 결정

피혐의자가 유책으로 판정되었거나 유책을 인정한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상의 정도, 경감 사유, 재교육, 배상에 관한 증거를 심리해야 한다. 이 증거는 양측 당사자, 혐의제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위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 결과 진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심판절차 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은 반대 심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혐의자는 피해를 해결하고 피해자, 교회와의 화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후 비공개로 소집되어 문책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당회장 또는 위원장이 공개 회의에서 문책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D-8.10 제출과 당사자에게의 통보

D-8.1001 즉시 제출

결정문은 즉시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D-8.1002 당사자에게의 통보

결정에 대한 통보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a.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서면 결정문 사본을 D-7.0104b에 따라, 또는 당사자 간 사전 합의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b.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당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D-8.11 새로 제출된 증거

D-8.1101 상소 제기 이전

상소를 제기하기 전이지만, 상소 제기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책 결정을 받은 자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를 근거로 새로운 심판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증거가 합리적으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이전 심판절차에서는 제시될 수 없었음이 소명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새로운 심판절차 개시를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관련된 상소는 심판절차를 담당했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하위 공의회의 서기 또는 당회의 서기는 이러한 결정을 상위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D-8.1102 상소 제기 이후

유책 결정을 받은 자가 상소를 제기한 이후,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소 신청 이전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상소를 접수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해당 사건을 새로운 심판절차를 위해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절차를 담당했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새로운 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을 보고할 때까지 상소는 유예되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의 인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요청을 적어도 심리 예정일 30일 전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사본을 상대 당사자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설명 요약문을 첨부해 증거 인정을 요청해야 한다.

D-8.12 징계심판절차 과정에 대한 기록

D-8.1201 서기의 의무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a. 모든 증언과 구두 발언을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구두 발언의 기록은 디지털 음성 녹음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b. 증거물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식별하고 적절히 보관하며,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채택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c. 심판절차의 진행 과정을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취한 조치나 명령뿐 아니라 그에 대한 투표 결과도 기록해야 한다.

d.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1) 징계심판청구 사실

    (2)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피혐의자가 제출한 유책 또는 무혐의 인정 기록

    (3) 요청 시 제공되는 공식 녹취록

    (4) 적절히 표시된 모든 증거물, 기록, 문서, 기타 서류

    (5)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한 평결과, 문책이 부과된 경우 그 등급을 포함한 서면 결정문

(6) 사건과 관련된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조치나 명령과 각 조치에 대한 투표 기록

e. 당회 서기는 사건 기록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의회의 기록 보관 정책을 따라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관련 기록을 인증하고,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노회는 사건 기록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회의 기록 보관 정책을 따라야 한다.

f.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당사자의 비용 부담 하에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심판절차 중의 모든 진술 및 구두 절차 기록의 진실하고 완전한 녹취록을 준비해야 한다. 이 녹취록은 이를 작성한 사람이 진실하고 완전하다고 인증한 후 각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10.0602에 따른 상소 절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사본이 준비되어야 한다.

D-8.1202 기록 추가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건 기록에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자료 보완 요청은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이 요청은당회장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요청서 사본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D-8.13 집행

당회 또는 노회가 심판절차를 종결하고, 피혐의자가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다음 장에 명시된 문책과 함께 공표되었을 경우, 당회 또는 노회는 상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문책에 포함된 재교육의 감독도 이에 포함된다. 단,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9 장
징계 사건 관련 문책과 복권

D-9.01 문책

D-9.0101 문책의 등급

교회의 문책은 그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질책; 감독 하의 재교육을 병행한 질책; 집사, 사역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경우에는 직제사역에서의 임시 배제; 안수받지 않은 교회 성도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에서의 임시 배제; 직제사역 또는 회원 자격의 박탈. 문책은 어떤 경우에도 악의나 보복의 의도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과오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집행되어야 한다. 문책은 교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다루는 것이며, 문책 결정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9.0102 결정과 문책에 대한 보고

징계 사건의 결정과 문책은 다음 방식으로 구두로 공개 보고되어야 한다:

a. 문책이 한 교회 회원에게 부과된 경우, 당회는 G-1.0503g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그 결정과 문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도들에게 구두로 보고할 때에는 결정 내용과 문책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한 설명, 문책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문책의 종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약 내용은 공동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b. 노회가 문책을 집행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가 결정과 문책을 제출하면, 공의회가 모였을 때 공의회 서기는 이를 즉시 보고하고 결정문 전체를 공의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공의회가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의회의 서기는 가장 먼저 소집되는 정기 회의, 연기된 회의, 또는 해당 결정을 보고하기 위한 임시 회의 중 가장 먼저 모이는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회의록에 결정문 전체를 기록해야 한다. 공의회에 구두로 보고할 때에는 결정 내용과 문책을 요약해 전달할 수 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한 설명, 문책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문책의 종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문책이 교회 성도에게 집행된 것이라면, D-9.0102c의 절차도 따라야 한다.

c. 노회의 문책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아닌 교회 회원에게 부과되었고, 그 이유가 해당 회원이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파송 사역 장로(commissioned pastor)였거나, 혹은 상위 공의회가 D-7.0301d 또는 D-7.0401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면, D-9.0102b에 따라 결정과 문책이 보고된 후, 그 결정과 문책은

해당 회원이 속한 교회의 당회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회 서기는 첫 번째 정기 회의, 연기된 회의, 또는 결정을 보고하기 위한 임시 회의 중 먼저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 내용을 보고하고, 당회 회의록에 결정문 전체를 기록해야 한다. 당회에 구두로 보고할 때에는 결정 내용과 문책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한 설명, 문책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문책의 종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당회는 G-1.0503g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위의 D-9.0102a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결정문을 보고해야 한다.

D-9.0103 질책

질책은 위법 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단계의 문책이며,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질책은 위법 행위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질책은 다음 양식이나 이와 유사한 양식으로 선포한다:

"귀하, (이름)_____은(는) _____(여기에 위법 행위를 요약하여 기재)한 위법 행위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귀하는 성경 및/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해당 노회)__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본 위법 행위에 대해 정죄를 표명하고 귀하를 질책합니다. 이 질책은 악의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귀하가 앞으로 더욱 주의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이 공식적인 질책 선포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이어져야 한다.

D-9.0104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병행 질책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병행 질책은 문책의 두 번째 낮은 등급이다. 이 문책은 위법 행위의 성격에 대한 언급, 질책의 선포, 그리고 아래 b항에 설명된 대로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한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기간의 이행 명령으로 구성된다.

a. 목표 전달 -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 기관과 문책을 받은 자에게 재교육의 목표와 감독자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명시하여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b.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은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과, 재교육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의 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c. 자발적인 회개 행위 - 재교육 프로그램에는 문책을 받은 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 회개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공개적인 책임 인정, 공동체 봉사, 피해자에 대한 상징적 또는 금전적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자발적 회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d. 문책 선고 양식 - 다음의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문책을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여기에 위법 행위를 요약하여 기재함)의 위법 행위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당회 또는 _____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죄를 표명하고-귀하를 질책하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_____의 감독 하에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_____. 이 질책은 악의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귀하는 이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피하고 더욱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힘써 행하기를 권합니다."

공식적인 질책 선포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105 임시 배제

임시 배제는 보다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더 높은 수준의 문책이다. 이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명령한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최소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임시 배제는 안수 받은 교인을 직제사역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안수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교회 회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임시 배제 기간 동안에는 교회 회원 자격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a. 재교육 목표의 통지 –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 기관과 피문책자에게 재교육의 목표 및 감독관이 가지는 구체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b.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 개요에는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 재교육의 만족스러운 완료 여부 및 그 결정 시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자발적 회개 행위 – 재교육 프로그램에는 피문책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회개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공개적인 죄의 인정, 공동체 봉사, 피해자에 대한 상징적 또는 금전적 복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자발적 회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장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d. 직제사역 수행 임시 배제의 효력 – 직제사역에서

임시 배제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직제사역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임시 배제 중이라 하여 개체교회 또는 노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교단의 어느 공의회에도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없으며, 직위를 보유하거나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단,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발언하기 위해 위원회나 전권위원회에 출석할 수는 있다. 임시 배제 중인 자는 설교, 교육, 성례전 집전, 예배 인도, 당회 주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 회원 자격 임시 배제의 효력 - 안수받지 않은 교인에 대한 회원 자격 임시 배제 기간 동안, 해당 교인은 소속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회의에 참여해 투표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교회나 교단 공의회에서 어떤 지도적 직책도 맡을 수 없다.

f. 목사에 대한 임시 배제의 효력 - 개체교회와 목회 관계에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G-2.0504)가 직제사역에서 임시 배제된 상태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상소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노회는 그 목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g. 임시 배제 통보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임시 배제 문책이 선고되면, 노회 서기는 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즉시 총회 정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회 정서기는 이러한 정보들을 교단의 모든 노회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h. 임시 배제 문책의 종료 -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이 완료되면, 임시 배제를 받았던 사람은 당회 서기나 공의회 서기를 통해 서면으로 공의회에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문책을 명령한 공의회는 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확신할 경우 복권을 승인할 수 있다. 문책에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기한을 명시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공의회는 특정 조건의 이행 기한을 연장하거나 임시 배제를 영구화할 수 있다.

i. 조기 복권 - 직제사역이나 회원 자격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문책에 명시된 최소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문책을 명령한 공의회에 공의회 서기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공의회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확신할 경우 복권을 승인할 수 있다.

j. 문책 선고 - 다음 양식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문책을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이곳에 위법 행위를 기재함)의 위법 행위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성경 및/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___ 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를 최소 _____의 기간 동안, _____의 감독 하에 다음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_____에서 _
임시 배제함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
이 배제는 악의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이 공식적인 선고 이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106 직제 사역과 회원자격 박탈

직제사역 또는 회원 자격의 박탈은 문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이다. 직제사역 박탈은 유책 결정이 내려진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취소하고, 직제사역을 박탈하되 회원 자격은 유지하는 조치이다. 회원 자격 박탈은 유책 결정이 내려진 사람의 회원 자격을 종료하고, 모든 명부에서 그 사람을 삭제하며, 안수와 직제사역에 대한 선출도 함께 취소하는 조치이다.

a. 직제사역 박탈의 결과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회원 자격 박탈 없이 직제사역만 박탈된 경우, 노회는 해당 목사의 요청에 따라 그 목사의 회원 자격을 지정된 개체교회로 이전해야 한다. 이때는 해당 교회의 당회 또는 운영 조직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당 목사가 개체교회와 목회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G-2.0504), 문책 선고와 동시에 그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b. 박탈 통보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 박탈 문책이 선고되면, 노회 서기는 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즉시 총회 정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회 정서기는 이러한 문책에 관한 정보를 교단의 모든 노회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c. 문책 선고 - 다음 양식 또는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문책을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이곳에 위법 행위를 기재함)의 위법 행위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귀하는 성경 및/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___ 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를

_____ (여기에 '모든 직제사역과 선출직에서 박탈' 또는 '회원 자격에서 박탈' 등 문책의 내용을 명시함)에서 박탈함을 선포합니다. 이 박탈은 악의나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위법 행위로 인해 야기된 교회의 불화와 분열을 해소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 선포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2 복권

D-9.0201 회원 자격 또는 직제 사역의 복권

직제사역 박탈 또는 회원 자격 박탈의 문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문책을 명령한 공의회에 의해 복권될 수 있다. 복권은 공의회가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완전히 확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람은 회원 자격 복권을 위해서 신앙을 재확인한다. 그리고/또는 직제 사역의 복권을 위해서 다시 안수를 받는다.

D-9.0202 회원 자격의 복권

회원 자격의 복권은 다음과 같은 형식 또는 이에 유사한 형식으로 공의회 회의에서 의장이 공표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교단이 확신할 수 있도록 회개하였으므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이 신앙 재확인의 행위를 통해 귀하의 회원 자격을 온전히 복권함을 선언합니다."

a. 이 선언 이후, 신앙 재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복권 대상자의 이름은 해당 교회의 명부에 복원되거나, 회원 증명서가 해당인이 선택한 교회로 발급되어야 한다.

b. 복권 대상자가 직제사역에 있어서도 복권될 경우, 직제사역 복권 절차(D-9.0203)를 따라야 한다.

D-9.0203 직제 사역의 복권

직제사역 복권은 다음과 같은 형식 또는 이에 유사한 형식으로 공의회 회의에서 의장이 공표한다:

"귀하 _____은/는 교단이 확신할 수 있도록 회개하였으므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안수의 행위를 통해 귀하를 _____의 직제사역으로 복권시키며, 이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_____

이후에는 W-4.04에 따라 온전한 안수식이 거행되어야 하며, 복권 대상자의 이름은 해당 명부에 다시 올려져야 한다.

제10장
징계에 대한 상소

D-10.01 상소 제기

D-10.0101 정의

징계 사건에서의 상소란, 하위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그 심판 절차와 결정을 수정, 변경, 보류 또는 번복할 수 있도록 상위 공의회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D-10.0102 상소 개시

상소는 유책 결정 관련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이 거부된 날부터 제기할 수 있다.

a. 상소는 위법 행위로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만이 처음 제기할 수 있다.

b. 첫 번째 단계의 상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양측 당사자 누구든 다음 단계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D-10.0103 관련 당사자

징계 사건의 상소 당사자는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과 문책을 부과한 미국장로교 징계 심판 청구위원회이다.

D-10.02 상소 청구서

D-10.0201 상소 청구서 제출

상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최종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소를 심리할 다음 단계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서면 상소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소청구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서기는 이를 수령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소 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엔, 제출 시한 내에 도달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소절차 관련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이후의 모든 문서 제출은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결정 내린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 그리고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청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에게 상소청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D-10.0202 상소 청구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징계 사건에 대한 상소 청구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상소인의 이름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의 이름

b. 피상소인의 이름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의 이름

c. 상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내린 공의회의 명칭

d. 해당 결정문 사본

e.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의 오류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1) 심판절차에서의 부적법한 행위

(2) 당사자가 발언하거나 증거를 확보 또는 제출할 기회를 거부당한 경우

(3)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이 채택되었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거부당한 경우

(4) 증거 또는 증언의 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경우

(5) 심판절차 진행 중 편견이 드러난 경우

(6) 심판절차나 결정에 부당성이 있었던 경우

(7) 헌법 해석의 오류

(8) 지나치게 과도한 문책

f. 상소청구서 사본을, 상소 대상 결정을 내린 당회 또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D-10.0201에 따라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인증 문서. 상소 당사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이 인증 문서는 전자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D-10.03 서기의 임무

상소청구서를 접수하면,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이를 해당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임원과 피상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소청구서가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되었을 경우, 하위 공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절차는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된다. 다만, 문책은 예외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D-10.04 상소 철회

징계 사건의 상소 당사자들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받는다.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상소 당사자들이 함께 상소 철회서를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하면, 서기는 이 철회 사실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 중 누구도 철회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는 종결된다. 만일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회의 과반수는 해당 철회가 정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D-10.05 예비 절차

D-10.0501 상소 청구서 검토

상소 청구서가 접수되면, 상소를 심리할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a. 해당 공의회가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b. 상소인이 상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c. 상소가 기한 내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기되었는지,

d. 상소 청구서에 D-10.0202e에서 열거한 상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명시되고 설명되었는지.

D-10.0502 예비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예비 검토 결과를 예비 결정으로 정리해, 상소 관련 당사자들과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D-10.0503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예비 결정을 받은 상소 관련 당사자들과 전권위원회 위원은, 예비 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시, 관련 당사자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논의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은 이의 제기 사항을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서면 자료에 근거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판단할 수도 있다. 이의제기 심리는 상소 본안 심리 최소 30일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단, 시간이나 자원의 제약 등 상황상 본안 심리 직전에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위원회 임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네 개의 예비 검토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상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D-10.0504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a. 예비 검토 결과 D-10.0501의 필수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의 제기가 없으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별도 조치나 명령 없이 상소는 자동으로 기각된다.

b. 예비 검토 결과 D-10.0501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공의회의 서기는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기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는 날짜에 심리 일정을 지정해야 한다.

D-10.06 사건 기록

D-10.0601 문서 목록

상소 청구서가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해당 당회의 서기 또는 하위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소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D-8.1201d 및 e 참조). 당사자들은 이 목록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목록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따라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자료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제출된 이의 제기는 반드시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D-10.0602 상소 관련 기록 제출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둔 공의회의 서기가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면, 상소가 제기된 결정의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여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D-10.0603 기록의 수정

당사자 중 한 편에게 중요한 자료가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못 포함된 경우, 다음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인증함, 하위 공의회의 서기 또는 당회 서기가 보충 기록을 인증하여 제출함,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직접 해당 자료의 수정을 명함. 기록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의 제기는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최소 45일 이전에 적법하게 소집된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회의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D-10.07 변론 요약서

D-10.0701 상소인의 변론요약서 제출

상소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청구서에 제시한 오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 판례, 헌법 조항, 법령 등을 포함한 변론 요약서를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해당 요약서의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피상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D-10.0702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된 기간 내에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D-10.0703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 제출

상소인의 변론요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상소인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둔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인의 변론요약서에 대한 답변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기는 그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과 상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D-10.0704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상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된 기간 내에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답변요약서 제출, 출석, 변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D-10.0705 상소인의 응답 변론요약서 제출

상소인은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약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응답 변론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공의회의 서기는 그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과 피상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D-10.08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D-10.06 또는 D-10.07에 규정된 기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D-10.09 기록과 요약서의 전달

기록과 요약서를 접수하거나 해당 제출 기한이 도래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들 자료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D-10.10 사전 심리 회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가 접수된 이후 언제든지 관련 당사자들에게, 또는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사전 심리 회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회합에서는 상소된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논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좁히고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취할 수 있다.

D-10.11 상소 심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상소 관련 당사자들에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직접 출두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두해야 할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두하지 않은 경우, 이는 상소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리에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근거에 대하여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상소인은 모두진술과 최후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D-10.12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10.1201 검토 기준

심판 절차를 진행했던 당회 또는 하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실관계에 대하여 내린 결정은, 상소심에서도 정확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단,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결정에는 이와 같은 정확성 추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D-10.1202 투표 절차

심리와 숙의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인이 주장하는 각 오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각 투표는 “이 오류 사실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표 수를 세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오류 사실에 대한 투표 수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다수결 투표로 각 오류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

D-10.1203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문에는 각 오류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D-10.0101에 명시된 시정 조치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중요한 질문들을 반복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준비할 수 있다. 그 결정에는 판단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아닌 다른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b. 오류 사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다른 오류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한다.

c. 오류가 하나 이상 확인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정할 수 있다. 또한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수정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혹은 재심리를 위해 환송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d.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표결이 실시되어야 한다. 결정에 대한 서면 개요를 회의 중에 작성해야 한다. 이 결정문은 상소 논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검토해야 한다. 검토는 이들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일 이내에 직접 모여서 하거나, G-3.0105 조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e.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에 서명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서면 결정문 사본은 D-7.0104b에 따라,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에 전자적 수령 방식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즉시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10.1204 징계 사건 상소에서의 번복의 효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하위 공의회의 모든 유죄 판정을 번복하면, 이는 무혐의 판정으로 간주되며, 해당 당사자는 자동으로 직제사역 또는 교회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하위 공의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해당 유책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의 회의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